

당 헌 민주당

[제정 2011. 12. 16]

[개정 2012. 12. 28]

[개정 2013. 2. 27]

[개정 2013. 5. 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우리 당의 명칭은 ‘민주당’ 이라 한다. <개정 2013.5.4>

②민주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신설 2013.5.4>

제2조(목적) 민주당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통일, 동북아 지역협력과 발전을 이루는 미래지향적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각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제2장 당 원

제4조(자격) ①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하며, 입당·탈당·복당 및 전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구분) ①당원은 소속에 따라 지역당원과 정책당원으로 구분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권리당원이라 한다.<개정 2013.5.4>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이 경우 권리당원에게만 해당한다.

③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7조(당비) ①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권리당원에 대하여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피선거권과 당직 권한행사를 제한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성평등 실현) ①우리 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당원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5.4>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당원이 100분의 10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청년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5.4>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의2(노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 노인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당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13.5.4]

제10조(노동부문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부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등 대의기관에 노동부문 당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당원과 자원봉사) ①당원은 참여정신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공동체의 어려운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한다.

②당직 임명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포상과 징계) 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4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과 고문

4. 당무위원
5. 중앙위원
6. 당 소속 국회의원
7.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급의 장
8. 중앙당 각 위원회(급)의 위원장(급)과 부위원장(급)의 정무직당직자
9. 시·도당위원장
10. 지역위원장
11.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2.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3.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14. 전직 국회의원. 이 경우 우리 당의 당원인 자에 한한다.<신설 2013.5.4>
15.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700명 이하의 대의원
16.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직능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사무처장 및 정책실장
17. 각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5명
18. 중앙당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정한 시·도당 법정 유급사무원
19.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 이 경우 선출대의원의 총 규모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 가. 총 규모의 100분의 8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수에 균등하게 배분
 - 나. 총 규모의 100분의 2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 및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 하되, 그 비율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다.

다. 총 규모와 별도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100,000명을 기준으로 초과 10,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

20.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명

21. 재외국민으로서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22. 전국직능위원회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신설 2013.5.4>

23. 대학생당원으로서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추천하는 200명 이하의 대의원 <신설 2013.5.4>

24. 정책당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정책대의원. 이 경우 정책대의원의 수는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 등 하나의 부문이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제19호의 대의원 임기는 다음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5.4>

④제2항제19호의 대의원에는 여성당원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청년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3.5.4>

⑤제2항제19호의 대의원은 권리당원 중에서 선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4>

⑥제2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 3개월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10명 이상당 1명씩 배정하되, 지역, 직능, 부문 또는 학교별로 균형 있게 배분한다.<신설 2013.5.4>

⑦전국대의원대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⑧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의 선출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권한)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소집) ①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① 당무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8조(지위와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수임기관이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 및 고문
7. 당무위원 <신설 2013.5.4>
8. 사무총장
9. 정책위원회 의장
10. 정책연구소의 장
11. 전국위원회 위원장 <개정 2013.5.4>
12. 전략홍보본부장
13. 사무부총장, 대변인, 비서실장,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14. 시·도당위원장
15. 당 소속 국회의원
16. 지역위원장
17.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18.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19. 중앙당 국장급 사무직당직자(15명 이하)

20. 시.도당 사무처장

21. 전국직능위원회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신설 2013.5.4>

22. 민주당보좌진협의회가 추천하는 4명 <개정 2013.5.4>

23.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중앙위원. 이 경우 전국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중앙위원을 중앙위원회 총 규모의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제19조(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 행사
2. 전국대의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당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4.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5. 기타 중요한 당무의 처리 및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행사

제20조(소집) ①중앙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21조(지위와 구성) ①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6. 중앙위원회 의장
7. 사무총장
8. 정책위원회 의장
9.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10. 전국위원회 위원장 <개정 2013.5.4>
11. 전략홍보본부장
12. 중앙당의 윤리위원장, 재정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국정자문회의 의장, 세계한인 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인권위원장 및 정책연구소의 장 <개정 2013.5.4>
13. 시·도당위원장
14. 당 소속 시·도지사
15.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약간 명의 당무위원. 이 경우 여성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청년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3.5.4>

③당무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제22조(권한) 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2.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3. 당헌 개정안의 발의
4. 당규의 제정과 개폐
5.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6.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7.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상벌안의 확정
8.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9.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
10. 지역위원장 인준 및 지역대의원대회의 승인
11.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12.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13.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임시시·도당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소집 요구
14. 공직선거후보자의 인준
15. 당무활동 보고 요구
16.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17.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②당무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23조(소집 등)** ①당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 또는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소집한다.
- ③상임고문 및 고문은 당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

- 제24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 ②당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명
 3.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4. 당 예산의 편성 <신설 2013.5.4>
 5.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 ③당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개정 2013.2.27, 2013.5.4>
1.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및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신설 2013.5.4>
 2.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 이상, 일반당원과

국민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 이하로 반영한다.<신설 2013.5.4>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③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2.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3.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다수득표자 순, 원내대표 순으로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개정 2013.5.4>

제26조(예비경선) ①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3.2.27>

②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8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2.27>

③예비경선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 (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개정 2013.2.27>
3. 지명직 최고위원 3명 <개정 2013.2.27>
4. 원내대표

③제2항제3호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④제2항제3호의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노인, 여성, 노동, 지역, 청년 등을 우선 배려한다.<개정 2013.2.27>

⑤제2항제3호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청년최고위원은 당규가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28조(최고위원회의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2.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3. 당무전반에 관한 조정·감독
- 4.<삭제 2013.5.4>
5. 당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심의.의결 <개정 2013.5.4>
6. 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7.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임시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9.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당 또는 사고위원회 판정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29조(최고위원회의 소집 등) ①최고위원회는 주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

②상임고문,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및 정책연구소의 소장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3.5.4>

③최고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상임고문과 고문)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전직 당대표 및 그에 준하는 원로 약간 명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5.4>

②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5.4>

③상임고문과 고문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고문은 최고위원회 등에 주요 당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1조(국정자문회의) ①당대표는 국정 및 주요 당무에 대한 자문, 각계 직능 분야와의 협력 및 민의 수렴, 국민에 대한 당론의 홍보 등을 위하여 국정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정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세계한인민주회의) ①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민주화, 재외동포의 권익신장 및 동포사회의 발전, 한민족문화의 세계화 등을 위하여 세계한인민주회의를 둔다.

②세계한인민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의2(전국직능위원회) ①직능조직의 확대, 직능정책의 수립 및 직능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국직능위원회를 둔다.

②전국직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13.5.4]

제33조(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①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 지원확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둔다.

②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인권위원회) ①인권옹호와 신장,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환기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전국노동위원회) ①노동조직의 확대, 노동정책의 수립 및 노동계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노동위원회를 둔다.

②전국노동위원회는 주요 노동정책에 관하여 심의하고 당에 제안할 수 있다.

③당대표는 전국노동위원회의 노동정책에 관한 제안을 국정 및 주요 당무에 반영한다.

④전국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의2(교육연수원) ①당원과 당직자의 교육·연수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교육연수원을 둔다.

②교육연수원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13.5.4]

제36조(특별보좌역과 보좌역) ①당대표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을 둘 수 있다.

②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37조(당대표 비서실) ①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둔다.

②당대표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당대표 비서실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대변인) ①당의 정책과 견해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두고,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재정위원회) ①당비모금 활동 등 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5.4>

1. 사무총장

2. 전략홍보본부장
 3. 전국여성위원장
 4. 사무부총장(인사담당)
 5.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6. 원내 수석부대표
 7. 정책연구소 부소장 중 1명
 8. 중앙당 총무국장,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원내 행정기획실장 <개정 2013.5.4>
- ③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맡는다.
- ④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전국여성위원회) ①여성조직의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 정책 개발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여성위원회를 둔다.

②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여성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여성인재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③전국여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전국청년위원회) ①청년조직의 확대와 청년정책의 수립, 기타 청년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청년위원회를 둔다.

②전국청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전국노인위원회) ①노인조직의 확대와 노인정책의 수립, 기타 노인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노인위원회를 둔다.

②전국노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4조(전국장애인위원회) ①장애인조직의 확대와 장애인정책의 수립, 기타 장애인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장애인위원회를 둔다.

②전국장애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전국대학생위원회) ①대학생의 자치활동 지원 및 교류활성화, 대학생 관련 정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대학생위원회를 둔다.

②전국대학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특별위원회) ①특정한 상시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설특별위원회를 둔다.

②특정한 당면과제에 대처하거나 당세확장 등을 위하여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설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상설특별위원회의 종류와 업무, 구성과 운영 및 특별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사무처

제47조(구성) ①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그 아래에 당규로 정하는 위원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기구를 둔다.

③사무총장 아래에 전략 및 홍보 업무를 통할하는 전략홍보본부를 둔다.

④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약간 명의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⑤사무처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사무총장 등) ①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당무집행 전반에 관하여 사무직당직자의 복무상황을 관리한다.

②사무총장 및 전략홍보본부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사무처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개정 2013.5.4>

③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무총장은 일상적 당무에 대한 제안 및 협의, 당무집행을 위하여 당무집행회의를 둘 수 있다.

⑤제4항의 당무집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중앙당당직자의 구분과 임면) ①중앙당당직자는 정무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한다.

②정무직당직자라 함은 중앙당 각급 위원회(급) 위원(급) 이상의 당직자를 말한다.

③사무직당직자라 함은 중앙당, 관련 법인 및 국회직 등의 실·국장급 이하 당직자를 말한다.

④사무직당직자는 당대표가 인사위원회의 제청과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면한다. 다만,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5.4>

⑤중앙당당직자의 구분, 인사, 업무분장, 직급, 임면, 보임 및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정책위원회

제50조(지위와 구성) ①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원외정책위원은 당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51조(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
2. 당 정책 및 각급 선거공약의 개발
3.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4.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대안제시
5. 정책홍보 등 정책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52조(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13.5.4>

③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다만, 부의장 중 1명은 전국노동위원회가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개정 2013.5.4>

④정책위원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정책조정위원회) ①원활한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아래에 당규로 정하는 분야별 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

위원장 및 위원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개정 2013.5.4>

제54조(상임분과위원회 등) ①정책위원회에 국회상임위원회에 상응하는 상임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상임분과위원회는 해당 국회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임명하는 원외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에 상응하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맡는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간사가 맡는다.

④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국회상임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상임분과위원장이 궐위될 때에는 후임자가 그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⑤정책위원회에 특수정책기획단, 정책자문기구, 정책평가기구, 예산결산심의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법안심사위원회) ①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책위원회 의장 아래에 법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법안심사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속 정책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6조(정책조정회의) ①분과위원회간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둔다.

②정책조정회의는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해당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소 부소장 중 1명 및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약간 명의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5.4>

③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는다.

④해당분야 분과위원회는 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7조(실무기구) ①정책개발, 자료수집, 당정협의회와 기타 정책에 관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실무기구를 둔다.

②실무기구의 구성과 운영, 사무직당직자의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58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9조(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일상적 원내 활동 대책의 심의·의결
2. 당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주요정책 및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3. 원내대표의 선출
4.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추천
5.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구성 및 폐지
6.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7.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8.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60조(소집 등) ①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②원내대표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되,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③상임고문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9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1조(원내대책회의) ①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2절 원내대표

제62조(원내대표) ①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②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원내 주요 회의를 주재한다.

- ④원내대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국회상임위원회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호선한다.
- ⑤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 ⑥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 ⑦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⑧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내대표를 재선출할 때까지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⑨원내대표의 선출과 불신임투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원내부대표) ①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보좌하고,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다른 교섭단체와의 협상을 담당한다.

②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원내부대표는 약간 명으로 하고 원내대표가 지명한다.

제64조(실무기구) ①원내대책, 입법 및 정책 활동의 기획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원내대표 아래에 실무기구를 둔다.

②중앙당의 정당 활동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의 정책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당보좌진협의회를 둔다.<개정 2013.5.4>

③실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지방조직

제1절 시·도당대의원대회

제65조(지위와 구성) ①시·도당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대의기관이다.

②시·도당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중 해당 시·도에 소속한 자로 한다.

③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도당대의원대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제66조(권한) ①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위원장 선출
2. 시·도당상무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3. 중앙당이 요구하는 안건처리
4.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②시·도당대의원대회는 상무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67조(소집) ①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까지 개최한다.

②임시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

만,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개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3. 시·도당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4. 당무위원회가 요구하는 때

제2절 시·도당상무위원회

제68조(구성) ①시·도당의 의결기관으로 시·도당상무위원회를 둔다.

②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1. 시·도당위원장
2. 지역구국회의원
3. 시·도당의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직능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사무처장 및 정책실장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6. 당 소속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장단
7.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 이 경우 위원 수는 제1호부터 제6호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5.4>

③제2항제7호의 시·도당상무위원은 시·도당위원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제69조(권한) 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2. 시·도당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및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상벌안의 확정
3. 당헌 제14조제2항제17호의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추천 <개정 2013.5.4>
4.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중앙당이 위임 또는 시달한 사항
6.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0조(소집) 시·도당상무위원회는 의장 또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상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시·도당 구성과 집행기구

제71조(위원장) ①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을 통할한다.

②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시·도당대의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를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하여 선출한다. 다만,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27, 2013.5.4>

③시·도당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이 직무대행 운영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시.도당위원장의 선출 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개정 2013.5.4>

제7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시·도당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5.4>

1. 시.도당위원장 <신설 2013.5.4>
2. 시.도당 노동위원장,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직능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신설 2013.5.4>
3. 시.도당상무위원회가 호선하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운영위원 <신설 2013.5.4>

②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제73조(운영위원회 권한) 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 시·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시·도당상무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채택
5.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결정
6.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74조(사무처 등) ①시·도당에 사무처와 정책실을 두며, 사무처에 처장을 두고 정책실에 실장을 둔다.

②시·도당에 상임고문과 고문,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노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노동위원회 및 대학생위원회를 두고,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시·도당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지역위원회

제75조(지역위원회) ①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의 협의체이다.

②지역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대의원대회와 상무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하며, 당원이 선출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등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역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⑥지역대의원대회는 100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⑦지역상무위원회는 9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위원회의 중요한 당무의 처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하나의 지역위원회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지역상무위원회를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⑧지역위원장의 선출, 지역대의원대회 및 지역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정책연구소

제76조(정책연구소) ①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당원

및 차세대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연구소는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개정 2013.5.4>

②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연구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선임하되,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5.4>

③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3.5.4>

④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⑤연구소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5.4>

제8장 윤리위원회

제77조(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윤리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8조(중앙당윤리위원회 구성) ①중앙당윤리위원회는 당무위원회 직속으로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9명 이하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인사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중앙당윤리위원은 당대표의 추천으로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중앙당윤리위원장은 중앙당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앙당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9조(중앙당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①중앙당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과 당 외부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와 결정
4. 조직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5. 시·도당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6. 시·도당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권한
7. 기타 당규에 명시된 권한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과 징계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대표가 시행한다.

제80조(시·도당윤리위원회 구성) ①시·도당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9명 이하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인사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시·도당윤리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시·도당윤리위원장은 시·도당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시·도당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1조(시·도당윤리위원회의 권한) ①시·도당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과 당 외부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해당 시·도당의 회계에 관한 감사
4.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과 징계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한다.

③시·도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시·도당윤리위원회가 소속 당원에 대한 포상·징계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도당윤리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 및 중앙당윤리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예산과 회계

제82조(예산과 결산) 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제83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84조(예산결산위원회) ①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예산결산위원회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 할 수 있다.

③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13.5.4>

제85조(회계감사) ①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외부의 회계전문가 약간 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6조(세부규정) 예산, 결산, 회계감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선거관리

제87조(선거관리위원회) ①당대표·최고위원·원내대표 등을 선출하는 당직선거와 대통령·국회의장 및 부의장·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 의결로 그 선거를 실시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위임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 이하의 부위원장 및 당규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두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선거관리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정수, 권한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8조(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 ①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선거운동원 및 대의원, 각급 선거인단, 기타 관련자들의 부정선거를 인지한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②모든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5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③선거부정의 종류와 제재방법, 경선 불복의 종류 및 조사와 심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공직선거

제1절 선거기구

제89조(선거기획단) ①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0조(선거대책기구) ①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②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부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

한다.

③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제91조(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①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를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②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후보자 추천 관련 기구

제92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①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본 장에서 “공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공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3.5.4>

④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3.5.4>

⑤공천심사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3조(인재영입기구) ①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②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의 명칭, 구성, 운영, 영입한 인재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후보자 추천

제94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5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6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 라 한다)는 중앙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순위를 선정한 후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순위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정치신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7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①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 라 한다)는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 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8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대의 필요성 또는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하여 당대표는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시·도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여부 또는 후보자를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13.5.4>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9조(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해당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추천한다. 다만,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자를 심사하여 제1항의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③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대의 필요성 또는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하여 당대표는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시·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여부 또는 후보자를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4>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0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순

위선정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1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 및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후보자 추천심사

제102조(심사기준) ①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③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는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을 반영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사무직당직자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5.4>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3조(심사방법)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서류심사, 지역실사, 면접, 집단토론, 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제6절 경선

- 제104조(추천선거)** ①공직선거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5.4>
- ③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또는 당원경선(지역대의원대회경선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최고위원회의 합의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 ⑤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 및 장애인후보자(중증장애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3.5.4>
1.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 및 장애인후보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5.4>
 2.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후보자 및 장애인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개정 2013.5.4>
- ⑥경선의 구체적인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경선방법은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120일까지 확정한다.<개정 2013.5.4>

제7절 재심 등

- 제105조(재심)** ①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경선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경선의 경우

에도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중앙당재심위원회” 라 한다)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시.도당재심위원회” 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앙당재심위원회 및 시.도당재심위원회는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구성한다.

③중앙당재심위원회 및 시.도당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재심사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최고위원회는 중앙당재심위원회 및 시.도당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후보교체, 재경선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교체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6조(공직후보자의 인준) ①당무위원회는 인준 요청된 자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인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당무위원회는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공직후보자 인준요청이 없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결할 수 있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7조(재추천) ①공직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

②후보등록기간 촉박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에서 추천을 무효화 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여 재추천할 수 있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8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부터 제99조, 제102조부터 제104조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장 당과 대통령의 관계

제109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③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3장 지방자치

제110조(지방자치정책협의회) ①지방자치에 관한 당정 간의 정책협의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중앙당에는 당대표 직속으로, 각 시·도당에는 시·도당 위원장 직속으로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둔다.

②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장 당헌 개정 등

제111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112조(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①당헌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국대의원 대회의장 또는 중앙위원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3조(당규의 제정 등) ①당의 각급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의 회의의 소집,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당의 각급 집행기관·부서 및 자문기관의 조직, 기구, 업무분장, 운영, 인원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당대표의 발의가 있을 경우
2.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3. 재적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경우

④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114조(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15장 합당과 해산 및 청산

제115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장 보칙

제116조(회의의 소집과 의사) ①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 재적 3분의1 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를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의 출석의 편의를 고려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지에 불응하는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당헌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17조(표결) ①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나 특별기구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참석자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7조의2(정무직당직자의 임기) 당대표가 임명하거나 최고위원회 의결로 선임한 정무직당직자의 임기는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해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5.4]

제118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법정부채과 인장의 인계) ①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

· 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채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 하여야 한다.

②법정부채과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 로 정한다.

제119조(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의 변경) 당헌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전 국대의원대회 개최일은 당의 사정에 따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후 3개월의 기 간 내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0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당무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 한다.

부칙 <2011.12.16,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통합(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지도부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당헌 제21조 및 제22조, 제24 조 및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 제62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합당) 후 최초로 실시하 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선거 전까지 통합(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가 의결한 당대 표, 최고위원 및 원내대표로 임시지도부를 구성하며, 임시지도부가 최고위원회와 당 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3조(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당헌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합당) 후 최초로 실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선거는 통합(합당) 수입기관 합동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하는 대의원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 당원과 시민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여 선출한다.

부칙 <2012.12.28,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2.27>

제3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특례)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모두 궐위 되고 후임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한다. 이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대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임 권한을 당무위원회 와 의원총회 연석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부칙 <2013.2.27,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에 관한 특례) ①이 당헌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전국대의원대회는 제16조제1항,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119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4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로 개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최하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선거에 관한 조치) 이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지도부는 당직선거에 당원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시행한다.

부칙 <2013.5.4,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전국대의원대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주당 당규, 2014-03-06

- 당규 제1호 당인규정 (2012.1.5 제정)
- 당규 제2호 당원규정 (2013.4.29 개정)
- 당규 제3호 당비규정 (2013. 4. 29 개정)
- 당규 제4호 중앙조직규정 (2013.4.29 개정)
- 당규 제5호 지방조직규정 (2013. 4. 29 개정)
- 당규 제6호 사무직당직자인사 및 복무규정 (2013.4. 29 개정)
-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2013. 4. 29 개정)
-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2012.2.13 제정)
- 당규 제9호 윤리위원회규정 (2012.2.24 제정)
- 당규 제10호 선거대책위원회규정 (2012.3.20 제정)
- 당규 제11호 원내대표선출규정 (2012.4.19 제정)
- 당규 제12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규정 (2012.4.19 제정)
- 당규 제13호 회의록규정 (2012.4.19 제정)
-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2013.4.29 개정)
- 당규 제1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2013. 4. 5 개정)
- 당규 제16호 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2012. 8. 29 개정)
- 당규 제17호 시·도당위원장및지역위원장선출규정 (2013. 4. 5 개정)
- 선거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개정 2012. 8. 17)
- 정책대의원 추천에 관한 시행세칙(개정 2013. 4.25)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 (2012.3.5 개정)
-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여론조사경선 시행세칙(2012.2.17 제정)
- 4.11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원경선시행세칙(2012.2.29 제정)
- 4.11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시행세칙(2012.2.29 제정)
-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개정 2013. 4. 10)
- 4.11 세종시 및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2012.3.3 개정)
- 4.11 세종시 및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여론조사경선 시행세칙(2012.2.27 제정)
- 사무직당직자 명예퇴직에 관한 시행세칙
- 사무직당직자인사관리규칙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여론조사경선 시행세칙**

[제정 2012. 2. 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95조 및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여론조사경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공정경쟁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당내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또는 선거연대를 위한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4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기관의 선정 등) ①여론조사기관은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당 외부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중 2개의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한다.

②개 여론조사기관 모두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방법으로 조사한다.

③전화명부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조사대상자를 균등하게 나누어 선정된 2개의 여론조사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제6조(조사방법) ①국민여론조사의 표본은 2011년 12월 31일의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에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19세 이상 39세 이하, 40세 이상 59세 이하, 60세 이상

3. 지역별 : 해당 선거구의 광역의원선거구단위별, 단, 복합선거구의 경우 시군구 단위
별 구분

②조사대상자 중 유효응답이 700샘플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무응답 및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④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2.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3. 지역별 할당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지역)

⑤성별·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목소리로 확인한다.

⑥후보자 결정을 위한 본 질문의 평가항목은 ‘당내 후보자 적합도’ 로 한다.

⑦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25자 이내의 대표경력 2개만을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입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⑧조사의 보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후보자의 호명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2. 후보자의 성명이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3. 할당 미달 등의 이유로 추가하여 조사하는 때에도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순환되도록 호명한다.

4. 보기에는 “000후보” 와 같이 이름만을 명기한다.

⑨조사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1일간 조사한 후 할당된 샘플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날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제9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700샘플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사이로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되는 여론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조사의 질문 및 응답 등 전체 과정은 녹취한다.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 각 1인, 후보자 측 각 1인으로 제한한다.

국민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결과의 보고) ①국민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지원 담당자와 여론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국민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는 날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각 후보자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개봉(자료(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8조(당선인의 결정)

①국민여론조사경선의 당선인은 2개 기관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여 득표율이 높은 자로 결정하며,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국민경선 시행세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이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2개 기관의 국민여론조사 결과의 평균값으로 하며,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국민여론조사경선의 시행에 대하여 당헌·당규 또는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12. 2. 17>

이 시행세칙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4.11 세종시 및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여론조사경선 시행세칙

[제정 2012. 2. 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104조 및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세종시 및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여론조사경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공정경쟁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당내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또는 선거연대를 위한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4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기관의 선정 등) ①여론조사기관은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당 외부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중 2개의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한다.

②2개 여론조사기관 모두 유선전화로 대상으로 한 RDD방법으로 조사한다.

③전화명부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조사대상자를 균등하게 나누어 선정된 2개의 여론조사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제6조(조사방법) ①국민여론조사의 표본은 2011년 12월 31일의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에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19세 이상 39세 이하, 40세 이상 59세 이하, 60세 이상
3. 지역별 : 해당 선거구의 광역의원선거구단위별, 단, 복합선거구의 경우 시군구 단위
별 구분

②조사대상자 중 유효응답이 700샘플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무응답 및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④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2.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3. 지역별 할당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지역)

⑤성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목소리로 확인한다.

⑥후보자 결정을 위한 본 질문의 평가항목은 ‘당내 후보자 적합도’ 로 한다.

⑦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25자 이내의 대표경력 2개만을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입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⑧조사의 보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후보자의 호명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2. 후보자의 성명이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3. 할당 미달 등의 이유로 추가하여 조사하는 때에도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순환되도록 호명한다.
4. 보기에는 “000후보” 와 같이 이름만을 명기한다.

⑨조사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1일간 조사한 후 할당된 샘플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날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제9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700샘플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사이로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되는 여론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조사의 질문 및 응답 등 전체 과정은 녹취한다.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인, 후보자 측 각 1인으로 제한한다.

국민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결과의 보고) ①국민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지원 담당자와 여론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국민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는 날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각 후보자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개봉(자료(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8조(당선인의 결정)

①국민여론조사경선의 당선인은 2개 기관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여 득표율이 높은 자로 결정하며,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국민경선 시행세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이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2개 기관의 국민여론조사 결과의 평균값으로 하며,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국민여론조사경선의 시행에 대하여 당헌·당규 또는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12. 2. 27>

이 시행세칙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

[제정 2012. 2. 8]

[개정 2012. 2. 10]

[개정 2012. 2. 15]

[개정 2012. 2. 17]

[개정 2012. 2. 20]

[개정 2012. 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104조 및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이하 “국회의원선거” 라 한다)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경선(이하 “경선” 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 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모바일투표” 란 휴대전화를 통한 투표를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현장투표” 란 투표소에서 기표방법(전자투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제3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정경쟁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

을 함에 있어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당내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에의 승복 또는 선거연대를 위한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준수의무) ①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8조(경선방법) 경선은 선거인단 모바일투표와 선거인단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제9조(경선사무의 위탁) 현장투표의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선거인

제10조(자격) ①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2012년 4월 11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 모집 개시일 5일전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확인 및

주소확인에 응해야 한다.<개정 2012.2.17>

②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한다.

③모바일투표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유한 자에 한한다.

제11조(공모) ①선거인단은 선거인단 공모에 응한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선거인단 공모는 2012년 **2월 20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모기간 내에 경선이 실시되는 때에는 해당 경선지역의 공모는 경선일 전 5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2.15>

③전화접수 방법에 따른 선거인단의 모집은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2012년 **2월 20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개정 2012.2.15>

④인터넷접수(모바일웹접수 포함. 이하 같다) 방법에 따른 선거인단의 모집은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2012년 **2월 20일 오전 11시부터** 2012년 2월 29일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는 24시간 모집한다.<개정 2012.2.15>

⑤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모기간을 변경하거나 추가 공모를 할 수 있다.

제12조(접수방법 등) ①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중앙당 전화 접수처, 당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웹페이지에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화접수의 경우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야 하며, 녹취된 내용을 선거인단 신청서로 갈음한다.

③선거인단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명시), 전화번호 및 투표방법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필수 입력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선거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선거인단 명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⑤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중복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먼저 등록되는 선거인단의 선거인으로 본다.

제13조(선거인단의 확인 절차) ①전화접수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자에 대하여는 실

명인증 시스템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1개의 전화번호로 **2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한다.<개정 2012.2.10>

②인터넷접수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자에 대하여는 공인인증서 인증 시스템 또는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다.

③모바일투표를 신청하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자에 대하여는 **인증번호를 발송하거나 본인인증 콜백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을 통해 휴대전화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개정 2012.2.17>

④모바일투표를 신청하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자의 주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한다.

1.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자가 기재한 주소(이하 “기재주소” 라 한다)와 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이하 “등록주소” 라 한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모바일투표 신청을 할 수 없다.

2. 기재주소와 등록주소가 일치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선거인단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이 경우 주소의 읍.면.동을 기준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3. 기재주소와 등록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신청자는 본인의 기재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한한다)을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단 마감일까지 신청자가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현장투표 선거인 자격을 부여한다.**<개정 2012.2.27>

4. 제3호의 신분증이 기재주소와 일치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선거인단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이 경우 주소의 읍.면.동을 기준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의 작성. 확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접수가 종료된 후 다음날까지 선거인단 명부(이하 “선거인명부” 라 한다)를 작성하되, 모바일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명부(이하 “모바일명부” 라 한다)와 현장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명부(이하 “현장명부” 라 한다)를 각각 작성한다.

②선거인단 참여 신청자는 선거인단의 모집기간과 선거인명부 작성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결과를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한 투표방법을 변경하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으며 모바일투표 신청자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 처리를 마친 후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제15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 사본 1부를 교부하되, 모바일명부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교부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선거인명부를 교부받은 후보자는 선거인명부가 상업적 목적 등 경선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16조(선거인명부의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한 경선에 대하여는 경선일 전 2일까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장 투.개표 등

제17조(모바일투표) ①모바일투표는 모바일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모바일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모바일투표는 2일간 실시하되, 첫 날 3회를 실시한 후 다음날 2회를 실시한다. 이 경우 모바일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모바일투표를 위한 모바일ARS는 모바일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발송한다.

④모바일ARS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개정 2012.2.20>

⑤지지후보 선택 질문의 경우,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하여 재투표 의사가 있을시 투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단, 본인의사, 무응답, 잘못된 선택 등에 의한 재투표는 2회에 한하여 허용

한다.<개정 2012.2.20>

⑥모바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⑦모바일ARS 발송 5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모바일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모바일ARS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이름만을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한다.

제18조(현장투표) ①현장투표는 현장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현장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현장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2.2.20>

③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현장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⑤현장투표는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⑥현장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한한다)의 주소가 현장명부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 이 경우 주소의 읍.면.동을 기준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제19조(개표방법) ①모바일투표의 결과는 원본(Raw Data) 그대로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모바일투표의 결과는 현장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현장투표 결과와 동시에 개표(자료(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제20조(투표 및 개표 참관 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선거

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참관인의 자격과 수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22조(당선인의 결정) ①모바일투표의 유효투표결과와 현장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제24조제1항에 따라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의 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100분의 30분으로 반영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특례) 모바일투표 주소 확인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소 확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국민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①선거인단 모집 결과 해당 선거구 유권자총수의 100분의 2미안인 경우에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

②최고위원회가 국민여론조사의 실시를 결정하는 때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여론조사의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국민경선의 시행에 대하여 당헌·당규 또는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12. 2. 8>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10>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15>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17>

이 규칙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4.11 세종시 및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

[제정 2012. 2. 27]

[개정 2012. 3. 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104조 및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세종시 및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경선(이하 “경선”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모바일투표”란 휴대전화를 통한 투표를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현장투표”란 투표소에서 기표방법(전자투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제3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정경쟁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당내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또는 선거연대를 위한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준수의무) ①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8조(경선방법) 경선은 선거인단 모바일투표와 선거인단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제9조(경선사무의 위탁) 현장투표의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선거인

제10조(자격) ①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2012년 4월 11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 모집 개시일 5일전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확인 및 주소확인에 응해야 한다.

②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한다.

③모바일투표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유한 자에 한한다.

제11조(공모) ①선거인단은 선거인단 공모에 응한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선거인단 공모는 2012년 3월 2일부터 2012년 3월 5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개정 2012.3.3>

③전화접수 방법에 따른 선거인단의 모집은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④인터넷접수(모바일웹접수 포함. 이하 같다) 방법에 따른 선거인단의 모집은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2012년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2012년 3월 5일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는 24시간 모집한다.<개정 2012.3.3>

⑤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모기간을 변경하거나 추가 공모를 할 수 있다.

제12조(접수방법 등) ①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중앙당 전화접수처, 당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웹페이지에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화접수의 경우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야 하며, 녹취된 내용을 선거인단 신청서로 갈음한다.

③선거인단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명시), 전화번호 및 투표방법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필수 입력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선거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선거인단 명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⑤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중복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먼저 등록되는 선거인단의 선거인으로 본다.

제13조(선거인단의 확인 절차) ①전화접수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자에 대하여는 실명인증 시스템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1개의 전화번호로 2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한다.

②인터넷접수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자에 대하여는 공인인증서 인증 시스템 또는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다.

③모바일투표를 신청하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자에 대하여는 인증번호를 발송하거나 본인인증 콜백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을 통해 휴대전화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④모바일투표를 신청하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자의 주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한다.

1.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자가 기재한 주소(이하 “기재주소” 라 한다)와 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이하 “등록주소” 라 한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모바일투표 신청을 할 수 없다.
2. 기재주소와 등록주소가 일치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선거인단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이 경우 주소의 읍.면.동을 기준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3. 기재주소와 등록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신청자는 본인의 기재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한한다)을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는 때 또는 신분증 제출자를 식별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선거인단 명부에서 제외한다. 다만 기재주소와 등록주소 불일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요구하는 경우 현장투표로 투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4. 제3호의 신분증이 기재주소와 일치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선거인단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이 경우 주소의 읍.면.동을 기준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의 작성. 확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접수가 종료된 후 다음날까지 선거인단 명부(이하 “선거인명부” 라 한다)를 작성하되, 모바일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명부(이하 “모바일명부” 라 한다)와 현장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명부(이하 “현장명부” 라 한다)를 각각 작성한다.

②선거인단 참여 신청자는 선거인단의 모집기간과 선거인명부 작성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결과를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한 투표방법을 변경하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으며 모바일투표 신청자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 처리를 마친 후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제15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

에게 선거인명부 사본 1부를 교부하되, 모바일명부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교부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선거인명부를 교부받은 후보자는 선거인명부가 상업적 목적 등 경선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16조(선거인명부의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한 경선에 대하여는 경선일 전 2일까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장 투.개표 등

제17조(모바일투표) ①모바일투표는 모바일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모바일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모바일투표는 2일간 실시하되, 첫 날 3회를 실시한 후 다음날 2회를 실시한다. 이 경우 모바일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모바일투표를 위한 모바일ARS는 모바일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발송한다.

④모바일ARS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⑤지지후보 선택 질문의 경우,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하여 재투표 의사가 있을시 투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단, 본인의사, 무응답, 잘못된 선택 등에 의한 재투표는 2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⑥모바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⑦모바일ARS 발송 5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모바일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모바일ARS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이름만을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한다.

제18조(현장투표) ①현장투표는 현장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현장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현장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현장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⑤현장투표는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⑥현장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공인자격증 등에 한한다)의 주소가 현장명부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 이 경우 주소의 읍·면·동을 기준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한다.<개정 2012. 3. 3>

제19조(개표방법) ①모바일투표의 결과는 원본(Raw Data) 그대로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모바일투표의 결과는 현장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현장투표 결과와 동시에 개표(자료(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제20조(투표 및 개표 참관 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참관인의 자격과 수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22조(당선인의 결정) ①모바일투표의 유효투표결과와 현장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제24조제1항에 따라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의 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100분의 30분으로 반영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특례) 모바일투표 주소 확인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소 확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국민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①선거인단 모집 결과 해당 선거구 유권자총수의 100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

②최고위원회가 국민여론조사의 실시를 결정하는 때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여론조사의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국민경선의 시행에 대하여 당헌·당규 또는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12. 2. 27>

이 규칙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무직당직자 명예퇴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5.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당규 제6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제48조에 따라 명예퇴직금 및 명예퇴직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헌 제49조③과 당규 제6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규직 사무직당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대상 및 지급

제3조(명예퇴직대상) ①명예퇴직대상은 사무직당직자로서 입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10년 이상 근속한 자로 정년 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았을 때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금의 지급대상 등) ①제3조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명예퇴직금 지급을 위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당규 제6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제52조에 따른다.

③사무총장은 당 예산상황을 고려해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명예퇴직 실시공고) ①명예퇴직은 당해 정기인사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무총장은 명예퇴직대상기준 및 인원, 신청기간, 명예퇴직금에 대한 책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시 이전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5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사무총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2항 규정이 정한 기간을 달리할 수도 있다.

제3장 신청 및 결정 통지

제6조(명예퇴직 신청) 제2조의 사무직당직자가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기간 내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자 결정) ①사무총장은 명예퇴직신청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직당직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근무평정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당연퇴직 대상인 자
4. 그 밖에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상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의 수급계획, 예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허가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대상자 통지 등) ①명예퇴직 대상자가 결정되면 사무총장은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에게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 받은 자는 명예퇴직신청 당시 제출된 명예퇴직원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산정기준 및 환수

제9조(명예퇴직금 지급액) ①명예퇴직금 지급액은 명예퇴직 신청시의 전년도 지급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 잔여기간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명예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불로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퇴직금 환수대상 등) 사무총장은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명예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
3. 제2조에 해당하는 사무직당직자와 시·도당 유급당직자로 재취업하는 경우

제5장 보칙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12조(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명예퇴직 시행은 2007년 이후 입사한 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부칙 <2013.5.27, 제1호>

이 규정은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년퇴직 잔여기간	지급 비율(전년도 연봉기준)	비고
1년	50%	
2년	100%	
3년	150%	
4년	200%	

5년	250%	
6년	300%	
7년 이상	300%	

[별지서식1]

명예퇴직신청서

① 소속		③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② 직(위)급 (호봉)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		
⑦ 전화번호 (자택)		⑧ 휴대폰	
⑨ 입사일		⑩ 근속년수	년 월
⑪ 퇴직예정일		⑫ 정년예정일	
⑬ 정년일		⑭ 정년잔여년수	
⑮ 수당청구액		⑯ 산출내역	
<p>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당규 제6호사무직당직자인사 및복무규정 제48조에 따라 시행되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며 이에 따른 명예퇴직금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1. 명예퇴직원 1부</p> <p>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p> <p>20년 월 일</p> <p>신청인 (인)</p>			
⑰ 확인	인사담당	직급 :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3. . .

소속(실·국)의 장 (인)

민주당 사무총장 귀하

※ 기재상 주의 :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선(㉑) 안은 반드시 인사 담당(국)자가 기재한다.

[별지서식2]

명 예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사유로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 자필)

2013년 월 일

신 청 인 (인)

민주당 사무총장 귀하

※ 확인사항

1. 징계의결 요구사항에 있지 않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지 않음
3. 수사기관에 비위조사 중에 있지 않음
4. 비위에 대한 연대책임자가 아님
5. 면직사유

위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사무직당직자인사관리규칙

<제정 2013. 12.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규 제6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직자의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이 규칙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직당직자의 직제 등) ①사무직당직자의 일반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직급이라 한다.

1. 실장.국장(국장급이라 칭한다)
2. 부실장.부국장(부국장급이라 칭한다)
3. 부장(부장급이라 칭한다)
4. 차장(차장급이라 칭한다)
5. 간사(간사급이라 칭한다)

②사무직당직자 중 정책위원회 사무직당직자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직급이라 한다.

1. 수석전문위원(국장급)
2. 전문위원(부국장급)
3. 심의위원(부장.차장급)

③계약직당직자의 직제 및 직급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발령) 당규 제6호 제11조(인사발령)에 의한 인사발령을 시행 시 총무국은 이를 당내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조(인사기록) ①당직자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개인별 인사기록은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각종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기록

③인사관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명령서
2. 채용에 관한 서류
3. 인사고과평가서
4. 인사기록표
5. 승진후보자 명부
6.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서류
7. 면직에 관한 서류
8. 징계에 관한 서류
9. 제 증명 발행 서류
10.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장 신규 채용

제5조(신규채용 등) 당규 제6호 제9조(신규채용)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채용광고) 신규 채용시에는 당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 중 1개 이상에 채용공고를 게재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중앙일간지 채용 공고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신규채용자 제출서류) 신규채용자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경력(재직)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외국어자격시험증명서(필기 및 면접대상자, 소지자에 한함)
7. 채용 분야의 연구 실적 및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8. 기타 인사위원회가 정한 서류

제8조(전형 구성)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하며,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40%), 면접심사(30%), 집단토론(30%)으로 시행한다.

제9조(서류심사의 평가 항목) ①신규채용시 서류 심사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경력 및 사회활동
2.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3. 기타 인사위원회가 정한 항목

②인사위원회는 1항의 평가항목을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출제.심사.면접위원 선정) ①인사위원회 전원으로 출제위원.심사위원.면접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제 및 심사위원, 면접관을 둘 수 있다.

제11조(면접심사 및 집단토론의 평가 항목) ①신규채용시 면접심사, 집단토론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

다.

1. 용모 및 태도
2. 당과의 이념적 동질성
3. 의사 소통 능력
4. 문제 해결 능력
5. 공헌성, 협동성, 주도성 등

②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항목을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③평가서는 별지에 의한다.

제12조(최종 합격자 통보) ①인사담당부서는 합격자에게 개별적으로 합격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유무선전화로 합격 통보를 하고, 최종 합격자를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최종합격자 이외에 약간명의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며, 수습기간 3개월이내에 신규당직자가 퇴사시 예비합격자를 신규 임용 할 수 있다.

제13조(수습기간) ①당규 제4호 제80조(사무직당직자) 의거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14조(당직자 재임용) 파면된 당직자와 명예퇴직을 한 당직자는 재임용할 수 없다. 단,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자의 재임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3장 승진

제15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당규 제6호 제15조(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최저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은 간사로서 3년

2. 부장은 차장으로서 3년

3. 부국장은 부장으로서 3년

4. 국장은 부국장으로서 3년

②최저승진 기간에는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2. 계약직 기간

③강임되었던 자가 원직책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을 통산한다.

제1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인사위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승진소요최저 요건을 구비한 당직자에 대하여 승진예정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는 정기인사 시행 7일전까지 완료한다.

③2항에 불구하고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승진배점 항목 및 구성) ①승진시험 배점항목은 필기시험(40%), 인사고과(40%), 다면평가(20%)로 구성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총평정점을 기준으로 승진을 심사한다. 총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평정 점수가 우수한 자

2. 포상 등 공헌가점을 취득한 자

3. 필기시험 성적 우수한 자

제18조(승진시험) ①승진시험심사대상자는 승진시험을 실시한다.

②승진시험은 필기시험, 인사고과, 다면평가, 포상 등으로 실시한다.

③전문직, 기능직 사무직당직자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승진심사 과정을 만들어 시행 할 수 있다.

④차장 및 부장급으로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사고과, 면접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필기시험) ①정강.정책 및 당헌.당규에 대해 필기시험을 본다.

②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논술 형태의 시험을 본다.

③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다면평가) ①다면평가단은 총 10명~20명 범위에서 선정하며, 상급직책자.동직책자.하위직책자 각 10명 이내로 구성, 평가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직 경력 2년 이상인자 위주로 구성하여 인품.리더십.청렴성.상벌 등 기타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②다면평가표는 별지 제4호에 의거 시행한다.

③최고점수 1,2위와 최저점수 1,2위 다면평가표는 배제하고 평가한다.

④다면평가단은 별지 제5호에 따라 서약한 후 다면평가표를 작성한다.

제21조(승진시 가점 및 감점) 현직급별 근무기간 중 포상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승진에 있어서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한다.

1. 가점 사항 : 당대표 포상(+3점), 기타 포상(+1점)

2. 감점 사항 : 중징계(-3점), 경징계(-2점), 경고 및 견책(-1점), 무단 결근 1일당(-0.5점), 무단조퇴 및 지각 1회당(-0.2점)

제4장 인사고과

제22조(목적) 당규 제6호 제16조(인사고과)에 의거, 사무직당직자 인사고과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시기) ①인사고과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한다.

②실시시기는 4월 정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시시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24조(인사고과 평가의 원칙) ①인사고과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되,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②피평가자의 직무의 중요성과 직무 수행의 난이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인사고과의 구성) 인사고과 평가는 조직관련, 인성관련, 업무관련, 교육·훈련관련 등 분야별로 실시한다.

제26조(평가 대상자의 구분) 인사고과 평가는 각실, 국장급과 부국장, 부장, 차장, 간사로 따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27조(평가자 및 확인자) ①당헌49조 3항에 명시된 사무직당직자를 대상으로 인사고과를 한다.

②관련 법인의 일반직 당직자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는 별지 제1호, 제2호 인사고과평가서에 의거해서 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다.

③평가자 및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1. 실, 국장의 인사고과 평가는 실, 국의 당해위원장이 실시한다. 단, 당해위원장이 없는 실, 국은 수석사무부총장이 실시한다. 최종 확인자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2. 실, 국의 부국장, 부장, 차장, 간사의 1차 평가는 실, 국의 장이 실시하고, 2차 평가는 실, 국의 당해위원장과 당해위원장이 없는 실, 국은 수석사무부총장이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한다. 최종 확인자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④평정대상기간 중 파견 등 인사이동한 자에 대해서는 파견된 부서의 장이 평가하되 원소속 실, 국 담당자의 평가의견을 들어 최종 평가한다.

⑤평가대상기간 동안 휴직(휴가, 병가 포함)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및 신규채용, 승진 후 2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평가를 미실시한다.

⑥평가자는 확인자와 평가방향을 사전 협의하고 별지 5호에 따라 서약한 후, 피평가자의 업무성과 및 개인의 자질,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⑦확인자는 평가점수, 평가의견의 적정성, 평가의 관대화, 엄격화 오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 평가한다.

제28조(평가방법) ①평가 분야별로 독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인사고과 평가의 일부분이 우수하거나 또는 열등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부분의 성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③평가자는 최종 평가 등급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아주미흡(D)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29조(업무성과작성) ①피평가자는 인사고과 실시 전까지 실.국장은 별지 제1호, 부국장.부장.차장.간사는 별지 제2호 인사고과 평가서에 있는 업무성과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사무직당직자가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다.

제30조(교육.훈련성적평정) ①중앙당에서 실시하는 피평가자 교육.훈련의 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②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당직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을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당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점수에 반영한다.

제31조(이의신청) ①피평가자는 승진 인사에 한하여 평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인사위원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자료의 보안) 인사고과를 위한 일체의 자료는 인사위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열람, 복사 또는 공개할 수 없다.

제33조(평가자에 대한 교육) 인사위원장은 인사고과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고과 평가 실시 전에 평가자에게 평가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순환보직

제34조(전보의 요건) 당규 제6호 제20조(순환보직)에 따른 정기인사의 순환보직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1. 조직의 침체 방지와 당무의 전문성, 연속성 조화
2. 정기 및 수시 근무 평정 결과를 반영 실시
3. 당직자 개인의 희망
4. 직제 및 정원 변경에 따른 인원 조정 여부
5. 소속부서장과 인사위원장이 보직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전보의 제한) 부국장급 이하 당직자는 직무계열 간 순환인사로 전보할 수 없다.

제6장 포상

제36조(포상시기) ①당규 제6호 제25조에 따른 포상은 연1회(12월말) 이상 실시한다.

②다만, 선거 승리 등 뚜렷한 성과가 인정되는 당직자에 대해서는 수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장 징계

제37조(징계운영) 당규 제6호 제26조의 2,3,4,5조에 따른 징계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1. 징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직자의 잘못은 과감히 관용함으로써 당직자를 보호
2. 구조적이고 관습화된 비위는 상위직부터 일벌백계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필벌함으로써 당직자 기강을 확립

제38조(징계간사 역할) ①징계간사는 인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및 증거 수집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징계간사는 징계요구를 받은자(이하 징계혐의자)에 대해 별지 제6호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징계간사는 인사담당 부국장으로 한다.

제39조(징계의결기한) ①인사위원회는 별지 제6호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인사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되, 인사위원회 개최일 2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41조(심문과 진술권) ①인사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인사위원회의 의결)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8호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인사위원장의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②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44조(인사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징계의 집행) 당대표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6조(회의의 비공개)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7조(비밀누설금지)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49조(징계처분 유지) ①징계처분을 행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②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된 징계처분이 변경되지 않도록 징계유지에 철저를 기한다.

제8장 신분보장

제50조(복직) ①복직이라 함은 휴직, 정직, 대기발령에 있는 당직자를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휴직을 제외한 정직, 대기발령에 있는 당직자의 복직은 당규 제6호 제26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51조(휴직의 기간) ①당규 제6호 제38조(휴직 등)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신의 교육시에는 6월 이내
2. 자신의 질병 치료시에는 3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로 연장

제52조(휴직의 효력) ①휴직 중인 당직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10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무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 기간이 끝난 당직자가 1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53조(국가 및 공공기관 주관 연수 추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연수 추천을 요청시에는, 사무총장은 모든 당직자 중 총 재직년수와 최근 재직년수를 합산하여 연수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장 고충처리

제54조(고충처리) ①당직자는 직무조건이나 신상문제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총장 및 수석부총장이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3.12.26, 제1호>

이 규칙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실.국장용>

인 사 고 과 평 가 서

□ 평가대상기간 :

성명	소속	직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업무성과

● 담당업무

● 업무목표 및 성과(분기별 기록)

기간	업무목표	업무성과	담당역할
1/4			
2/4			
3/4			
4/4			

2. 평가

	분야	배점	평가요소	요소별 점수					분야별점수
1	조직관련	30점	조직기여도	8	7	6	5	4	
			리더십	8	7	6	5	4	
			책임감	7	6	5	4	3	
			친화력	7	6	5	4	3	
2	인성관련	30점	성실성	8	7	6	5	4	
			도덕성	8	7	6	5	4	
			근무태도	7	6	5	4	3	
			모범성	7	6	5	4	3	
3	업무관련	30점	업무추진력	8	7	6	5	4	
			업무추진실적	8	7	6	5	4	
			업무개선	7	6	5	4	3	
			기획력	7	6	5	4	3	
4	교육.훈련	10점	참여도(당내행사포함)	4	3	2	1	0	
			집중력	3	2	1	0		
			적극성	3	2	1	0		
총 점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탁월(S:100점~95점), 우수(A:94점~85점), 보통(B:84점~75점),

미흡(C:74점~60점), 아주미흡(D:59점이하) 5등급으로 구분

3. 종합평가

종합평가의견

실적	평가근거가 드러나도록 작성(반드시 기재)
능력	상동

※ 평가자 직급 : 성명 : 서명 :

※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

<별지 제2호 서식 - 부국장.부장.차장.간사용>

인 사 고 과 평 가 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업무성과

● 담당업무

● 업무목표 및 성과(분기별 기록)

기간	업무목표	업무성과	담당역할

1/4									
2/4									
3/4									
4/4									
	분야	배점	평가요소	요소별 점수					분야별점수
1	조직관련	30점	조직기여도	8	7	6	5	4	
			팀워크	8	7	6	5	4	
			책임감	7	6	5	4	3	
			친화력	7	6	5	4	3	
2	인성관련	30점	성실성	8	7	6	5	4	
			도덕성	8	7	6	5	4	
			협동력	7	6	5	4	3	
			근무태도	7	6	5	4	3	
3	업무관련	30점	업무추진력	8	7	6	5	4	
			업무추진실적	8	7	6	5	4	
			업무개선	7	6	5	4	3	
			적극성	7	6	5	4	3	
4	교육.훈련	10점	참여도(당내행사포함)	4	3	2	1	0	

			집중력	3	2	1	0		
			적극성	3	2	1	0		
총 점									
평가등급									

2. 평가(1차평가자)

※ 평가등급 : 탁월(S:100점~95점), 우수(A:94점~85점), 보통(B:84점~75점),

미흡(C:74점~60점), 아주미흡(D:59점이하) 5등급으로 구분

3. 종합평가(2차평가자)

종합평가의견	
실적	평가근거가 드러나도록 작성(반드시 기재)
능력	상동

※ 1차평가자 직급 : 성명 : 서명 :

※ 2차평가자 직급 : 성명 : 서명 :

※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

<별지 제3호 서식>

이의신청 및 결정서

소속		직급		성명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확인자의 결정 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위원회의 결정 내용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다면평가표

1. 평가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2. 평가항목 및 채점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등급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불량 (2점)
근무실적 (20)	주어진 역할에 적합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10점)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는? (10점)					
직무수행능력(20)	기획력과 업무추진력을 구비하고 있는가? (10점)					
	문제인식 능력과 방향제시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가? (10점)					
직무수행태도(20)	항상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10점)					
	담당업무에 책임을 다하며 항상 신뢰할 수 있는가? (10점)					
리더십 (20)	자신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포용력과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가? (10점)					
	부하직원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있는가? (10점)					

도덕성 (20)	업무 내외 청렴성과 도덕성은 어느 정도 인가? (10점)									
	개인적인 연고나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 하는가? (10점)									
총평점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리더십	도덕성	계	(순위) (피평가자수)			
확인자	인사담당관 (인)					(서명) ※ 익명처리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평가자 서약서

본인은 인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개인적인 편견이나 정실에 치우치지 않는다.
- 조직발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 평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일체 비밀로 한다.
- 관대화 . 집중화 . 온정주의적 평가를 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장계의결요구서

인적 사항	①	한글		②소 속		③직위 (급)	
	성명	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재직 기간	
		⑥주 소					
⑦ 장계사유							
⑧ 장계의결요구의견							

	<p>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p> <p>년 월 일</p> <p>□□□□□□□□</p> <p>(징계간사) □ 인 □</p> <p>□□□□□□□□</p> <p>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p>
--	--

<별지 제7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	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직위(급)	
	④주 소				
⑤출 석 이 유					
⑥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⑦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p>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p> <p>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p> <p>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p>			

인사규칙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인사위원회 위원장 □ 인 □

□□□□□□

귀 하

------(절-----취-----선)-----

진술권포기서

인적사항	①성 명	한 글		②소 속	
		한 자		③직위(급)	
	④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징계의결서

징 계 협 의 자 인 적 사 항	①소 속	②직 위(급)	③성 명

<별지 제1호 서식 - 실.국장용>

인 사 고 과 평 가 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업무성과

● 담당업무

--

● 업무목표 및 성과(분기별 기록)

기간	업무목표	업무성과	담당역할
1/4			
2/4			
3/4			

4/4			
-----	--	--	--

2. 평가

	분야	배점	평가요소	요소별 점수					분야별점수
				8	7	6	5	4	
1	조직관련	30점	조직기여도	8	7	6	5	4	
			리더십	8	7	6	5	4	
			책임감	7	6	5	4	3	
			친화력	7	6	5	4	3	
2	인성관련	30점	성실성	8	7	6	5	4	
			도덕성	8	7	6	5	4	
			근무태도	7	6	5	4	3	
			모범성	7	6	5	4	3	
3	업무관련	30점	업무추진력	8	7	6	5	4	
			업무추진실적	8	7	6	5	4	
			업무개선	7	6	5	4	3	
			기획력	7	6	5	4	3	
4	교육·훈련	10점	참여도(당내행사포함)	4	3	2	1	0	
			집중력	3	2	1	0		
			적극성	3	2	1	0		
총 점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탁월(S:100점~95점), 우수(A:94점~85점), 보통(B:84점~75점),

미흡(C:74점~60점), 아주미흡(D:59점이하) 5등급으로 구분

3. 종합평가

종합평가의견	
실적	평가근거가 드러나도록 작성(반드시 기재)
능력	상동

※ 평가자 직급 : 성명 : 서명 :

※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

<별지 제2호 서식 - 부국장.부장.차장.간사용>

인 사 고 과 평 가 서

□ 평가대상기간 :

성명	소속	직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업무성과

● 담당업무

● 업무목표 및 성과(분기별 기록)

기간	업무목표	업무성과	담당역할
1/4			
2/4			
3/4			
4/4			

	분야	배점	평가요소	요소별 점수					분야별점수
1	조직관련	30점	조직기여도	8	7	6	5	4	
			팀워크	8	7	6	5	4	
			책임감	7	6	5	4	3	
			친화력	7	6	5	4	3	
2	인성관련	30점	성실성	8	7	6	5	4	
			도덕성	8	7	6	5	4	
			협동력	7	6	5	4	3	
			근무태도	7	6	5	4	3	
3	업무관련	30점	업무추진력	8	7	6	5	4	
			업무추진실적	8	7	6	5	4	
			업무개선	7	6	5	4	3	
			적극성	7	6	5	4	3	

4	교육.훈련	10점	참여도(당내행사포함)	4	3	2	1	0	
			집중력	3	2	1	0		
			적극성	3	2	1	0		
총 점									
평가등급									

2. 평가(1차평가자)

※ 평가등급 : 탁월(S:100점~95점), 우수(A:94점~85점), 보통(B:84점~75점),

미흡(C:74점~60점), 아주미흡(D:59점이하) 5등급으로 구분

3. 종합평가(2차평가자)

종합평가의견	
실적	평가근거가 드러나도록 작성(반드시 기재)
능력	상동

※ 1차평가자 직급 : 성명 : 서명 :

※ 2차평가자 직급 : 성명 : 서명 :

※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

<별지 제3호 서식>

이 의 신 청 및 결 정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확인자의 결정 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위원회의 결정 내용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다면평가표

1. 평가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2. 평가항목 및 채점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등급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불량 (2점)
근무실적 (20)	주어진 역할에 적합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10점)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는? (10점)					
직무수행능력(20)	기획력과 업무추진력을 구비하고 있는가? (10점)					
	문제인식 능력과 방향제시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가? (10점)					
직무수행태도(20)	항상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10점)					
	담당업무에 책임을 다하며 항상 신뢰할 수 있는가? (10점)					
리더십 (20)	자신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포용력과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가? (10점)					
	부하직원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있는가? (10점)					

도덕성 (20)	업무 내외 청렴성과 도덕성은 어느 정도 인가? (10점)									
	개인적인 연고나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 하는가? (10점)									
총평점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리더십	도덕성	계	(순위) (피평가자수)			
확인자	인사담당관 (인)					(서명) ※ 익명처리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평가자 서약서

본인은 인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개인적인 편견이나 정실에 치우치지 않는다.
- 조직발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 평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일체 비밀로 한다.
- 관대화 . 집중화 . 온정주의적 평가를 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장계의결요구서

인적 사항	① 성명	한글	②소 속	③직위 (급)
		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재직 기간
	⑥주 소			
⑦ 장계사유				
⑧ 장계의결요구의견				

	<p>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p> <p>년 월 일</p> <p>□□□□□□□□</p> <p>(징계간사) □ 인 □</p> <p>□□□□□□□□</p> <p>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p>
--	--

<별지 제7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	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직위(급)	
	④주 소				
⑤출 석 이 유					
⑥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⑦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p>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p> <p>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p> <p>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p>			

인사규칙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인사위원회 위원장 □ 인 □

□□□□□□

귀 하

------(절-----취-----선)-----

진술권포기서

인적사항	①성 명	한 글		②소 속	
		한 자		③직위(급)	
	④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징계의결서

징 계 협 의 자 인 적 사 항	①소 속	②직 위(급)	③성 명

<규칙 제1호>

선거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2. 5. 21]

[개정 2012. 8. 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및 제16호 「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에 따라 선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1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당직선거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를 위하여 모집한 당원.시민선거인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당내경선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당원.시민 선거인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선거인정보 보관에 관한 의사확인 등) ①당내경선을 위하여 당원.시민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선거인단 참여 신청인에게 향후 당내경선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의 보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2.8.17>

②제1항의 의사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당내경선 종료 후 별도의 명부(이하 “시민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③제2항의 시민명부에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우선한다)를 기재한다.

제5조(시민명부의 보관 등) ①시민명부는 중앙당이 보관하되,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파기할 수 있다.

②시민명부에 포함된 자를 제외한 선거인명부는 당내경선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이 파기한다.

제6조(선거인의 투·개표기록 보관기간)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선거인의 투·개표에 관한 모든 기록을 봉인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30일간 보관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헌,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및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에 따른 재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관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기록은 해당 재심 또는 이의신청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 한하며, 해당 범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선거인의 개인정보는 당내경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민명부에 기재된 자의 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유출·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민명부에 기재된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부칙 <2012.5.21>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17>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칙 제1호>

선거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2. 5. 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및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에 따라 선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당직선거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를 위하여 모집한 당원. 시민선거인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당내경선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당원. 시민 선거인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선거인정보 보관에 관한 의사확인 등) ① 당내경선을 위하여 당원. 시민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때에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인에게 향후 당내경선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의 보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사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당내경선 종료 후 별도의 명부(이하 “시민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③ 제2항의 시민명부에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우선한다)를 기재한다.

제5조(시민명부의 보관 등) ① 시민명부는 중앙당이 보관하되,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파기할 수 있다.

②시민명부에 포함된 자를 제외한 선거인명부는 당내경선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이 파기한다.

제6조(선거인의 투·개표기록 보관기간)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선거인의 투·개표에 관한 모든 기록을 봉인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30일간 보관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헌,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및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에 따른 재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관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기록은 해당 재심 또는 이의신청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 한하며, 해당 범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선거인의 개인정보는 당내경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민명부에 기재된 자의 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유출·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민명부에 기재된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부칙 <2012.5.21>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칙 제2호>

정책대의원 추천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4. 10]

[개정 2013. 4. 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14조제2항제24호에 따라 정책대의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5>

제2조 <삭제 2013.4.25>

제3조(정책대의원의 추천절차) 정책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 라 한다)는 정책대의원의 총 규모를 정하고 추천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2. 준비위원회는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정책대의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3. 추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정책대의원을 공모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4. 추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공모에 응한 회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정책대의원을 선정하고 그 명부를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3.4.25>
5.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정책당원 여부, 당비약정 여부 등 정책대의원 자격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준비위원회에 제출한다.
6. 준비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추천받은 정책대의원 명부를 작성하고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4조(정책대의원의 임기) ①정책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책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정책대의원에 대하여는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13조에 따라 당직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한다.

부칙 <2013.4.10, 제1호>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25, 제2호>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호>

당인규정

[제정 2012. 1. 5]

[개정 2013. 5.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당, 시·도당의 당인과 각급 기관의 장의 직인에 관하여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인의 정의) 중앙당, 시·도당의 당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 민주당의 인 <개정 2013.5.4>
2. 시·도당 : 민주당의 00시(도)당의 인, 민주당의 00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인 <개정 2013.5.4>

제3조(직인의 정의) 각급 기관의 장의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 민주당의 당대표의 인,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의 인, 중앙위원회 의장의 인, 선거관리위원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선거대책본부장의 인, 민주당의 원내대표의 인, 사무총장의 인, 정책위원회 의장의 인, 00위원장의 인 <개정 2013.5.4>
2. 시·도당 : 민주당의 00시(도)당의 위원장의 인, 민주당의 00시(도)당창당준비위원장의 인 <개정 2013.5.4>
3. 지역위원회 : 민주당의 00지역위원장의 인, 민주당의 00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의 인 <개정 2013.5.4>

제4조(당인과 직인의 사용) 당무와 관련하여 당과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교부, 인증하는 문서에는 이 당규가 정하는 당인과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당인과 직인의 보관) ① 중앙당의 당인과 직인 중 당대표의 인,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의 인, 중앙위원회 의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선거대책본부장의 인, 사무총장의 인은 총무국장이 보관하고,

그 외의 직인은 해당 기관의 선임 실.국장이 보관한다.

②시.도당의 당인과 직인은 각 시.도당의 사무처장이 보관하고,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당인과 직인은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보관한다.

③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의 직인은 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이 보관하고 지역위원장의 직인은 지역위원장이 보관한다.

제6조(규격 및 글씨) ①당인과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 제1호>와 같다.

②당인과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7조(교부 및 등록) ①중앙당의 당인 및 직인은 총무국이 제작하여 보관 또는 교부한다.

②시.도당과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당인 및 직인의 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인 및 직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중앙당 및 시.도당 당인과 각급 기관의 장의 직인 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중앙당 총무국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한다.

제8조(날인의 위치) ①중앙당 당인은 ‘민주당’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13.5.4>

②시.도당 당인은 ‘민주당의 00시(도)당’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13.5.4>

③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인증하는 자의 성명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당인 및 직인을 분실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제작 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인 및 직인을 재제작, 재교부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종전의 당인 및 직인대장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12.1.5,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4,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당인 및 직인의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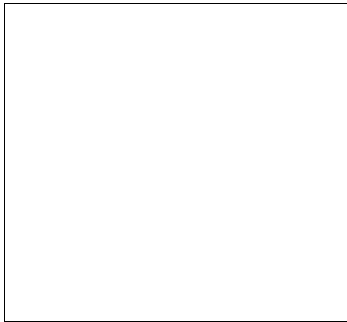
구 분		규 격
민주당	인	3.6cm
민주당당대표	인	3.0cm
민주당원내대표	인	3.0cm
전국대의원대회의장	인	3.0cm
중앙위원회의장	인	3.0cm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인	3.0cm
중앙선거대책본부장	인	3.0cm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인	2.7cm
민주당사무총장	인	2.7cm
정책위원회의장	인	2.7cm
○○위원회위원장	인	2.7cm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인	2.7cm
○○시(도)당창당준비위원장	인	2.7cm
○○시(도)당	인	2.4cm
○○시(도)당위원장	인	2.4cm
○○시(도)당대의원대회의장	인	2.4cm

○○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	인	
○○지역위원장	인	
기타	인	

<별지 제1호 서식>

당 인 대 장

당인(직인)명 :



등록	년 월 일	검인	
새긴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재료			
적요			

<당규 제2호>

당원규정

[제정 2012. 1. 5]

[개정 2013. 4. 5]

[개정 2013. 4.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라 당원의 입당.복당.전직.탈당, 당원명부 및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원의 의견제시) 당원은 당헌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앙당 및 시.도당 소관 부서에 문서(이메일,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에 따른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당원의 구분) ①지역당원은 해당 시.도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해당 시.도당이 관리하는 당원을 말한다.

②정책당원은 노동.온라인.직능 등의 부문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중앙당이 관리하는 당원을 말한다.

③권리당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당원 중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말한다. <개정 2013.4.29>

④청년당원은 만 42세 이하인 당원을, 노인당원은 만 65세 이상인 당원을 말한다.<신설 2013.4.29>

제4조(당원의 권리 등) ①당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문서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 소관 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당원이 다른 당원 또는 당의 기구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의 각급 윤리위원회에

문서로 진정할 수 있다.

제2장 입당.복당.전직.탈당

제5조(입당절차) 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하거나 중앙당이 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

2.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메일(E-MAIL) 등의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③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형태의 입당원서 제출은 본인이 자필로 서명·날인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제6조(입당원서의 처리) ①시·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입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입당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입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되는 때부터 발생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부터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시·도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여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하고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2. 시·도당의 입당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3. 지역위원장 또는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외부인사 영입 등의 사유로 중앙당에 입당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4.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5. 당헌·당규의 다른 규정에 따라 당원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제7조(특별입당) ①당대표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의 입당을 시·도당에 지시할 수 있다.

1. 사회의 저명한 민주인사
 2. 당의 발전과 당의 정책 구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 ②당대표의 지시를 받은 당해 시·도당은 규정에 따라 입당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복당) ①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3.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4.5>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관계 법조문 또는 사규 및 재직.위촉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한다.

⑤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직) ①당원이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적원을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방법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전적원을 접수한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지체 없이 전적원과 관련서류를 전적하고자 하는 시.도당 또는 중앙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정책당원이 지역당원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전적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 신청인은 해당 시.도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6개월까지 지역당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④지역당원이 정책당원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전적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 신청인은 중앙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6개월까지 정책당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⑤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전적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위원장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전적원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가부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제10조(탈당) 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역당원은 소속 시.도당에, 정책당원은 중앙당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당원의 경우에도 거주지 관할 시.도당이 없거나 사고당부인 경우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다. 이 경우 탈당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④당원자격이 소멸된 자의 해당 시.도당은 당원자격 소멸 즉시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입당·복당·전적의 결정) ①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입당 및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

②입당 및 전적의 심사·결정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복당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③시·도당 또는 중앙당이 제2항의 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당의 경우 허가된 것으로, 복당의 경우 허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시·도당은 입당 또는 복당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입당·복당의 제한) ①제명 또는 탈당한 지역당원은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이 아닌 다른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입당 또는 복당할 수 없다.

②제명 또는 탈당한 정책당원은 지역당원으로 시·도당에 입당 또는 복당할 수 없다.

제13조(당원증 교부) ①입당 또는 복당이 확정된 자는 정당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당원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당원증 교부는 당적증명서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당원증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교부일자 등을 기재하고 당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장 당원자격심사

제14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 관련 심사·판정
2. 당원자격 취득 이후 당비납부 등 권리당원으로서의 의무이행 여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당원의 권리행사 가능유무 판정

3. 기타 당원자격 관련 심사. 판정

②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 수석사무부총장, 조직담당사무부총장 및 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3.4.29>

③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시.도당운영위원 중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시.도당윤리위원장,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 및 시.도당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입당.복당.전적 등의 심사는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 시.도당이 창당되지 아니하였거나 사고당부인 경우
2. 시.도당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경우
3.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4.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가 기한을 넘겨 복당이 자동 불허된 경우
5. 시.도당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6. 지역위원장,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또는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당대표 또는 당무위원회가 중앙당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경우
8. 입당.복당.전적 신청자가 현직 국회의원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
9. 정책당원으로 입당하거나 복당을 신청하는 경우

⑦제6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장은 복당신청 접수를 거부하였거나 심사기한을 넘긴 사유를 적시한 사유서 및 해당 복당신청자의 복당에 관한 의견서를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당원자격 심사의 기준) ①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헌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입당.복당.전직 신청자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다만, 전직의 경우 제9조제5항의 경우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한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당헌.당규 또는 당명.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의 전력 유무
4. 해당행위의 전력 유무
5. 비리, 이권개입 등의 전력 유무
6.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입당일자
2. 당원의 구분
3. 권리당원의 당비 미납.체납 등의 여부
4. 권리당원의 당비납부 기간
5. 당원의 당적.당직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임명, 해임, 전직, 징계, 이중당적, 탈당 등의 사실
6.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③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을 반영하는 복당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당원자격 심사.판정 시기 등) ①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원자격을 심사.판정하여야 한다.

1. 입당.복당.전직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각급 대의원대회 소집이 있는 경우
3. 각급 선거인단대회 소집이 있는 경우
4. 당대표 또는 당무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및 불허 판정
 2. 각급 대의원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자격 판정
 3. 당원자격이 없는 경우 비당원 판정
 4.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판정
- ③이미 당원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각급 대의원대회나 선거인단대회 소집 등 당원자격의 심사·판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당원자격 심사·판정
 2. 제1호의 당원자격 심사·판정 후, 중앙당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의 승인,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승인
- ④시·도당에 제3항의 당원자격 심사·판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사전에 심사·판정의 필요성을 중앙당에 보고하고 중앙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당원자격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를 공고한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당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당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중앙당의 심사는 입당과 전적의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복당의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④공직·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당원자격 또는 대의원자격 심사·판정·승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정한다.

⑤시·도당은 중앙당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4장 당원관리

제18조(당원명부 작성 등) ①중앙당은 정책당원의 명부작성 권한 및 당원명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시·도당은 지역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되,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되는 사본에 없는 당원은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9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원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중앙당의 당원 관리) ①사무총장은 전국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 운영한다.

②중앙당은 당원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신설 2013.4.29>

③당원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시·도당의 당원 관리) ①시·도당위원장은 해당 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시·도당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당원의 당 활동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당 활동 참여 의사가 확인되는 당원을 별도로 관리한다.

③시·도당위원장은 지역위원회가 해당 지역위원회의 당원명부 또는 소속 권리당원의 당비납부내역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제공받은 내용을 영리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복당, 전적,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당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당비납부현황 등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위배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⑤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12.1.5,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당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에 입당한 당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당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권리당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입당한 당원 중 입당 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권리당원으로 구분한다.

부칙 <2013.4.5,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29,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역 당원 입당원서

※성명	(<input type="checkbox"/> 남 /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직장명		자택전화	
장애인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직장전화	
※주소			
주요경력			

※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본인은 민주당에 입당하고자 입당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인 또는 서명)
추천인	

민주당 귀중

당비납부약정서 (권리당원용)

※ 민주당 당헌 제7조에 따라 권리당원은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약정금액	일금 원(₩)		
결제 방식	<input type="checkbox"/> 은행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8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유선전화결제	※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결제시 사용자와 가입자가 다를 경우, 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결제시 출금일은 매월 8일입니다.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결제	가입자	성명	
		주민번호	

		※ 휴대전화 결제시 이동통신사를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SKT □ KTF □ LGT
	□ 신용카드결제	※ 신용카드 결제는 당원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으로만 약정이 가능합니다.
	□ 직접납부(현금)	일금 원(개월분)

※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정 책 당 원 입 당 원 서

※성 명	(□ 남 / □ 여)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직장명		자택전화					
장애인여부	□ 예 / □ 아니오	직장전화					
※주 소							
※소 속	□ 노동(추천단체 :)/ □ 온라인 / □ 직능(추천단체 :)						
주요경력							
<p>※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p> <p>본인은 민주당에 입당하고자 입당원서를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width: 50px; text-align: center;">본 인</td> <td style="width: 150px; text-align: center;">(인 또는 서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추천인</td> <td></td> </tr> </table> <p>민 주 당 귀 중</p>				본 인	(인 또는 서명)	추천인	
본 인	(인 또는 서명)						
추천인							

당 비 납 부 약 정 서 (권리당원용)

※ 민주당 당헌 제7조에 따라 권리당원은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약정금액	일금 원(₩)			
결제 방식	○ 은행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출금일	○ 8일 ○ 15일 ○ 25일	
	○ 유선전화결제	※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결제시 사용자와 가입자가 다를 경우, 실제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결제시 출금일은 매월 8일입니다.		
		가입자	성명	
	○ 휴대전화결제	주민번호		
		※ 휴대전화 결제시 이동통신사를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SKT ○ KTF ○ LGT		
	○ 신용카드결제	※ 신용카드 결제는 당원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으로만 약정이 가능합니다.		
○ 직접납부(현금)	일금 원(개월분)			

※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정치자금법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민 주 당 복 당 원 서

※성명	(○ 남 / ○ 여)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직장명		자택전화			
※소속	□ 입당 시.도 : (지역당원)		□ 중앙당 (정책당원)		
※주소					
<p>※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p> <p>본인은 민주당에 복당하고자 복당원서를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5px;">본인</td> <td style="padding: 5px;">(인 또는 서명)</td> </tr> </table> <p>민주당 귀중</p>				본인	(인 또는 서명)
본인	(인 또는 서명)				
<p>당비 납부 약정서 (권리당원용)</p> <p>※ 민주당 당헌 제7조에 따라 권리당원은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p>					
약정금액	일금 원(₩)				
결제 방식	□ 은행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출금일	□ 8일 □ 15일 □ 25일		
	□ 유선전화결제	<p>※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결제시 사용자와 가입자가 다를 경우, 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결제시 출금일은 매월 8일입니다.</p>			
		가입자	성명		
	□ 휴대전화결제	주민번호			
<p>※ 휴대전화 결제시 이동통신사를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KT □ KTF □ LGT</p>					

	○ 신용카드결제	※ 신용카드 결제는 당원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으로만 약정이 가능합니다.
	○ 직접납부(현금)	일금 원(개월분)

※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개인별기록카드

성명	(한글)	성별		사진 (5×7)		
	(한자)	본관				
출생지		종교				
주민등록번호						
원적						
본적						
현주소	(우)			연락처(전화번호)		
직업 및 직책	직업		직위		휴대전화	
	주소	(우)			사무실	
					자택	
					e-mail	
병역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개월)				
	군번			제대구분		
	군병과	계급			면제사유	
학력	기간	학교명		소재지	비고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대 학교 (전공 :)		(중퇴,수료,졸업)
		대 학 원 (전공 :)		(중퇴,수료,졸업)
※박사학위명 :				

정 당 및 사 회 경 력	기 간	근무 및 활동내용	직 위
	~		
	~		
	~		
	~		
	~		

가 족 관 계	성 명	관계	연령	최종학력	직업(상세히)	비 고

당 적 변 경	보유 기간	정 당 명	당 직 명	변경 사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공 직 선 거 출 마 경 력	선거명(년도)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당선여부
	선거(년)			
	선거(년)			
	선거(년)			
	선거(년)			
	선거(년)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신청인 □

탈당 사유서

작성일 :

작성자 :

탈당일	
-----	--

사 유	
-----	--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귀중

복당신청 사유서

작성일 :

작성자 :

복당신청일	
사 유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전 적 원

성 명	(한글) (한자)
-----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주민번호	-	
현 주소				
전 주소				
전화번호	(주택)	(휴대전화)		
현소속시·도당		<input type="checkbox"/> 정책당원	당직	
전소속시·도당		<input type="checkbox"/> 정책당원	당직	
전적신청사유				
<p>위 본인은 상기 사유로 ()시·도당 / <input type="checkbox"/> 정책당원으로</p> <p>전적하고자 전적원을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인 또는 서명)</p>				

만주시총장()시·도당위원장()증

<별지 제4호 서식>

탈당신고서

성명	(한글)	(한자)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주택)	(휴대전화)	
직업			
탈당사유			
<p>위 본인은 상기 사유로 귀 당을 탈당하고자 이에 신고합니다.</p> <p>년 월 일</p> <p>신고인 (인 또는 서명)</p>			

만주당서총장 00시 도당위원장구중

<별지 제5호 서식>

발급번호	
------	--

탈당증명서

당원번호	
성명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주택) (휴대전화)
입당일자	
탈당일자	
<p>위 사람이 민주당을 탈당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p>	

민주당 사무총장/○○시·도당위원장

<별지 제1호 서식>

지역 당원 입당원서

※성명	(□ 남 / □ 여)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직장명		주택전화	
장애인여부	□ 예 / □ 아니오	직장전화	

※주소							
주요경력							
<p>※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p> <p>본인은 민주당에 입당하고자 입당원서를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width: 100px;">본인</td> <td>(인 또는 서명)</td> </tr> <tr> <td>추천인</td> <td></td> </tr> </table> <p>민주당 귀중</p>				본인	(인 또는 서명)	추천인	
본인	(인 또는 서명)						
추천인							
<p>당비 납부 약정서 (권리당원용)</p> <p>※ 민주당 당헌 제7조에 따라 권리당원은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p>							
약정금액	일금 원(₩)						
<p>결제 방식</p>	<input type="checkbox"/> 은행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8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유선전화결제	<p>※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결제시 사용자와 가입자가 다를 경우, 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결제시 출금일은 매월 8일입니다.</p>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결제	가입자	성명				
			주민번호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결제	<p>※ 휴대전화 결제시 이동통신사를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SKT <input type="checkbox"/> KTF <input type="checkbox"/> LGT</p> <p>※ 신용카드 결제는 당원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으로만 약정이 가능합니다.</p>					

<input type="checkbox"/> 직접납부(현금)	일금 원(개월분)
-----------------------------------	------------

※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정 책 당 원 입 당 원 서

※성 명	(<input type="checkbox"/> 남 /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직장명		자택전화					
장애인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직장전화					
※주 소							
※소 속	<input type="checkbox"/> 노동(추천단체 :) /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 <input type="checkbox"/> 직능(추천단체 :)						
주요경력							
<p>※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p> <p>본인은 민주당에 입당하고자 입당원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5px;">본 인</td> <td style="padding: 5px;">(인 또는 서명)</td> </tr> <tr> <td style="padding: 5px;">추천인</td> <td style="padding: 5px;"></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민 주 당 귀 중</p>				본 인	(인 또는 서명)	추천인	
본 인	(인 또는 서명)						
추천인							
<p>당 비 납 부 약 정 서 (권리당원용)</p> <p>※ 민주당 당헌 제7조에 따라 권리당원은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p>							
약정금액	일금 원(₩)						
결제 방식	<input type="checkbox"/> 은행자동이체	은 행 명					
		계좌번호					

		출금일	□ 8일 □ 15일 □ 25일	
□ 유선전화결제	※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결제시 사용자와 가입자가 다를 경우, 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결제시 출금일은 매월 8일입니다.			
	가입자	성명		
□ 휴대전화결제	주민번호			
	※ 휴대전화 결제시 이동통신사를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SKT □ KTF □ LGT			
□ 신용카드결제	※ 신용카드 결제는 당원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만 약정이 가능합니다.			
□ 직접납부(현금)	일금 원(개월분)			

※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민주당복당원서

※성명	(□ 남 / □ 여)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직장명		자택전화	
※소속	□ 입당 시.도 : (지역당원)		□ 중앙당 (정책당원)
※주소			

※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본인은 민주당에 복당하고자 복당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인 또는 서명)

민주당 귀 중

당비 납부 약정서 (권리당원용)

※ 민주당 당헌 제7조에 따라 권리당원은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약정금액	일금 원(₩)		
결제 방식	☐ 은행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출금일	☐ 8일 ☐ 15일 ☐ 25일
	☐ 유선전화결제	※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결제시 사용자와 가입자가 다를 경우, 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결제시 출금일은 매월 8일입니다.	
	☐ 휴대전화결제	가입자	성명
		주민번호	
☐ 신용카드결제	※ 신용카드 결제는 당원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만 약정이 가능합니다.		
☐ 직접납부(현금)	일금 원(개월분)		

※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정치자금법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개인별기록카드

성명	(한글)		성별		사진 (5×7)	
	(한자)		본관			
출생지			종교			
주민등록번호						
원적						
본적						
현주소	(우)			연락처(전화번호)		
직업 및 직책	직업		직위		휴대전화	
	주소	(우)			사무실	
					주택	
					e-mail	
병역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개월)				
	군번			제대구분		
	군병과	계급		면제사유		
학력	기간		학교명		소재지	비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퇴,수료,졸업)

		(전공 :)	
		대 학 원 (전공 :)	(중퇴, 수료, 졸업)
※박사학위명 :			

정 당 및 사 회 경 력	기 간		근무 및 활동내용		직 위
	~				
	~				
	~				
	~				
	~				

가 족 관 계	성 명	관계	연령	최종학력	직업(상세히)	비 고

당 적 변 경	보유 기간		정 당 명	당 직 명	변경 사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공 직 선	선거명(년도)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당선여부
	선거(년)			
	선거(년)			

거 출 마 경 력	선거(년)			
	선거(년)			
	선거(년)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신청인 □

탈당 사유서

작성일 :

작성자 :

탈 당 일	
-------	--

사 유	
-----	--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귀중

복당신청 사유서

작성일 :

작성자 :

복당신청일	
사 유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전 적 원

성 명	(한글)	(한자)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주민번호	-	
현 주소				
전 주소				
전화번호	(주택)	(휴대전화)		
현소속시·도당		<input type="checkbox"/> 정책당원	당직	
전소속시·도당		<input type="checkbox"/> 정책당원	당직	
전적신청사유				
<p>위 본인은 상기 사유로 ()시·도당 / <input type="checkbox"/> 정책당원으로</p> <p>전적하고자 전적원을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인 또는 서명)</p>				

만주시총장()시·도당위원장()증

<별지 제4호 서식>

탈당신고서

성명	(한글)	(한자)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주택)	(휴대전화)	
직업			
탈당사유			
<p>위 본인은 상기 사유로 귀 당을 탈당하고자 이에 신고합니다.</p> <p>년 월 일</p> <p>신고인 (인 또는 서명)</p>			

만주당서총장 00시 도당위원장구중

<별지 제5호 서식>

발급번호	
------	--

탈당증명서

당원번호	
성명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주택) (휴대전화)
입당일자	
탈당일자	
<p>위 사람이 민주당을 탈당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p>	

민주당 사무총장 / 〇〇시·도당위원장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정 2012. 1. 5]

[개정 2013. 4. 29]

[개정 2014. 1.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조에 따라 권리당원의 당비납부 금액,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유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당비

제3조(의무) 권리당원,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구분) 당비는 일반당비, 직책당비 및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제5조(일반당비) ①일반당비는 권리당원이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권리당원은 월납 기준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당원이 고령, 장애인, 국가유공자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일반당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③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되는 제2항의 당비는 매월 중앙당에서 정산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조(직책당비) ①직책당비는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가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그 직책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원이 고령, 장애인, 국가유공자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직책당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직책이 2 이상인 당직자는 그 중 다액인 직책당비만을 납부할 수 있다.

- ④<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책 또는 신설 직책의 직책당비는 유사한 직급의 직책당비를 납부한다. 명징(明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특별당비) ①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 ②당원은 누구든지 일반당비 및 직책당비와 별도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특별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
- ③최고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등 당내 행사 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당원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특별당비의 납부대상자, 기준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납부방법) ①일반당비와 특별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

②직책당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다.

1. 중앙당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의 직책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당 소속 공직자는 제외한다.
2. 시·도당당직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책당비는 소속 시·도당에 납부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책당비의 납부 당부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③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분기·반기·연납 및 선납을 할 수 있다.

④당비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납부자가 선택한다.

1. 방문납부
2. 무통장 입금
3. CMS(은행 계좌이체) 결제
4. 휴대전화 결제
5. 유선전화 결제

6. 기타 사무총장이 정한 결제 방식

제9조(배분) 당비의 배분은 매월 사무총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을 작성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1. 권리당원이 납부하는 일반당비는 해당 권리당원이 소속된 시·도당에 배분한다.
2.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책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3. 시·도당은 제1호에 따른 일반당비 및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책당비 중 일정비율을 해당 지역위원회의 조직 활동 사업비 등으로 배분한다. 이 경우 시·도당위원장은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에 대하여 지역위원장과 협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9>

제10조(영수증) ①당비를 납부하는 때에는 해당 당부는 해당 연도 말까지 납부일자, 금액 및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한 당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 납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비 영수증 발급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발급할 수 있다.

②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이를 발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납금지) ①자신의 당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당원자격이 정지되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CMS, 휴대전화, 유선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때에는 실가입자와 입당자가 다르더라도 실가입자가 입당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비 대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및 보고) ①모든 당비는 사무총장이 관리·감독 한다. 다만, 시·도당에 납부하는 직책당비와 특별당비는 시·도당위원장이 관리 한다.

②사무총장은 매월 최고위원회 및 당무위원회에 당비납부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대표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당은 매월 1회 이상 당비입금실적을 중앙당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칙

제13조(권리제한) ①권리행사일 전 6개월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권리당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13.4.29>

②직책당비를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 및 시·도당위원장은 당직자격 정지 2개월 전부터 권리제한과 관련한 사실을 해당 미납자에게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하여야 한다.

③직책당비 미납으로 당직자격이 정지된 자가 완납하면 당직자격을 회복한다.

④직책당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자격을 박탈한다.

⑤직책당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신설 2013.4.29>

⑥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4.29>

제14조(당비납부 당원의 우대)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였거나 당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자추천에 있어서 배려할 수 있다.

제15조(위임규정) 당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당대표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부칙 <2012.1.5,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29,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책당비 완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미납한 직책당비는 최고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책정된 직책당비를 모두 완납하여야 한다.

<별표> 직책당비 기준금액

구분	직 책	금액 (원외)	[단위 만원], ()안은 원외
중 앙 당	당대표	200(100)	
	상임고문, 고문	특별당비	
	전국대의원대회의장 및 부의장, 재정위원장	특별당비	
	최고위원,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의장	100(50)	
	당무위원	10	
당 직 자	윤리위원장, 국정자문회의의장,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전국 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 예산결산위원장, 정책연구소의 장, 여성위원 장, 청년위원장	10	
	사무부총장,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부의장, 정책연구소의 차급의 장, 정책조정위원장, 여성리더십센터소장, 여성지방의원협의회대표, 당대 표비서실장 및 특보단장, 대변인	10	
	각급 위원회(급)의 위원장(급)	5	

	각급 위원회(급)의 부위원장(급), 중앙위원, 부대변인	3
	국장(급)	5
	부국장(급)	3
	부장(급)	2
	차장(급), 간사(급)	1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0.2
시 · 도 당 당 직 자	시·도당위원장	75(20)
	시·도당운영위원, 시·도당대의원대회회장 및 부의장	5
	지역위원장	5
	상무위원	3
	각급 위원회(급)의 위원장(급)	3
	사무처장, 정책실장, 대변인(공보실장)	3
	각급 위원회(급)의 부위원장(급) 및 위원(급)	2
	국장(급)	2
	유급사무직당직자	1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0.2
	지역위원회 상임고문과 고문	특별당비
	읍·면·동 당원협의회회장	0.2
	시·도당 대의원, 지역상무위원	0.2
지역 대의원	0.2	
당 소 속 공 직 자	대통령	200
	국무총리	150
	국회부의장	150
	장관	150
	국회상임위원장, 시·도지사	100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50
	기초단체장, 광역시·도의회의장	30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장	10

기초의회의원	5
국회직 등록 정책연구위원 1급	75
국회직 등록 정책연구위원 2급	60
국회직 등록 정책연구위원 3급	50
국회직 등록 정책연구위원 4급	35
국회직 등록 정책연구위원 및 행정보조요원 5급 이하	1
국회의원 보좌관(4급)	5
국회의원 비서관(5급)	3
국회의원 비서 (6,7급)	1
국회의원 비서 (9급)	0.5

<당규 제4호>

중앙조직규정

[제정 2012. 2. 6]

[개정 2012. 2. 13]

[개정 2012. 5. 14]

[개정 2012. 7. 18]

[개정 2012. 9. 20]

[개정 2013. 4. 5]

[개정 2013. 4. 29]

[개정 2014. 1.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대의기관). 제4장(집행기관). 제5장(원내기구). 제7장(정책연구소). 제8장(윤리위원회) 및 제9장(예산과 회계)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당의 기구와 업무분장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당의 구성) 중앙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기구로 구성한다.

1. 대의기관 :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2. 집행기관 :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당대표
3. 집행기구 : 사무처, 정책위원회, 의원총회, 전국노동위원회, 전국여성위원회, 전국노인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윤리위원회, 재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대변인 및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기구
4. 부설기관 : 정책연구소

제2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3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전국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새로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②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행) 의장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시의장) ①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임시의장은 구두호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6조(의장·부의장의 선출) ①의장과 부의장은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7조(소집 등) ①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대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의제와 대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대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이를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국대의원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총괄한다.

③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대의원명부) ①전국대의원대회의 대의원명부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준

비위원회' 라 한다)가 작성한다.

②제1항의 대의원명부 작성을 위한 당원명부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당원자격을 심사하여 확정 후 준비위원회에 통보한다. 준비위원회는 확정된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대의원명부를 작성한다.

③준비위원회가 작성한 대의원명부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대의원자격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④대의원명부는 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대의원증의 교부) ①당대표는 확정된 대의원명부에 의하여 대의원에게 대의원증을 발급한다.

②대의원증에는 당해 대의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당대표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대의원증은 사무총장이 대회 개최일 전일까지 대의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회 당일에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출석 등 금지)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11조(위임사항의 제한)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에 관한 권한 및 당헌 제15조제1항의 권한 중 당의 해산에 관한 권한은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제12조(이의신청) ①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은 대회의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하여 의결에 영향을 준 때에는 대회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당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이의신청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당무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은 이의신청과 관련한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이의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 청년 대의원) 당헌 제14조제2항제19호의 대의원 중 여성당원이 만42세 이하인 경우 청년 당원의 비율에 중복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3.4.29>

제2절 중앙위원회

제14조(소집 등) ①중앙위원회 의장은 중앙위원회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의제, 일시 및 장소를 명시 하여 공고하고,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이를 중앙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 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15조(중앙위원 명부) ①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명부는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당무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②중앙위원명부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중앙위원증 교부) ①사무총장은 확정된 중앙위원명부의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중앙위원증을 발 급한다.

②중앙위원증에는 당해 중앙위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당대표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17조(준용규정) 중앙위원회에 제10조(대리출석 등 금지) 및 제12조(이의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18조(권한 등) ①당무위원회는 당헌·당규에 규정한 사항 및 기타 주요 당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무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관한 자료를 미리 위원에게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회의 시작 전에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비밀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당무위원회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19조(의안의 종류) 당무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의결사항, 심의사항 및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 ①당무위원은 당무와 관련하여 사무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안은 법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제출된 의안을 일괄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21조(의안의 상정) ①당무위원회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당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②당무위원회 의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의안의 상정을 연기하거나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의안의 심의) ①당무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의안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무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안의 처리) 표결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이의가 없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장은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최고위원회 등

제24조(최고위원회) ①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는 당무에 관한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직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최고위원회에 제19조(의안의 종류), 제22조(의안의 심의) 내지 제23조(의안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취지와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5조(확대간부회의와 간부회의) ①당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대간부회의 또는 간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확대간부회의와 간부회의의 참석자 및 배석자의 범위는 당해 당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대표가 결정한다.

③확대간부회의와 간부회의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26조(국정자문회의) ①국정자문회의는 의장, 수석부의장, 10명 이하의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국정자문회의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13.4.29>

③국정자문회의에는 분야별·국가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자문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위촉한다.

④국정자문회의에는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국정자문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국내·외 지부 등을 둘 수 있다. 국내·외 지부에는 지부장, 부지부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와 지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정

자문회의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국정자문회의의 업무지원은 대외협력국이 담당한다.<개정 2013.4.29>

제27조(중앙당지방자치정책협의회) ①당헌 제110조에 따라 중앙당에 설치하는 중앙당지방자치정책협의회(이하 본 조에서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사무총장

5. 정책위원회의장

6.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7. 시·도당위원장

8. 당 소속 시·도지사

9. 당 소속 시·도회의의장 또는 시·도의회대표의원

10.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 <개정 2013.4.29>

②협의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고, 감사위원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이 맡는다.

③협의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협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⑤협의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개정 2013.4.29>

제28조(세계한인민주회의) ①세계한인민주회의는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감사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세계한인민주회의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고, 수석부의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개정 2013.4.29>

③세계한인민주회의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④세계한인민주회의의 업무지원은 대외협력국이 담당한다.<개정 2013.4.29>

제28조의2(전국직능위원회) ①전국직능위원회는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국직능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고, 수석부의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전국직능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직능국이 담당한다.[신설 2013.4.29]

제28조의3(교육연수원) ① 교육연수원장은 당원과 당직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 교육연수원은 원장, 부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연수원의 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원장과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교육연수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효과적인 당원 교육·연수를 위하여 산하에 교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수위원 및 자문위원 등은 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위촉한다.

⑥ 기구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⑦ 교육연수원의 업무지원은 교육연수국이 담당한다.[신설 2014.1.27]

제29조(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①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장,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시·도당지방자치위원장, 상임위원 및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상임위원 및 외부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3.4.29>

③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고위 지방자치당정협의회, 광역 지방자치당정협의회 및 기초 지방자치당정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개정 2013.4.29>

제30조(인권위원회) ①인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3.4.29>

③인권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국민참여국이 담당한다. <개정 2013.4.29>

제31조(전국노동위원회) ①전국노동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노동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3.4.29>

1. 전국노동위원장과 부위원장
2. 최고위원 중 노동부문대표
3. 시·도당노동위원장
4. 전국노동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노동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노동국이 담당한다.<개정 2012.2.13>

④전국노동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전국노동위원장·부위원장) ①전국노동위원장은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29>

②전국노동위원장을 선출하는 때에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후 3개월 이내에 선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3.4.29>

③전국노동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위원장이 선출 또는 임명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전국노동위원장을 선출하는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전국노동위원장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되,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개정 2013.4.29>

- ⑤제4항에 따라 선출된 전국노동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를 임명한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13.4.29>
- ⑥전국노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⑦부위원장은 전국노동위원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⑧전국노동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⑨전국노동위원장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특별보좌역과 보좌역) ①당대표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로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단장을 둔다.

- ②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은 당무와 관련하여 당대표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34조(당대표 비서실) ①당대표 비서실은 당대표의 비서업무를 수행한다.

- ②당대표 비서실장은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당대표 비서실에 2명 이하의 정무직 부실장과 사무직 당직자를 둔다.<개정 2013.4.5>
- ④당대표 비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4.29>
 1. 당대표 업무기획에 관한 사항
 2. 당대표 메시지작성에 관한 사항
 3.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통일준비에 관한 사항

제35조(당무평가위원회) ①당무활동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과제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당무위원회 아래에 당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당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의 추천으로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③당무평가위원회의 업무지원은 평가감사실이 담당한다.<개정 2013.4.29>

제36조(평가감사실<개정 2013.4.29>) ①당무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감사, 윤리위원회의 업무지원 등을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평가감사실을 둔다.<개정 2013.4.29>

②평가감사실에 실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개정 2013.4.29>

제37조(대변인) ①대변인과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13.4.29>

②대변인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성명, 논평 등 대외적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한다.

③대변인은 당의 각종 회의에 배석하되, 필요시 부대변인으로 하여금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정책홍보를 위하여 대변인 아래에 정책부대변인을 둔다.<신설 2013.4.29>

⑤대변인 아래에 필요시 상근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38조(공보실<개정 2013.4.29>) ①공보실은 대변인의 지시를 받아 언론분석 및 취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13.4.29>

②공보실에 실장과 사무직 당직자를 둔다.<개정 2012.9.20, 2013.4.29>

③공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29>

1. 성명, 논평 등 발표 자료의 준비 및 발표문의 정리, 언론모니터 및 언론보도성향의 분석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9>

2. 내, 외신 등 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배포 등에 관한 사항

3. 당 주요행사의 취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방송토론의 지원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공보실의 재정과 서무, 기자실 등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9>

제39조(재정위원회 구성) ①재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가 있는 때 재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재정위원회의 위원과 관련된 당직자는 재임 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재정위원장 등) ①재정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3.4.29>

②재정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결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재정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제41조(예산결산위원회) ①예산결산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결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예산결산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제42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당헌 제40조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대표의 지시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사무직당직자에 대한 인사안을 심의, 작성하여 당대표에게 제청한다.

③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④사무직당직자인사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전국위원회

제43조(전국여성위원회) ①전국여성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29>

1. 전국여성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여성위원장
3. 여성 국회의원
4. 여성 최고위원
5.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6.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대표 2명
7. 전국여성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여성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여성국이 담당한다.

④전국여성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4조(여성리더십센터) ①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인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성리더십센터를 설치한다.

②여성리더십센터에는 소장 및 약간 명의 부소장을 두고,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여성리더십센터의 소장, 부소장 및 위원은 여성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이 경우 전국여성위원장을 소장으로 겸임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여성리더십센터의 업무지원은 여성국이 담당한다.

제45조(여성지방의원협의회) ①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교육 및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여성지방의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여성지방의원협의회에는 상임대표 2명 및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두고, 필요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상임대표, 부대표 및 임원은 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업무지원은 여성국이 담당한다.

제46조(전국노인위원회) ①전국노인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노인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29>

1. 전국노인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노인위원장
3. 만 65세 이상 국회의원
4. 전국노인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노인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생활정치국이 담당한다.

④전국노인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7조(전국청년위원회) ①전국청년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청년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29>

1. 전국청년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청년위원장
3. 만 42세 이하 국회의원
4. 전국청년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청년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생활정치국이 담당한다.

④전국청년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8조(전국장애인위원회) ①전국장애인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장애인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29>

1. 전국장애인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장애인위원장
3. 장애인 국회의원
4. 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 대표 2명 <신설 2013.4.29>
5. 전국장애인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장애인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생활정치국이 담당한다.

④전국장애인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8조의2(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 ①전국장애인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애인지방의원네트워크, 교육 및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에는 상임대표 2명 및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두고, 필요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 상임대표, 부대표 및 임원은 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 업무지원은 생활정치국이 담당한다.

[신설 2013.4.29]

제49조(전국대학생위원회) ①전국대학생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전국대학생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29>

1. 전국대학생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대학생위원장
3.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③전국대학생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생활정치국이 담당한다.

④전국대학생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0조(전국위원장·부위원장) ①전국위원장은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29>

- 1.<삭제 2013.4.29>
- 2.<삭제 2013.4.29>
- 3.<삭제 2013.4.29>
- 4.<삭제 2013.4.29>

5.<삭제 2013.4.29>

②전국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때에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후 3월 이내에 선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3.4.29>

③전국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위원장이 선출 또는 임명되는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3.4.29>

④전국위원장을 선출하는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전국위원장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되,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개정 2013.4.29>

1.<삭제 2013.4.29>

2.<삭제 2013.4.29>

3.<삭제 2013.4.29>

4.<삭제 2013.4.29>

5.<삭제 2013.4.29>

⑤제4항에 따라 선출된 전국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를 임명한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13.4.29>

⑥전국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전국위원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3.4.29>

⑧전국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전국위원장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특별위원회

제51조(구성) ①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특별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당해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3.4.29>

제52조(위원장) ①상설 및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지휘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상설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의 종류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중·소기업의 지원·육성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민특별위원회 : 농어민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특별위원회 : 국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 등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정특별위원회 : 다문화가정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육특별위원회 : 보육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육특별위원회 : 교육계와의 협력과 교육문제 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특별위원회 :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특별위원회 : 주거복지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 남북교류협력의 지원과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문화예술특별위원회 : 문화예술계와의 교류·협력과 문화예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환경특별위원회 : 환경문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 동북아지역 평화와 국가 간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3. 안보특별위원회 : 국가의 안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체육특별위원회 : 체육계와의 교류·협력과 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과학기술특별위원회 :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9.20>
16. 정보통신특별위원회 : 정보통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9.20>
17. 해양수산특별위원회 : 해양수산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9.20>

제54조(업무지원) ①각급 상설특별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대외협력국이 총괄한다.

②각급 상설특별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직당직자 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사무국장
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무국장은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5절 사무처

제55조(사무총장) ①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고, 당직자의 복무관리 및 당무 집행을
통할한다.

②사무총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략홍보본부장, 사무부총장, 전략기획위원
장, 홍보위원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29>

제56조(사무처의 구성과 업무) ①사무총장 산하에 전략홍보본부와 사무부총장, 전략기획위원회, 홍보
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제위원회, 법률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4.29>

②당대표는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사무부총장 중 1명을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임명
할 수 있다.<개정 2013.4.29>

③사무처의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위원장과 위원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과 위
원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사무처의 각 위원회에는 이 규정으로 정하는 국을 두고, 국 아래에 팀을 두며, 사무총장 직속으로
총무국, 조직국 및 사무총장부속실을 두며, 각 국에는 국의 장과 필요한 수의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개정 2012.2.13, 2013.4.29>

⑤사무총장은 당무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장과 협의하여 실무지원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⑥국의 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사무직 당직자를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국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직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4.29>

⑦사무처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관장하되, 규정으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사무총장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7조(총무국) ①총무국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직자의 인사, 조달, 재산관리, 경리·회계, 당비 납부관리 및 기타 각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②총무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총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당무운영과 관련한 업무조정 및 시달, 당 주요행사의 집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9>
2.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회의 지원 등 인사 관련 업무지원, 당의 각종 인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당의 회계, 당비납부 관리 및 중장기 재정대책의 수립, 금전출납과 결산, 기타 경리 등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4. 인쇄·제작물 등 물품공급업체의 선정과 가격조정, 물품의 구매·조달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접수·발송·관리, 당직근무 및 보안, 당인 및 직인 등 인장에 관한 사항
6. 건물, 자동차 등 당내시설의 영선, 전기·전화·통신·전신 등의 설치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8. 재정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9. 예산결산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및 기타 주요 회의의 소집,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및 회의지원에 관한 사항
11. 당의 역사와 관련한 주요 자료 수집, 보유기록물 관리 및 박물관류 보관·관리 업무 <신설 2013.4.29>
12. 당의 기록물 보존문서 디지털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록관 운영·관리 업무 <신설 2013.4.29>
13. 신규채용당직자의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사항
14. 기타 다른 위원회 및 국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8조(조직국) ①조직국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공조직 전반에 관한 조직 관리를 담당하며, 참총은지방정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지방정부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3.4.29>

②조직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조직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조직 전반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조직의 확대 및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원의 입당.탈당.복당의 관리 및 당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 당원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비납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직후보자 추천 등 각종 선거업무의 집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각종 선거자료와 통계의 수집과 보관, 선거정보의 수집.보관.분석에 관한 사항
7. 시.도당의 공조직 및 지역위원회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8. 전국 각 지역의 조직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9. 중앙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와 각급 지방자치 당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10. 지방자치정책의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11. 지역별 정책사항의 수집.정리.분석, 여론수렴, 기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12.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관리, 당.정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13. 기타 조직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9>

제58조의2 <삭제 2013.4.29>

제59조(사무총장부속실) ①사무총장부속실은 사무총장의 비서업무 및 사무총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사무총장부속실에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제60조(전략홍보본부) ①전략홍보본부에 본부장과 약간 명의 부분부장을 둔다.

②전략홍보본부장은 전략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전략홍보본부장은 전략기획위원장, 홍보위원장, 인터넷소통위원장이 참석하는 전략홍보기획회의를 주재한다.

제61조(전략기획위원회) ①전략기획위원장은 전략홍보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각급 공직선거의 기본계

획 수립, 당무의 기획과 조정, 정세분석 및 여론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전략기획위원장은 정책연구소의 전략부소장을 겸한다.

③전략기획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전략기획위원회에 전략기획국을 둔다.

제62조(전략기획국) ①전략기획국은 전략기획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각급 공직선거의 기본계획 수립, 당무의 기획과 조정, 정세분석 및 여론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전략기획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전략기획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기본계획 수립, 당의 중.장기 사업기획, 각종 행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당헌.당규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관련 실무에 관한 사항
3. 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4. 주요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판단에 관한 사항
5. 정국현안 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여론조사의 계획, 실시, 결과분석, 자료의 수집.보관에 관한 사항
7.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제63조(홍보위원회) ①홍보위원장은 전략홍보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활동 등에 관한 홍보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홍보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홍보위원회에 홍보미디어국을 둔다.

제63조의2(인터넷소통위원회) ①인터넷소통위원장은 전략홍보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유비쿼터스

화 등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인터넷소통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인터넷소통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인터넷소통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당대표가 위촉한다.

④당의 인터넷소통화를 위한 정책제안, 네티즌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활동 시한을 정하여 분과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등 특별기구의 위원은 인터넷소통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당대표가 위촉한다.

⑤인터넷소통위원회의 업무지원은 홍보미디어국이 담당한다.

[신설 2013.4.29]

제64조(홍보미디어국<개정 2013.4.29>) ①홍보미디어국은 홍보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 이념, 정강·정책 및 당 활동의 홍보 및 당 기관지 발행 등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인터넷소통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유비쿼터스화 관련 업무 및 사이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4.29>

②홍보미디어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개정 2013.4.29>

③홍보미디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9>

1. 당의 장·단기 홍보 전략의 수립 및 홍보기획 등에 관한 사항
2. 당 기관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제작, 배송,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영상홍보물의 기획과 제작에 관한 사항
4. 당의 광고에 관한 사항
5. 당의 사진자료 촬영 및 정리·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송연설의 지원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기타 홍보 및 미디어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9>
8. 인터넷소통정당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9. 전자매체 및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10.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11.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 매체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12. 인터넷소통화를 위한 시스템 기술지원 및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13. 영상자료의 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14. 온라인부문 정책당원의 홍보와 관리, 조직 확대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제65조 <삭제 2013.4.29>

제66조 <삭제 2013.4.29>

제67조(대의협력위원회) ①대의협력위원장은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당 외 인사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②대의협력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대의협력위원회에 대외협력국을 둔다.

제67조의2(국제위원회) ①국제위원장은 국제교류·협력의 강화, 정당외교, 국제행사의 개최·지원 및 해외언론과의 협조 등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국제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국제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당대표비서실과 대외협력국이 담당한다.

[신설 2013.4.29]

제68조(대의협력국) ①대의협력국은 대외협력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당 외 인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국제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재외동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대외협력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대외협력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2. 타 정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3.<삭제 2012.2.13>
- 4.<삭제 2013.4.29>
5.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교류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6. 재외국민의 선거권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7. 각종 상설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업무지원, 국정자문회의 및 세계한인민주회의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제69조 <삭제 2013.4.29>

제69조의2(직능국) ①직능국은 전국직능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직능 관련 업무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3.4.29>

②직능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직능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능 관련 정책개발 등 기획에 관한 사항
2. 직능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직능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직능부문 정책당원의 홍보와 관리, 조직 확대에 관한 사항
5. 전국직능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18]

제69조의3(교육연수국) ① 교육연수국은 교육연수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원 및 당직자 교육, 연수, 온라인 강좌 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교육연수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 교육연수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타 기획에 관한 사항
2. 당원 교육·연수 시행에 관한 사항
3. 당원 온라인 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당원 교육·연수 교과과정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강사 섭외와 초빙에 관한 사항
6. 당원 교육·연수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연수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당원 교육·연수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당직자 교육훈련 등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9. 기타 당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7]

제70조(생활정치국) ① 생활정치국은 당의 조직역량 강화와 세대의 통합, 약자보호를 위한 노인·청년·장애인·대학생 관련 사업 및 직장인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개정 2012.7.18, 2013.4.29>

② 생활정치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 생활정치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청년·장애인·대학생 및 직장인 관련 정책개발 등 기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8, 2013.4.29>
2. 노인·청년·장애인·대학생 및 직장인 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8, 2013.4.29>
3. 노인·청년·장애인·대학생 및 직장인 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8, 2013.4.29>
4. <삭제 2012.7.18>

제71조 <삭제 2013.4.29>

제72조 <삭제 2013.4.29>

제73조(법률위원회) ①법률위원장은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적 문제를 지휘.총괄한다.

②법률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법률위원회에 법률적 문제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법률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법률위원회에 국민참여국을 둔다.<개정 2013.4.29>

제73조의2(국민참여국) ①국민참여국은 인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법률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법률적 문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민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국민참여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국민참여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인권보호 및 인권신장에 관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지원과 대응에 관한 사항
3. 법률과 관계된 민원의 조사, 관련기관과의 협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민원의 접수, 상담, 처리에 관한 사항
5. 접수된 민원의 분류와 관련 기관에의 송부·처리에 관한 사항
6. 민원의 조사, 관련기관과의 협조 및 정책적 대응 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제73조의3(노동국) ①노동국은 전국노동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전반적인 노동관련 사안을 담당한다.

②노동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노동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노동위원회 활동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2. 노동부문 정책당원활동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3. 각종 노동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노동부문 지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제74조 <삭제 2013.4.29>

제75조 <삭제 2013.4.29>

제76조 <삭제 2013.4.29>

제77조 <삭제 2013.4.29>

제78조 <삭제 2013.4.29>

제79조(여성국) ①여성국은 전국여성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여성조직의 확대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여성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여성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직 확대 등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당의 여성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당의 여성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각종 여성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성차별 개선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제80조(사무직당직자<개정 2013.4.29>) ①중앙당의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② <삭제 2013.4.29>

③국회정책연구위원 등 국회법령에 의한 당 소속 국회직은 당헌 제49조(중앙당 당직자의 구분과 임면)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임명하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추천한다.

④제3항의 국회정책연구위원은 당헌 제49조(중앙당 당직자의 구분과 임면)제3항의 사무직당직자 중 국장급 및 부국장급을 대상으로 하여 임명한다.

⑤신규 채용한 사무직당직자는 수습 당직자로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⑥사무직당직자의 직급, 임면, 보임, 승급, 보수, 수습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1조(당무집행회의) ①당무집행회의는 사무처 소관의 당무 관련 사항을 협의·처리한다.

②당무집행회의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당무집행회의에는 사무총장과 전략홍보본부장, 부총장, 사무총장 산하 위원장이 참석하고,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사무총장이 주재한다.

④당무집행회의에는 각 실·국장이 배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무집행회의가 정할 수 있다.

제6절 정책위원회

제82조(정책조정회의) ①정책위원회회의장은 당의 분과위원회간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한다.

②정책조정회의는 정책위원회회의장, 수석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당대표가 정책위원 중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4.29>

③소관 분야의 분과위원회는 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83조(정책위원회 부의장) ①정책위원회에는 정책위원회회의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둘 수 있다.

②정책위원회회의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의장, 정책조정

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4조(정책조정위원회) ①정책조정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장의 지시를 받아 당과 정부 간의 정책협
의, 정책조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개정 2012.7.18>

②정책조정위원회의 수와 정책조정위원회별 담당분야는 정책위원회의장이 제안하고 최고위원회 의결
을 거쳐 당대표가 확정한다. 다만, 그 수는 6 이하로 한다.

③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정책조정실이 담당한다. <신설 2012.7.18>

제85조(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 ①상임분과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
법이 정하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②상임분과위원회의 수와 명칭 및 소관사항은 국회법이 정하는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
다)에 준한다.

③정책위원회의장이 당무의 특정사안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
임분과위원회와 별도로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6조(법안심사위원회) ①당 소속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법안심사위원회에 당해
법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안심사위원장은 제출된 법률안이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7조 <삭제 2012.7.18>

제87조의2(정책실<개정 2013.4.29>) ①정책실은 정책위원회의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정책 활동 계획
및 의제의 수립과 종합조정, 당 정책 및 정책 활동 홍보, 정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및 업무조정 등
당의 정책 활동 기획, 정책조정위원회 소관 업무 지원, 당 정책의 연구 개발, 현안 검토 및 대책 수립,
법률안 심의, 선거공약의 개발 등 당의 정책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4.29>

②정책실에 실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개정 2013.4.29>

③정책실 아래에 기획, 홍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 및 각 정책조정위원회 담당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연구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13.4.29>

④정책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29>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 정책 및 법률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9>

2. 당의 정책방향 수립과 정책의제 개발을 위한 기획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각급 선거의 정책의제 및 공약개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정책위원회 및 산하 각급 기구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타 정당, 각급 단체와의 정책협의 및 조정, 협약의 체결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 당의 정책 활동과 관련한 공청회, 토론회 등 각급 행사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7. 당 정책 및 정책 활동 홍보를 위한 매체 기획, 제작, 관리 및 언론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8. 당의 공약이행 점검, 시·도당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정책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

9. 당의 정책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및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10. 정책조정위원회 소관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보고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11. 정부 주요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12. 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13.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14. 법안심사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15. 기타 당의 정책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16. 정책위원회 및 산하 각급 기구의 인사, 재정, 회계, 비품관리, 행정사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18]

제88조 <삭제 2012.7.18>

제88조의2 <삭제 2013.4.29>

제89조(공청회) ①정책위원회의장은 당의 정책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 정책토론회, 연구발표회 및 기타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청회 등의 모임에는 당 외부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90조(정책의 확정) ①당의 정책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분과위원회(타 분과위원회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확정된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1조(법률안의 확정) ①당의 법률안은 당규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분과위원회(타 분과위원회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및 법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총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원내대표는 확정된 법률안이 즉시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원내기구(의원총회)

제92조(원내대표의 선출) ①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한다.

제93조(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추천) ①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가 1명이 때에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선수(選數)가 높은 자를 당선자로 하되, 선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94조(의원총회의 소집 등) ①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1. 당의 원내 활동 및 원내대책의 심의.의결
2. 당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주요정책의 심의.의결
3.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4. 원내대표 선출
5.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추천
6. 원내 활동에 필요한 조직구성 및 폐지
7.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8.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의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9. 기타 원내 활동 및 원내대책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②의원총회에 제19조(의안의 종류), 제22조(의안의 심의) 내지 제23조(의안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비서실) 비서실은 원내대표의 비서업무, 일정기획 및 메시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4.29>

제96조(원내행정기획실)<개정 2012.5.14, 2013.4.29> ①원내행정기획실은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당의 원내 활동 등 원내행정사무 처리, 원내전략 등 원내대책 기획 및 의정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 <개정 2012.5.14, 2013.4.29>

②원내행정기획실에 실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개정 2012.5.14, 2013.4.29>

③원내행정기획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4.29>

1. 원내 일체의 행정사무 및 의안의 제출·관리, 기타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2. 각종회의 준비, 연락, 의원친선협회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업무, 비품관리 등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3. 국회 본회의 및 국회상임위원회 등 국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4. 원내전략의 수립, 자료수집 등 기획에 관한 사항
5. 원내대책자료, 의정보고서 등 의정홍보물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5.14>
7. <삭제 2012.5.14>
8. <삭제 2012.5.14>

제97조 <삭제 2013.4.29>

부 칙 <2012.2.6,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노동위원장·전국위원장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합당) 후 첫 번째 전국노동위원장 또는 전국위원장을 선출하는 때에는 선출시기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2012.2.13,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14,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7.18,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9.20,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4.5,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4.29,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7,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5호>

지방조직규정

[제정 2012. 2. 6]

[개정 2012. 5. 4]

[개정 2012. 7. 18]

[개정 2013. 4. 5]

[개정 2013. 4.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장(지방조직)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조직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조직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지방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시·도당(이하 ‘시·도당’ 이라 한다)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는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2장 시·도당

제1절 시·도당의 대의원대회

제3조(구분) ①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여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전에 개최하는 시·도당대의원 대회를 “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 라 한다.

2. 제1호의 목적이 아닌 시.도당대의원대회를 “임시시.도당대의원대회” 라 한다.
 3. “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 및 “임시시.도당대의원대회” 를 통칭하여 “시.도당대의원대회” 라 한다.
- ②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은 시.도당대의원대회를 통하여 한다.

제4조(준비기구) ①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한 시.도당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본절에서 ‘준비위원회’ 라 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준비위원장’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도당이 창당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고 당부 판정을 받은 시.도당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 준비위원장이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0인 이상의 당원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시.도당이 창당되었고 사고 당부가 아닌 시.도당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준비위원회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준비위원장은 임명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시.도당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새로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②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행) 의장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시의장) ①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의장부의장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②임시의장은 구두호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출) ①의장과 부의장은 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구두호천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다음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구두호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9조(소집) ①시.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은 시.도당대의원대회 의장이 한다. 의장이 궐위되었거나 소집하지 아니하면 부의장이 소집하고, 부의장이 궐위 되었거나 소집하지 아니하면 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하며, 시.도당 위원장이 궐위 되었거나 소집하지 아니하면 준비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제1항의 소집권자 모두가 궐위 되었거나 소집을 기피하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③준비위원장은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일시와 장소, 의제 및 대의원명부를 대회 개최일 7일전까지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당부의 허락을 받아 보고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④준비위원장은 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대회 일시와 장소 및 의제를 명시하여 시.도당 사 게시판 및 중앙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회 개최일 2일전까지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의원명부) 시.도당대의원대회의 대의원명부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작성한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11조(대의원증) ①준비위원장은 확정된 시.도당대의원명부에 등재된 대의원에게 대의원증을 발급한다.

②제1항의 대의원증에는 해당 대의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해당 시.도당대의원대회 의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③제1항의 대의원증은 대회 개최일 전일까지 대의원에게 교부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회

당일에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대리출석 금지 등) 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13조(권한위임) 시.도당대의원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당상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위원) ①사무총장은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적법성 여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감독하기 위하여 감독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독위원은 시.도당대의원대회가 소란행위 등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회 관계자를 직접 지휘하여 대회를 중지 시키거나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위원은 즉시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승인 및 인준)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시.도당위원장은 대회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 당무위원회에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신청 및 시.도당위원장의 인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시.도당대의원대회승인신청서
2. 시.도당위원장인준신청서
3. 대회 회의록
4. 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참석한 대의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5. 법정 당원명부(창당대회에 한한다)
6. 기타 중앙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6조(등록) ①시.도당 등록은 당무위원회의 승인 및 인준 후 시.도당위원장이 중앙당 사무처로부터 시.도당대의원대회승인서 및 시.도당위원장인준서를 교부 받아 정당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②등록을 마친 시.도당위원장은 정당법 제16조(등록, 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는다.

③시.도당위원장은 등록증을 교부 받은 즉시 그 사본을 중앙당에 제출한다.

제17조(승인 및 인준 거부)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아니 하거나 시.도당위원장의 인준을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당원수 1,000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시.도당대의원대회 과정에 정당법 등 관련법이나 당헌, 당규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시.도당대의원대회 과정에 중앙당의 지시, 지침 등을 어긴 경우
4. 준비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후보자의 자격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해당행위가 있는 경우
5. 당무위원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사무처의 진상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준비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당무위원회가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아니 하거나 시.도당위원장의 인준을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비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되, 필요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당은 사고 당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시.도당대의원대회 승인 후 제1항 또는 제16조(이의신청)제1항에 의한 승인 취소사유가 있다고 당무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해산) 준비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대회 승인 및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결정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신임 시.도당위원장에게 인계하고 해산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당대의원대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당 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하여 의결에 영향을 준 경우
3.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무총장은 이를 즉시 당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당무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④사무총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당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해당 시.도당위원장 및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0조(연기신청) ①시.도당이 정한 기한 내에 시.도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회 개최일 7일전까지 그 사유와 대회 개최 예정일을 명시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연기된 시.도당대의원대회는 늦어도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연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이를 당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당헌 제14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에 따른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은 시.도당위원장이 그 명단을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7일전까지 중앙당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4.29>

제22조(제척) ①사고 당부 판정 시 해당 지역 시.도당위원장 직에 있었던 자는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시.도당위원장 후보자는 준비위원장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신설합당) 신설합당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시·도당의 개편대회(시·도당대의원대회를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 준비위원장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당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개편대회를 거쳐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시·도당의 상무위원회

제24조(소집) ①시·도당상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시·도당상무위원회 의장이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시·도당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시·도당운영위원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면 사무총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시·도당상무위원회의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3절 시·도당의 구성과 집행기구

제25조(시·도당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시·도당위원장은 당헌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②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의 득표를 한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시·도당위원장의 임기는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에 개최되는 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시·도당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시·도당위원장이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당대표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시·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제26조(부위원장) ①시.도당에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시.도당부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27조(상임고문과 고문)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위원회) ①시.도당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운영 기구이다.

②시.도당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시.도당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시.도당운영위원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면 상급 당부가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시.도당운영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시.도당운영위원회의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29조(각급 위원회) ①시.도당에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노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노동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직능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등을 두고,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각급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

③각급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각급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결과, 활동계획 및 활동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도당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도당은 각급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기구는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시.도당사무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31조(노동위원회) ①시.도당에 노동조직 확대 및 노동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노동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당노동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도당노동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노동위원회의 내규에 따른다.

제32조(여성위원회) ①시.도당에 여성조직 확대 및 여성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여성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당여성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도당여성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여성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제33조(청년위원회) ①시.도당에 청년조직 확대 및 청년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청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당청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도당청년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청년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제34조(노인위원회) ①시.도당에 노인조직 확대 및 노인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노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당노인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도당노인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노인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제35조(장애인위원회) ①시.도당에 장애인조직 확대 및 장애인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장애

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당장애인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도당장애인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장애인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제36조(대학생위원회) ①시·도당에 대학생조직 확대 및 대학생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대학생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당대학생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도당대학생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대학생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제37조(직능위원회) 시.도당에 직능조직 확대 및 직능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직능위원회를 둔다.

제38조(지방자치위원회) 시.도당에 지방자치에 관한 정책개발과 당정협의를 위하여 시.도당지방자치위원회를 둔다.

제39조(교육연수위원회) 시.도당에 교육연수를 위하여 시.도당교육연수위원회를 둔다.

제40조(당무기구) ①시.도당사무처에는 총무.조직.홍보.공보 등 필요한 실.국을 두고, 실.국에 실.국장을 둔다.

②시.도당정책실에는 정책기획.연수 등 필요한 국과 국장을 두고, 연구 분야에 따른 정책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2.7.18>

③시.도당사무처장은 중앙당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충분히 협의하고 중앙당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4.5>

④시.도당실.국장과 정책전문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시.도당사무처장은 해당 시·도당의 회계책임자가 되며, 시.도당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무를 총괄

하고, 실무조직을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시·도당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때에는 시·도당사무처장이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4.5>

⑥시·도당사무처장이 해당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시·도당사무처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제4절 시·도당의 윤리위원회

제41조(윤리위원회) ①시·도당윤리위원회는 중앙당의 요구가 있거나, 시·도당위원장, 시·도당운영위원회, 시·도당상무위원회 또는 시·도당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시·도당윤리위원장이 소집하되, 시·도당윤리위원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위원장이 소집하고, 부위원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당위원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소집한다. 시·도당위원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소집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당윤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건에 대하여 제척되고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시·도당위원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해당 건이 종료 될 때까지 시·도당윤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시·도당윤리위원장은 중앙당윤리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시·도당윤리위원회의 포상과 징계의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절 시·도당의 예산과 회계

제42조(예산결산위원회) ①시·도당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이하 본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43조(회계감사) ①위원회는 각 집행기관의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감독하기 위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회계감사의 실시 시기와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③예산결산위원장은 회계감사 결과를 시·도당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 및 범위를 결정한다.

제44조(시·도당지방자치정책협의회) ①당헌 제110조에 따라 시·도당에 설치하는 시·도당지방자치정책협의회(이하 본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2.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

3.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4. 당 소속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장단

5. 시·도당지방자치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6. 시·도당이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

②협의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고, 간사위원은 시·도당지방자치위원장이 맡는다.

③협의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협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3장 지역위원회

제1절 지역대의원대회

제45조(지위와 구성) ①지역대의원대회는 해당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지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
3. 지역위원회 상임고문과 고문
4. 해당 지역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5. 자치구.시.군 연락소장
6. 사무국장
7. 지역위원회 상설위원회 위원장
8.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9. 읍.면.동 당원협의회장
10. 지역상무위원
11.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12. 지역상무위원회에서 선임하는 대의원

③제2항제12호의 대의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중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다음 개 최되는 정가지역대의원대회 전까지로 한다.

제46조(권한) ①지역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2. 상급 당부가 지시 또는 위임한 안건의 처리
3. 지역상무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기타 필요한 안건의 처리 및 당헌.당규로 정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중 해당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신설 2013.4.29>

1. 해당 지역위원회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은 권리당원 중 다수추천을 받은 순으로 선출한다.
2. 중복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3. 제1호에 따라 선출하는 대의원이 해당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하는 수만큼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③지역대의원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상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소집 등) ①정기지역대의원대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까지 개최한다.

②임시지역대의원대회는 필요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소집을 결정한다.

제48조(준비기구) ①지역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한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 이라 한다)은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개정 2013.4.5>

②준비위원장은 지역대의원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4.5>

③준비위원장은 임명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역대의원대회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9조(대의원명부) ①지역대의원대회명부는 정기지역대의원대회 전까지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의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제50조(이의신청)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대회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지역대의원대회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대의원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하여 의결에 영향을 준 경우
3. 지역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당 또는 사무총장은 당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제51조(준용 규정) 지역대의원대회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시·도당대의원대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지역상무위원회

제52조(구성) ①지역상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
3. 해당 지역 소속 자치단체장
4. 해당 지역 소속 광역의회의원 및 기초의회의원
5. 자치구.시.군 연락소장
6. 사무국장
7. 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직능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8.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9. 읍.면.동 당원협의회장
10.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상무위원

②지역상무위원회의 의장은 지역위원장이 되며,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3조(권한) 지역상무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지역위원회의 주요 당무의 처리
2.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하는 안건의 처리
3.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임
4.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순위선정
5.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업무의 처리

제54조(소집) ①지역상무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상급 당부의 지시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부의장이 소집하고,

부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상급 당부가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3절 지역위원장 등

제55조(지역위원장 선출과 임기) ①지역위원장은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까지 선출하고,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하여 당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사고위원회, 당무위원회가 인준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무위원회가 인준하는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지역위원장에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③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직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모든 지역위원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사고위원회로 판정한다.

④지역위원장의 임기는 다음에 개최되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에 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지역위원장이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당대표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추천신청 전까지, 해당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제56조(운영위원회) ①지역위원회의 일상적인 당무집행을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지역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
3. 자치구·시·군 연락소장
4. 사무국장
5. 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직능위

원장, 지방자치위원장

6.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

제57조(상임고문과 고문) 지역위원장은 지역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58조(사무국) ①지역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지역위원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59조(읍.면.동당원협의회) ①지역위원회의 조직 활성화와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당원 협의회를 둔다.

②읍.면.동당원협의회에 협의회장과 읍.면.동 투표구별 1인 이상의 남녀 책임자급 간부를 둔다. 협의회장과 책임자급 간부는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③협의회장은 읍.면.동의 조직 활동과 회의결과 및 기타 사항을 지역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복합 선거구의 경우에는 자치구.시.군별로 연락소를 둔다. 연락소장은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0조(각급 위원회) ①지역위원회에는 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노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직능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를 두고,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각급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

③각급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위원장이 지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각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 활동계획 및 활동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역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역위원회는 각급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기구는 지역위원장이 지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지방조직에 대한 당무감사

- 제61조(당무감사)** ①사무총장은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당무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제1항의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해당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에게 문서로 그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시정지시의 불이행으로 당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해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⑤감사의 자료는 시·도당의 사고당부 심사·판정,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등의 당무에 활용한다.

제5장 보칙

- 제62조(위임규정)** ①지방조직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 규정함이 없는 사항은 중앙당이 정한 지침에 의한다.
- ②시·도당상무위원회, 지역상무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처와 협의하여 이 당규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2012.2.6, 제1호>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4,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당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 정당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당 후 개최한 시·도당 개편 대회에서 선출한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는 이 규정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합당 후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목적으로 하여 개최되는 임시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시·도당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부칙 <2012.7.18,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29,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6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제정 2012. 2. 6]

[개정 2012. 5. 14]

[개정 2012. 7. 18]

[개정 2012. 9. 20]

[개정 2013. 4. 5]

[개정 2013. 4. 29]

[개정 2013. 8.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40조 및 제49조에 따라 중앙당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직자 인사의 공정과 효율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직당직자의 범위) 이 규정에서 ‘사무직당직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의 규정에 따른 유급사무원 정수에 해당하는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2. 국회정책연구위원 및 행정보조요원(9급 상당)에 해당하는 국회직 사무직당직자
3. 당헌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과 관리 직원을 포함한 사무직당직자

제3조(사무직당직자의 직제 등) ①사무직당직자의 일반 직제, 직급과 직위, 직책, 직무 및 호봉의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4.29>

② <삭제 2013.4.29>

③ <삭제 2013.4.29>

④ <삭제 2013.4.29>

⑤ <삭제 2013.4.29>

제4조(직무계열) ①사무직당직자는 업무 성격에 따라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 계약직, 특별직으로 분류한다.

②일반직이라 함은 중앙당, 국회직, 정책연구소의 일반 사무직당직자를 말한다.

③전문직이라 함은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을 말한다.

④기능직이라 함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사진, 영상, 음향, 전기, 통신, 관리, 웹디자인 등 컴퓨터 업무 또는 속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⑤계약직이라 함은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 당직자의 결원 또는 선거 등의 사유로 임시적으로 임용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⑥특별직이라 함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책” 이라 함은 1명의 사무직당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 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및 난이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균을 말한다.
3. “전보” 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직책 변경을 말한다.
4. “승진” 이라 함은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강임” 이라 함은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 이라 함은 같은 직급 내에서 보수를 조정하는 경우 상위의 호봉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대기발령” 이라 함은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8.14>

제6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의 업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사무직당직자의 임면, 퇴직, 승진, 전보, 전출 및 근무형태 전환,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3.8.14>

3. 사무직당직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사무직당직자의 인사·복무와 관련한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다만, 사무직당직자 중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정책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4.29>

5.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연구소의 정관에 따라 설치·구성하는 정책연구소인사위원회에 업무를 위임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소인사위원회는 사무부총장(인사담당)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4.29>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석사무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8.14>

④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당대표의 지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인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간사위원이 된다.

⑥인사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제7조(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①인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고는 독립하여 의사를 진행하며, 인사 관련사항을 심의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하여 관련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임용의 원칙) ①사무직당직자의 임용은 채용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사무직당직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한다.

제9조(신규채용) ①사무직당직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채용목표제와 장애인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삭제 2013.4.29>

③신규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정기인사 직전에 실시한다. 다만, 결원 등 시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무직당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형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신설 2013.4.29>

⑤전형과 절차 등 신규채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4.29>

제10조 <삭제 2013.4.29>

제11조(인사발령) ①모든 사무직당직자는 인사발령에 의해서만 직책을 보유하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인사발령은 시행일 기준 3일 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2조부터 및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인사발령 중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과 관리 직원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책연구소의 장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신설 2013.4.29>

제12조(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②겸임은 사무총장이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3조(파견근무) ①당무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파견근무는 사무총장이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4조(전보) 사무직당직자의 전보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급한 당무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당해 위원장과 협의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한 후 전보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승진) ①사무직당직자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승진은 정기인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 <삭제 2013.4.29>

④승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9.20, 2013.4.29>

제16조(인사고과) ①인사위원장은 사무직당직자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인사고과를 실시한다.

②인사고과의 실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정기인사) ①사무직당직자의 정기인사는 당대표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제청으로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개정 2013.4.29>

②정기인사는 전보, 승진을 포함하며, 매년 5월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직당직자의 임용) ①사무총장은 계약직당직자의 채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계약직당직자의 채용은 사무총장이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한다.

③ <삭제 2013.4.29>

④계약직당직자의 근무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3.4.29>

제19조(국회정책연구위원의 임용) ①국회정책연구위원은 전문위원 또는 국회활동을 지원하는 원내당직자의 임용을 우선으로 한다.

②사무직당직자는 계속하여 2년 이상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3.4.29>

제20조(순환보직) ①제2조의 사무직당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17조의 정기인사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무직당직자는 직무계열 내에서 순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사무직당직자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당직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을 제외한다)와 순환하여 배치하며, 사무직당직자 중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과 순환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3.4.29>

③ <삭제 2013.4.29>

④정책위원회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을 제외한 부국장급 이상의 사무직당직자는 1년 이상 시·도당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여성 사무직당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4.29>

제21조(임기의 제한) ①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임기를 같이 하는 3명 이하의 당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2.5.14>

②제1항에 의거한 당직자의 근무기간은 당대표 및 원내대표의 임기종료 시점까지로 한다.

③ <삭제 2013.4.29>

제22조(보수) ①사무직당직자의 보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법정수당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29>
3. 상여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29>
4. 보수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및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②계약직당직자의 보수는 사무총장이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 직급에 따른다.

③ <삭제 2013.4.29>

④ <삭제 2013.4.29>

⑤ <삭제 2013.4.29>

제23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사무직당직자의 보수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재정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사무총장 및 수석사무부총장을 포함하여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정위원장이 심의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8.14>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무직당직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2. 사무직당직자의 보수수준의 결정 및 조정
3. 기타 보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급별 호봉에 따른 보수의 결정

④심의위원장은 매년 11월 중 정기적으로 또는 당대표의 지시가 있는 때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⑤당대표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인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제24조(교육 및 훈련) ①모든 사무직당직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연 2회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담당업무와 관련한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을 받은 사무직당직자는 그 결과(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총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승진심사에 반영한다.

④총무국은 개별 사무직당직자 인사기록카드에 교육·훈련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포상) ①사무직당직자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포상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포상 : 당대표의 포상 (직급별 각 1명씩 포상)

2. 2급 포상 :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의 포상 (포상 시행자별 각 2명씩 포상)

3. 모범부서 포상 : 당대표, 최고위원 (당대표 1개부서, 최고위원 3개부서 포상)

②총무국은 개별 사무직당직자 인사기록카드에 포상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승진심사에 반영한다.

③이 규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사무직당직자가 특별한 공적 등으로 포상을 받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제26조(징계)

제26조의1 <삭제 2013.8.14>

제26조의2 (징계사유) 당대표는 사무직당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8.14>

1. 당헌 또는 당규를 위반한 경우
2. 사무직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

제26조의3(징계의 종류) ①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중징계는 과오사실이 중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무직당직자에게 행하며 파면, 해임, 강임, 정직, 감봉으로 하며, 경징계는 과오사실이 경미한 사무직당직자에게 하며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의 근신, 견책 또는 경고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8.14>

1. 파면이나 해임은 사무직당직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보수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파면은 재임용할 수 없다.
2. 강임은 사무직당직자의 해당직급을 1단계이상 낮추는 것을 말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한다.
5. 당직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근신, 견책, 경고를 준다. 제재사항은 아래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②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무직당직자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한다.<신설 2013.8.14>

1. 정직 및 감봉 : 1년
2. 근신 : 6개월
3. 견책 : 4개월

③경고는 사무총장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신설 2013.8.14>

④징계기간이 종료된 사무직당직자의 부서배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신설 2013.8.14>

제26조의4(징계의 절차 등) ①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8.14>

②당헌 제40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무직당직자가 징계대상인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제척된다.<신설 2013.8.14>

③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3.8.14>

④인사위원회는 간사위원으로부터 징계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먼저 결정한 후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징계내용을 결정한다.<신설 2013.8.14>

⑤인사위원회는 구체적 징계내용을 결정할때 위원들 상호간에 징계내용이 달라 어느하나의 의견이 의결종족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가장 가벼운 징계내용을 선택한 투표수를 그 다음 무거운 징계내용에 순차적으로 더하여 감으로써 과반수에 도달하는 징계내용으로 결정한다.<신설 2013.8.14>

⑥사무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 후 즉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8.14>

⑦징계는 징계대상자가 그 내용을 통고받은 후 이의 신청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거나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정 된다.

<신설 2013.8.14>

제26조의5(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이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신설 2013.8.14>

②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정도의 과다를 이유로 윤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결정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3.8.14>

제27조(이의신청) 징계를 받은 사무직당직자가 그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3.8.14>

제28조(근무기강의 확립) ①모든 사무직당직자는 당의 강령, 기본정책 및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직무상 알게 된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때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9조(업무지시 이행 의무) 사무직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0조(공사의 분별) ①사무직당직자는 공과 사를 구별하고, 공정·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무직당직자는 각급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공직선거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31조(품위유지의 의무) 사무직당직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업무의 인계) ①사무직당직자가 승진, 전보, 파견근무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실·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사무직당직자가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 실·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근무시간) ①사무직당직자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중식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휴가의 종류) 사무직당직자의 휴가는 연차휴가,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 가족간호휴가, 병가, 공가, 경조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35조(연차휴가) ①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에게 연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무직당직자에게는 제1항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신청하는 기간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일 전 2월부터 연차휴가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④사무직당직자가 1년 간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총장은 해당 당직자의 연차휴가 일수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⑤연차휴가 일수의 관리는 총무국이 담당한다.

제36조(산전·산후휴가) ①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인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에는 산전·산후를 통하여 3개월의 보호휴가를 주며, 산후 5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사무총장은 여성당직자가 유산 등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제37조(생리휴가)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인 여성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8조(휴직 등) ①사무직당직자는 부상·질병 중인 가족의 간호 등을 위하여 질병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연간 1회 30일간 휴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당무운영에 장애가 없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직당직자는 자신의 교육과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그 기한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만 6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때에는 6개월까지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병가) ①사무총장은 질병, 부상,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 2개월 이하의 병가를 줄 수 있으나, 휴가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근무가 곤란하여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가종료 2일 전까지 사무총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공가)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로 법원 등에 소환되는 경우
3. 법률 규정에 의한 투표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41조(경조휴가)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경조휴가를 준다.

제42조(특별휴가) 사무총장은 특별한 공로에 대한 보상과 규정되지 않은 이유 등의 사유로 사무직당직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43조(휴가신청과 출근명령) ①사무직당직자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고, 휴가 종료 후 즉시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가, 병가, 경조휴가, 산전·산후휴가의 경우와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실·국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이라도 사무직당직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휴무일) 정부가 시행하는 공휴일과 창당기념일은 휴무일로 한다.

제45조(결근처리)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3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 경고
2.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 감봉
3. 2회 경고 또는 감봉을 받는 경우 : 정직 <개정 2013.8.14>
4. 10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3회 경고 또는 감봉을 받는 경우 : 강임, 해임

제46조(당직) ①사무총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각종의 사고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직당직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47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사무직당직자는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당헌·당규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해임·파면 또는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8조(명예퇴직) ①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4.29>

②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4.29>

제49조(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에 따른 휴직 등) ①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한 사무직당직자는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해당 공직후보자가 확정되는 때까지 휴직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한 사무직당직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한 사무직당직자를 정무직당직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50조(보좌직원의 추천) ①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중앙당이 추천하는 사무직당직자를 국회 4급 상당 이상의 보좌직원 중 1명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보좌직원의 추천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51조(시·도 산하기관의 추천) ①중앙당은 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시·도지사의 해당 시·도 산
하기관에 국장급 사무직당직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산하기관에서의 추천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52조(정년) ①사무직당직자의 정년은 만 55세로 한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인사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직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무직당직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신설 2013.4.5>

제5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①누구든지 승진,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
의 진술, 기재, 증명,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사기록에 관한 자료는 사무총장의 승인 없이 일체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토록 한다.

제54조(규칙의 제정) 인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
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2012.2.6,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4,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8,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직당직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합당) 합의에 따라 채용한 계약직당직자에 한하여 정규직당직자로 전환할 수 있다.

부칙 <2012.9.20,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29,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14,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조휴가 기준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자녀	2
	형제자매	1
회갑·칠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본인	90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자녀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2
탈 상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정 2012. 2. 6]

[개정 2012. 2. 13]

[개정 2013. 4. 29]

[개정 2013. 8.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91조부터 제93조, 제95조부터 제107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립유지 및 공정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추천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3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기구

제1절 인재영입위원회

제4조(명칭) 당헌 제93조에 따라 중앙당에 설치하는 특별기구의 명칭은 ‘인재영입위원회’ 라 한다.

제5조(구성) ①인재영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인재영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3.4.29>

제6조(위원장) ①인재영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업무) 인재영입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의 발굴 및 인재영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8조(소집 및 의사) ①인재영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2절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제9조(설치) ①중앙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가 실시되는 때 선거일 전 150일까지 설치한다.

②시·도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가 실시되는 때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설치한다.

제10조(구성) ①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

다.<개정 2013.4.29>

③시·도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3.4.29>

제11조(위원장) ①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업무와 권한) ①중앙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후보자 자격을 심사한다.

②시·도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후보자 자격을 심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하여 영입하였거나 최고위원회 또는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는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제29조의 서류 중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⑤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 당적보유 여부, 학력 및 경력의 허위 기재 여부, 해당행위 전력 등을 심사한 후,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자격을 부여한다.

⑥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항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⑦예비후보자 자격심사의 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4.29>

제13조(소집 및 의사) ①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예비후보자자격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비 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이하 ‘이의신청처리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당의신청처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3.4.29>

④시·도당의신청처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3.4.29>

⑤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중앙당의신청처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시·도당의신청처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⑥중앙당의신청처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의신청처리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심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 하고, 재심사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구성) ①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 라 한다) 및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 라 한다)는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때 선거일 전 100일까지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간 내에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제16조(위원장) ①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

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권한) ①공천심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②공천심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및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8조(소집 및 의사) ①공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공천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본인이 후보자추천을 신청한 선거구의 후보자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절 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선거일 전 60일까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중앙당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3.4.29>

④시·도당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3.4.29>

제20조(위원장) ①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권한)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는 비례대표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제22조(소집 및 의사) ①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5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제24조(구성) ①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당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3.4.29>

③시·도당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3.4.29>

제25조(위원장) ①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소집 및 의사) ①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심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본인이 후보자추천을 신청한 선거구의 후보자 재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후보자 추천신청

제27조(자격) ①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권리당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당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또는 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당비체납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2.2.13>

제28조(공모) ①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 또는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 홈페이지와 중앙당사 또는 시·도당사의 게시판 등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②공모일과 기간은 공천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신청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추천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천심사위원회 또는 공천심사위원회가 그 사무를 위임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천심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후보자 추천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천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 영입 등을 포함하여 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공천심사위원회는 공모와 관련된 사무를 중앙당사무처 또는 시·도당사무처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출서류)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의정활동계획서(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지방자치단체의 장)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당적증명서 1부
6. 당비납부확인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7. 개인별 기록카드 <별지 제4호 서식>
8.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9.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10. 최종학력증명서 1부
11. 병적증명서 1부
12. 재산신고서 1부
13. 최근 3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14. 범죄경력조회서 1부
15. 칼라 명함판사진 4매
16. 그 밖에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0조(신청무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2 이상의 선거구에 신청한 때
 3.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4. 2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7. 지방조직규정 제25조제5항, 제40조제6항 또는 제55조제6항을 위반한 때
 8.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9.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
- ②신청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공천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

제31조(심사기간) ①후보자추천을 위한 심사기간은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 또는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공천심사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상 필요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지역구후보자의 심사기준) ①당헌 제102조제1항의 심사기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2. 기여도 : 당,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3.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도덕성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5. 당선가능성 :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②공천심사위원회는 당헌 제8조제1항 및 제102조제3항에 따라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사무직당직 자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개정 2013.4.29>

③공천심사위원회는 당이 실시한 교육·연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신설 2013.4.29>

④공천심사위원회는 최근 2년간의 당비체납 및 윤리위원회 징계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감산한다.

⑤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단수(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33조(비례대표후보자의 심사기준) ①비례대표후보자의 심사는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고 전문적 능력의 발휘를 통해 당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 및 제32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자는 우대한다.

1. 입당시기 및 당비납부 기간 등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당 활동에 참여한 자

2. 조직 강화 등 지속적으로 당 발전에 기여한 자

3. 당의 위상 강화 등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34조(심사방법) ①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중앙당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현직 국회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교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5장 경선

제35조(경선후보자의 자격) 경선의 후보자는 최고위원회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로 확정·의결한 자로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36조(경선후보자의 등록) ①경선후보자등록신청일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경선후보자로 등록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경선후보자의 신청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일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37조(경선후보자의 사퇴) 경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공고) 경선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삭제>

제40조(국민참여경선) ①국민참여경선은 해당 선거구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국민참여경선은 선거인단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또는 인터넷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국민참여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그 규모를 시·도지사선거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500분의 1 이상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10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국민참여경선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투표·조사결과 반영 또는 선거인단 구성은 당원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4.29>

⑤제4항에 따라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여성당원이 선거인 중 100분의 30 이상, 청년당원이 선거인 중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4.29>

⑥제4항에 따라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1년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중에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권리당원에게 선거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당비체납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선거인을 제외한 나머지 당원선거인은 선거일 전 1년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추출한다.

⑧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경선은 국민참여경선 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4.29>

⑨국민참여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제41조(당원경선) ①당원경선은 해당 선거구의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자치구·시·군별로 실시한다.

②당원경선은 선거인단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또는 인터넷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화면접여론조사는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당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여 실시하는 당원경선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4.29>

③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그 규모를 해당 선거구 당원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되, 최소 200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당원경선은 대의원, 권리당원, 지역당원, 정책당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⑤제4항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여성당원 또는 여성대의원이 선거인 중 100분의 30 이상, 청년당원 또는 청년대의원이 선거인 중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9>

⑥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1년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중에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권리당원에게 선거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당비체납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선거인을 제외한 나머지 당원선거인은 선거일 전 1년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추출한다.

⑧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⑨당원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제42조(시민공천배심원경선) ①시민공천배심원경선은 현지유권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시민공천배심원경선은 후보자 합동연설·토론회 등을 거쳐 배심원단의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한다.

③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휘·감독하되, 시·도당의 요청으로 경선의 실시를 결정하는 때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지휘·감독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선거인명부) ①제39조부터 제42조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장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단 명부(이하 '선거인명부'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44조(선거일 및 선거기간) ①선거일은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20일까지로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선거기간은 선거인명부 확정 다음일로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를 말한다.

제45조(선거운동)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인명부 확정 다음일로부터 선거일 당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로 한다. 다만,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선의 경우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선거운동 방법과 그 밖에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선거운동은 제3항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위반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제46조(후보자의 결정) ①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후보자 및 장애인후보자(중증장애인에 한한다)의 경우 당헌 제104조제5항에 따라 가산한다.<개정 2013.4.29>

③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본문에 따라 2이상의 방법으로 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득표수 또는 득표율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환산과 합산의 방법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3.4.29>

제6장 비례대표

제1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제47조(심사대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은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신청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48조(후보자선정) ①중앙당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순위를 정한다.

②제1항의 후보자와 순위를 정하는 때에는 사무직당직자 또는 사무직당직자 출신 정무직당직자 남녀 각 1명 이상을 당선안정권 내에 후보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최고위원회 합의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청년 남녀 각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의 연령, 후보자의 수, 선정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가 정한다.

제49조(후보자인준) ①당무위원회는 각 후보자에 대하여 가부를 정하는 표결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표결에 따라 후보자가 부결되는 때에는 동일한 성별의 다음 순위 후보자가 순위를 승계한다.

제50조(후보자사퇴)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동일한 성별의 다음 순위 후보자가 순위를 승계한다.

제2절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제51조(심사대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은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자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52조(후보자선정) ①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 이상으로 선정한다.

②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초과하여 선정한다.

제53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 ①시·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20일까지 시·도당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②시·도당상무위원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로 선정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상무위원은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③투·개표의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순위는 득표순으로 확정하되,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동수의 득표를 하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54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 ①지역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20일까지 지역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②하나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가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때에는 합동으로 지역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③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2 이상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로 된 때에는 모든 상무위원이 각 자치구·시·군의 후보자의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거나, 해당 자치구·시·군의 상무위원이 해당 자치구·시·군의 후보자의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여 상무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④지역상무위원이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로 선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역상무위원은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⑤투·개표의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⑥순위는 득표순으로 확정하되,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⑦동수의 득표를 하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55조(후보자사퇴) 당무위원회의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다음 순위 후보자가 순위를 승계하되, 해당 순위가 홀수인 때에는 여성이 승계한다.

제7장 후보자 확정절차

제56조(재심) ①중앙당재심위원회 또는 시·도당재심위원회는 당헌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재심 신청에 대하여 참고인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공천심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심위원회의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③재심위원회의가 제1항의 사항에 심사한 결과 재심사 또는 재경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위원회의의 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심사를 통한 후보교체 여부 또는 재경선 실시 여부 및 재심사 또는 재경선의 방법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57조(최고위원회의 재심사 요구) ①최고위원회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후보자 추천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후보자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공천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공천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심사한 후 최종 심사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대로 후보자를 확정한다.

제58조(인준) ①최고위원회는 후보자가 결정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에 후보자인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당헌 제106조제1항에 따라 당무위원회가 후보자를 인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재선정 방법은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재추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사퇴, 사망, 질병 등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제30조에 해당하는 신청무효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공직후보자로 등록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추천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당헌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절차에 따라 재추천 한다.

제8장 보칙

제60조 <삭제 2013.4.29>

제60조의1(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노인후보자 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풍부한 경험과 오랜 연륜으로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노력한다.

제61조(사무직당직자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제95조제4항에 따른 전략공천을 함에 있어서 사무직당직자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제98조제4항에 따른 전략공천을 함에 있어서 사무직당직자 5명 이상을 후보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2조(사무직당직자의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사무직당직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한 때에는 해당 사무직당직자를 당선안정권 내에 후보자로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3조(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①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경선결과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에 따라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다.

②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역상무위원회의 투표 또는 해당 후보자 간 추첨을 통하여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다. 이 경우 투표 또는 추첨 여부는 지역상무위원회가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역상무위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달리 정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때에는 합의에 따른다.

제64조(권한의 위임)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 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2.6,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천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설치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당비체납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3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비체납에 대하여는 감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비례대표 심사기준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3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2.2.13,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29,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14,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원선거인단 선거인 자격에 관한 특례) 2014년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있어서 제40조제6항, 제41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

부한 권리당원 중에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권리당원에게 선거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후보자추천신청서

선거명		선거구명		사 진
성명	(한글)	성별		
	(한자)		연령 (만)	
주민등록 번호				
본적				
주소				
직업 · 직책 (대표경력 3가지)	1. 직업:			휴대 전화
	2. 대표경력			사무실
	가.			주택
	나. 다.			e-mail
입당 연월일	년 월 일	당직		
당비납부 기간	~	체납 사유	완납여부 : 완납완료 <input type="checkbox"/> / 미납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에 실시하는 _____ 선거의 상기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자로 입후보하고자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민주당 _____ 선거에 임하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

1. 선거운동과정에서 금품·향응제공,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사
실 공표, 지역감정 조장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당헌·당규와 당의 결정을 준수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며 공천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

3. 선거 승리를 위하여 당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기득권을 버리고 당의
결정에 따른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입회인 (인)

입회인 (인)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당비납부확인서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 급 번 호 : 위 와 같 이 당 비 를 납 부 하 였 음 을 확 인 합 니 다.
	주소				
	소속·직책				
당 비 약 정 사 항	총납부금액				
	납부기간				
	채납기간				
	구분	일반당비 원	개월	직책당비 원	개월
	납부방법				
용 도	_____선거 후보자추천 신청용				

년 월 일

민주당 사무총장/○○○시·도당위원장(인)

<별지 제4호 서식>

개인별 기록카드

신청선거구		시·도 선거구						
성 명	(한글)	성 별				사 진 (5×7)		
	(한자)	본 관						
출생지			종 교					
주민등록 번호								
본 적								
현주소	(우)					연락처(전화번호)		
직 업 및 직 책	직 업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우)					사무실	
							자 택	
							e-mail	
병 역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개월)						
	군 번			제대구분				
군 병 과		계급			면제사유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소재지		비 고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 학 교 (전공 :)				(중퇴,수료,졸업)	
			대 학 원 (전공 :)				(중퇴,수료,졸업)	

	※박사학위명 :					
자산총액	원 (부동산 : 동산 :)					
정 당 및 사 회 경 력	기 간		근무 및 활동내용			직 위
	~					
	~					
	~					
	~					
	~					
	~					
	~					
당내 교육 참가 실적	기 간		교육 과정			비 고
	~					
	~					
대표경력 (2가지만 기재)		°				
※ 여론조사용 (증명서류 첨부)		°				
가 족 관 계	성 명	관계	연령	최종학력	직업(상세히)	비 고

당 적 변 경	보유 기간		정 당 명	당 직 명	변경 사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공 직 선 거 출 마 경 력	선거명(년도)	선거구명	득표수/총투표수 (득표율)	선거결과 (순위/총후보자수)	소속 정당명
	선거(년)		표/ 표 (%)	위/ 명	
	선거(년)		표/ 표 (%)	위/ 명	
	선거(년)		표/ 표 (%)	위/ 명	
	선거(년)		표/ 표 (%)	위/ 명	
	선거(년)		표/ 표 (%)	위/ 명	

선거(년)		표/표 (%)	위/명	
선거(년)		표/표 (%)	위/명	
선거(년)		표/표 (%)	위/명	

주 요 지 지 기 반				
----------------------------	--	--	--	--

지 역 활 동 내 용				
----------------------------	--	--	--	--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5호 서식>

본인 소개서

(※ 3매 이내로 작성)

--

<별지 제6호 서식>

후보자등록비 납부증명서(보관용)

접수번호	
------	--

후보자 성명	(인)
접수 일자	년 월 일 시 분

접 수 자 (인)

후보자등록비 납부증명서(신청자용)

접수 번호	
후보자 성명	(인)
접수 일자	년 월 일 시 분

접 수 자 (인)

기탁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함

중양당 / ○○○○ 시·도당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직인]

<별지 서식>

재 산 신 고 서					
후 보 신	성 명	선거구명		시·도 선거구	
	구 분	부 동 산	동 산	합 계	
	총 액	원	원	원	

청 자	본인 소유 (배우자 포함)	원	원	원
	직계존비속소유	원	원	원

재산보유현황	기타사항
--------	------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input type="checkbox"/> 현금·수표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예금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input type="checkbox"/> 보석류 <input type="checkbox"/> 채무 <input type="checkbox"/> 금·백금 <input type="checkbox"/> 무체재산권 <input type="checkbox"/> 골동품·예술품 <input type="checkbox"/> 회원권 <input type="checkbox"/> 합병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 출자 지분 <input type="checkbox"/> 재산보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

본인은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서약하며 보유재산을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중앙당 / ○○○○ 시·도당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귀중

재 산 신 고 서

선거구명	시.도 선거구	성명	
------	---------	----	--

재산의 구분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가액 (천원)	비고
합계					

※ 합계란은 채무를 제외한 합산금액에서 채무를 감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등록접수증(보관용)

접수번호	
------	--

위 본인은 민주당 _____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_____의 사유로 사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사퇴자 (인)

민주당 당대표 귀하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정 2012. 2.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0장 선거관리’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업무·운영,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당직(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선거 및 공직후보자(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 추천을 위한 선거의 업무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2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위원 수를 늘릴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원에는 여성이 5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체계)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자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1.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필요로 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전국대의원대회의장의 지휘를 받는다.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경우에는 당대표의 지휘를 받는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방조직(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4조(업무)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신청공고·등록공고 등 등록 관련 업무
2. 선거인명부 작성·관리 및 교부
3. 후보자 선거공보 등의 발송
4. 후보자 연설·대담의 관리,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의 개최·관리
5. 투표 및 개표 관리
6. 당선인 결정 및 선포
7. 선거부정의 적발과 제재
8. 공명선거운동 추진
9. 기타 당무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②위원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가 필요한 선거관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등 전국 규모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해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해산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6조(회의 소집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 결과의 공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업무지원) ①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 파견명령을 받은 사무직당직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선거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①위원회는 후보자·선거운동원·대의원·선거인 및 기타 관련자들(이하 본 조에서 ‘선거관련자’라 한다.)에 대한 선거부정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 대의원 자격, 선거인 자격 등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제명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

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②제1항제3호 중 후보자 자격박탈과 제4호의 윤리위원회 제명제소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로부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격박탈의 제재를 받은 선거관련자는 그 제재 결정을 통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박탈 결정통고는 그 결정이 그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된 날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중앙당윤리위원회가 제3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당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으로 자격상실 여부가 확정된다.

⑤중앙당윤리위원회가 제1항제4호의 제명제소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제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명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원자격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대의원 및 선거인 등의 자격은 정지된다.

⑥당무위원회는 제5항의 징계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 되어야 하며, 그 의결로써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제5항의 결정일로부터 각 3일 이내에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해산) 위원회는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정기간 존속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조직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조직(시·도당,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의한다.

부 칙 <2012. 2. 13>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9호>

윤리위원회규정

[제정 2012. 2. 24]

[개정 2013. 4. 29]

[개정 2014. 1.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8장(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의 독립성) 윤리위원장과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3조(비밀엄수 의무) 윤리위원과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소집 및 운영

제4조(중앙당윤리위원장과 임기 등) ① 중앙당윤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급 윤리위원회의 회

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중앙당윤리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②항이 불가능한 경우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27>

③중앙당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중앙당윤리위원회의 업무지원은 평가감사실에서 담당한다.<개정 2013.4.29>

제5조(소집과 의결정족수 등) ①중앙당윤리위원회는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당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중앙당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시·도당윤리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또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시·도당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시·도당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중앙당윤리위원회와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제명과 당원자격정지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중앙당윤리위원과 시·도당윤리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중앙당윤리위원장과 시·도당윤리위원장은 당해 윤리위원의 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출석요구 등) ①윤리위원회는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 조사요청자, 기타 관계자(참고인)에게 출석·진술 및 기타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7>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출석 및 조사에 불응한다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 윤리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윤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윤리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윤리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 등을 하는 경우
4. 윤리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제8조(시·도당윤리위원회의 업무) ①시·도당윤리위원회는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시·도당이 안건을 처리하는 때에는 그 경과를 지체 없이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당윤리위원회는 중앙당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시·도당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중앙당윤리위원회의 징계 관할) ①중앙당윤리위원회는 당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중앙위원, 당무위원, 중앙당 당직자 또는 각급 윤리위원에 대한 징계 및 시·도당에서 심의·의결한 징계처분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를 관할한다.

②기타 당헌 제79조 제1항 제2호, 제6호에 명시된 사항 외 당헌에서 위임한 사항을 관할한다. [신설 2014.1.27]

제10조(징계의 절차) ①당원에 대한 징계는 각급 윤리위원회가 심사·의결하고, 각급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과를 중앙당의 경우에는 당대표에게, 시·도당의 경우에는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징계안을 당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시·도당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징계는 당무위원회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각 심의·의결로써 확정된다.

④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중앙위원, 당무위원, 중앙당 당직자 또는 각급 윤리위원은 당무위원회에서 해명을 할 수 있으나 당해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

다.

⑤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하여 제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 이외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14.1.27]

제3장 포상

제11조(포상) 당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당원 또는 당 외 인사 및 유관기관과 기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의 종류 등) ①포상의 종류는 1급포상과 2급포상 및 포상에 준하는 감사장 등 기타의 포상으로 나눈다.

②1급포상은 당대표가 시행하고, 2급포상은 중앙당 각 기관의 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하며, 기타의 포상은 당대표 등 각 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③포상은 창당기념일 또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일에 시행한다.

④당대표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당원 등에 대하여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포상을 할 수 있다.

⑤각급 윤리위원회는 당원 등에 대한 포상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중앙당의 경우에는 당대표에게, 시·도당의 경우에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⑥당대표는 중앙당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포상안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⑦포상안은 당무위원회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각 심의·의결로써 확정된다.

[신설 2014.1.27]

제13조(포상의 기준)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포상의 대상을 선정한다.

1.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및 국가발전에 대한 공로

2. 당의 발전에 대한 공로
3. 기타 윤리위원회가 심의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공로

제4장 징계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4.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5.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6.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

[신설 2014.1.27]

제15조(윤리위원회 결정의 종류) ①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 기각, 각하, 무혐의 등으로 한다.

②제1항 결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처분 :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결정
2. 기각 : 징계청원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결정
3. 각하 : 징계시효완성 또는 징계절차에 위배되는 징계청원에 대한 결정
4. 무혐의 : 증거가 없거나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내리는 결정

[신설 2014.1.27]

제15조의2(징계처분의 종류)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당적 박탈
2. 당원자격정지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원자격 정지

3. 당직자격정지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직자격 정지
4. 당직직위해제 : 윤리위원회의 결정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되며, 당무위원회 결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당직 박탈
5. 경고 :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함

[신설 2014.1.27]

제16조(조사 명령) ①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또는 중앙당윤리위원장은 당원의 해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윤리위원회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시·도당윤리위원회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당위원장에 그 당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도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중앙당윤리위원회는 시·도당윤리위원회가 제1항의 지시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당의 조사를 거쳐 징계안을 직접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조사 요청) ①당원이면 누구나 당원의 해당행위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는 각급 윤리위원회의 자체 조사를 포함한다.

②중앙당윤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소집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당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때 중앙당윤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7]

제17조의2(무고에 대한 조치) 각급 윤리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징계요청자에 대하여 무고로 각급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 중앙당윤리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징계요청자를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4.1.27]

제18조(소명의 기회) 각급 윤리위원회가 징계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안에 대한

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소명의 기회를 2회 이상 거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자격정지의 회복) ①당원자격정지 또는 당직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당원은 그 정지기간이 종료하거나, 당무위원회 또는 각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자격을 회복한다.

②제1항 후단의 경우, 당원자격 또는 당직자격 회복은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각 시·도당위원장은 각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또는 각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신설 2014.1.27]

제20조(재심신청 및 절차) ①당무위원회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징계결정을 통보 받은 당원은 재심신청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위원회에 할 수 있다.

②징계결정을 받은 당원은 재심을 신청(이하 “재심신청”)하는 경우, 재심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이 경우 징계사유를 반복할 만한 입증자료 또는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중앙당윤리위원회는 재심이 신청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의결한다.

④중앙당윤리위원회는 재심신청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결정을 달리 할 수 있다.

⑤중앙당윤리위원장은 재심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당무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당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⑥중앙당윤리위원회는 재심결과를 당사자와 당해 시·도당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7]

제21조(비상징계) ①당대표는 선거 기타 비상시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고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징계의 절차) 및 제18조(소명의 기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자격정지 이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상징계의 사유가 해소되는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0조(징계의 절차) 및

제18조(소명의 기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시행규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2012. 2. 24,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13.4.29,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14.1.27,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민주당 귀증

<별지 제2호 서식>

재심신청서

징계의결기관	중앙당()/시·도당() ※해당 사항에 √ 표시 하세요. / 시·도당 일 때는 지역이름을 쓰세요. (예 : 광주광역시당)	
인적사항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징계의결 (※징계의결서 필히 첨부)	징계종류	
	의결내용 (이유)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 입증 소명·증빙자료	※ 새로운 입증 소명·증빙자료는 전자기록물 (동영상, 파일 등), 언론보도 내용, 사진 등을 포함함
------------------------	--

위 내용 및 사유에 의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민주당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시·도당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징계종류		
의결내용 (이유)		

년 월 일

중앙당
000시·도당

윤리위원장



<당규 제10호>

선거대책위원회규정

[제정 2012. 3.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90조(선거대책기구)에 의거하여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업무,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선거대책위원회) ①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직과 명예직을 둘 수 있다.

③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당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출된 대통령후보자가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한다.

제3조(고문단)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자문역으로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문, 상임고문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고문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고문, 상임고문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4조(자문위원단)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선거공약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위원단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제5조(비서실) ①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둔다.

②비서실에는 비서실장과 약간 명의 차장을 두고, 필요한 수의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제2항의 비서실장, 차장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③비서실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대변인실)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대변 및 언론기관과의 업무를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아래에 대변인실을 둔다.

②대변인실에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7조(재정위원회)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재정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아래에 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재정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8조(중앙선거대책본부)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아래에 중앙선거대책본부를 둔다.

②중앙선거대책본부에는 본부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분부장을 둘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공동본부장직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부장과 부분부장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본부장은 본부를 총괄하며, 본부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부장이 지명하는 부분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는 종합상황실 및 실무 분과별 본부를 두고,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9조(종합상황실) ①선거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선거 상황점검 및 대응책 수립과 관련 부서와의 연락 등의 업무를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 종합상황실을 둔다.

②종합상황실에는 실장, 약간 명의 부실장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실장, 부실장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종합상황실장은 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종합상황실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종합상황실장이 지명하는 부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종합상황실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제10조(실무 분과별 본부) ①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는 전략, 조직, 총무, 유세, 홍보, 공명선거 등 업무집행에 필요한 실무 분과별 본부를 둘 수 있다.

②분과별 본부의 본부장, 약간의 부분부장, 위원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각 분과별 본부의 장은 해당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 분과별 본부의 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분과별 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부분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해당 분과별 본부의 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제11조(특별기구)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 또는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는 당해 선거에 필요한 각급

특별위원회, 본부 등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위원회, 본부 등 특별기구는 제 10조(실무 분과별 본부)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구성하고,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실무 분과별 본부에 준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지원기구) ①중앙선거대책기구 아래의 실무지원기구는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제1항의 실무지원기구는 실 또는 국 단위로 편성하고, 실장 또는 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업무 성격에 따라 팀, 단 또는 위원회 등의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③각 기구의 장은 각 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부실장. 부국장은 실장. 국장을 보좌하고 실장. 국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중앙당사무직당직자를 각급 선거대책기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임규정) ①당헌. 당규에 정함이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각급 선거대책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당헌. 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선거대책기구) ①지방선거대책기구는 중앙선거대책기구에 준하여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당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 도당과 지역위원회에 시달한다.

②지방선거대책기구는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권역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시. 도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해 시. 도당위원장이 되고, 지역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해 지역위원장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되는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당해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의 권한 및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해산) 각급 선거대책기구는 해당 선거 종료 후 해산한다.

부 칙 <2012.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성 특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을 달리 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당규 제11호>

원내대표선출규정

[제정 2012. 4.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2조제9항에 따라 원내대표의 선출과 신임투표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당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당 소속의원은 선거권이 있다.

②당원으로서 후보자 등록일까지 당 소속의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총선거 후 해당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까지 실시되는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3조(선거일) ①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이 공고한다.

②원내대표의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매년 5월 둘째 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그 선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의원총회) ①원내대표는 당헌 제59조 및 제62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위원장이 공고한 선거일에 원내대표가 소집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원내대표 궐위 시에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총선거 후 해당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에 실시되는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로 구성하는 당선자총회를 의원총회로 본다.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후보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설치 및 구성) ①원내대표 선출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당헌 제8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2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원내대표만을 선출하기 위한 경우에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같다)로 하되, 원내대표의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설치한다.

③위원회는 원내대표 선거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원내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 대리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세부 사항 등의 결정 및 집행
2.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3. 후보자 등록공고 및 기타 등록관련 사무
4. 후보자 및 소속의원(당선자를 포함한다)에게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합동토론회 및 정견발표 등 선거운동 관리
6. 투표 및 개표 관리 업무

7. 당선인 결정공고 및 통지
8.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단속 및 시정조치 등
9.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10.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원내대표 선출에 관한 제반업무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임기는 원내대표 선출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한다.

제9조(소집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장 후보자

제10조(후보자 등록 등)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이 공고한 등록신청 기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시에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1조(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3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로 등록된 사실을 공고한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다.

제15조(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다.

제16조(정견발표) ①제14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추가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정견 발표의 시간 및 추가 정견 발표 실시는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②정견발표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17조(합동토론회) ①제14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합동토론회 진행방식 등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선거공보 등) ①후보자는 위원회에서 배포 및 발송할 1종의 선거 공보용 인쇄물 및 전산파일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 공보의 페이지 수, 형식 등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후보자는 원활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보용 인쇄물과 전산파일 외에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각 3회에 한하여 후보자를 홍보 할 수 있다.

제1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공고 후 선거일까지 금품·향응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소속 국회의원(당선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후보자 등의 비방 및 흑색선전·인신공격·허위사실유포 행위
4. 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 외의 토론회 등 개별적 모임 개최행위

제5장 투·개표

제20조(투표) ①투표는 위원장의 투표 개시선언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원내대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불참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의원은 위원회로부터 명패·투표용지를 받아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④위원장은 참석의원 전원의 투표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선포한다.

⑤제23조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와 재투표는 선거일 당일에 연이어 실시한다.

제21조(개표) ①위원장은 투표종료를 선포한 후 즉시 개표를 실시한다.

②위원장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봉한 후 투표지 수와 명패수를 대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대조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대조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은 수만큼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⑤위원장은 개표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감표위원의 검표 및 명패 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22조(감표위원) 위원장은 투표 개시 전 참석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투·개표과

정을 감시하도록 한다.

제6장 당선자 결정

제23조(당선자 결정) ①원내대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2인 이상이면 차점자 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우선 선수(選數)가 높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선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24조(당선자 결정 통지 및 공고) 제23조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당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원내대표의 임기 및 궐위

제25조(임기) ①원내대표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시작한다.

제26조(보궐선거) 원내대표가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당헌 제62조제7항에 따라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제8장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제27조(불신임) ①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이 당대표에게 제출되면, 당대표가 48시간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②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은 선출절차에 준하는 비밀투표로 한다.

제9장 별 칙

제28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29조(불복신청) ①제28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 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재의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재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장 보 칙

제30조(실무지원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제반업무의 지원은 원내행정기획실에서 담당한다.

제31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2. 4. 19>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2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규정

[제정 2012. 4.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7조에 따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 업무,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총괄본부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선거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수를 늘릴 수 있다.

②위원장, 부위원장, 총괄본부장 및 위원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총괄본부장은 각 분과별 전국대의원대회(이하 ‘대회’ 라 한다)준비 실무를 총괄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준비
2. 당헌·당규의 제·개정 시안 작성
3. 강령·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을 위한 시안 작성
4. 대회에 상정할 안건의 시안 작성
5. 당의 민주화·효율화 및 발전방향에 등에 관한 시안 작성
6. 당무위원회 및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업무의 처리

7. 기타 대회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소집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분과위원회

가. 대회의 효율적 개최방안 수립

나. 위원회의 회의 지원

다. 대회에 상정할 안건 시안 작성

2. 총무분과위원회

가. 대회 진행에 관한 사항

나. 총무 관련 사항

다. 기타 다른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조직분과위원회

가. 대회 대의원 관리 및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대의원의 선정 시안 작성

나. 기타 조직 관련 사항

4. 홍보분과위원회

가. 대회의 홍보에 관한 준비

나. 기타 홍보 관련 사항

5. 당헌·당규분과위원회

가. 당헌·당규의 제·개정 시안 작성

나. 기타 당헌·당규 관련 사항

6. 강령·정책분과위원회

가. 강령·기본정책의 채택·변경 시안 작성

나. 기타 강령·기본정책 관련 사항

7. 당무발전분과위원회

가. 당의 효율적 발전방향 등에 관한 시안 작성

나. 기타 당무발전 관련 사항

③위원회는 그 의결로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목적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달리 둘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 약간 명을 두며, 이들은 위원회에서 임면하고, 준비위원이 분과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분과위원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와 분과위원회와의 관계) ①위원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지원 등)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규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해체) 위원회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해체된다.

부칙 (2012. 4. 19)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3호>

회의록규정

[제정 2012. 4.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및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기구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등) ①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참석자의 수와 성명
 3.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자료
 4. 회의결과
 5.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방법, 표결 수와 표결결과
 6.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경우 회의녹취록
- ②해당 기구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회의록에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 사항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작성과 보관) ①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②의원총회의 회의록은 원내행정실장이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③시·도당대의원대회,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시·도당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시·도당사무처장이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 ④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기구의 회의록은 당해 기구의 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 ⑤제1항부터 제4항의 회의록은 작성되는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구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서명)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확인하고 서명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 :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
2. 중앙위원회 : 중앙위원회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
3. 당무위원회 : 당무위원회 의장 및 사무총장
4. 최고위원회 : 사무총장
5. 의원총회 : 원내수석부대표

제6조(보고) ①제4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자는 해당 기구의 차기 회의에 회의록의 요지를 보고한다.

②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경우 사무총장은 대회 또는 회의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에 회의록의 요지를 보고한다.

③시.도당대의원대회의 경우 시.도당사무처장은 대회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시.도당상무위원회에 회의록의 요지를 보고한다.

제7조(열람) ①당원인 자가 회의록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문서로 해당 기구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소속 지역위원회 및 열람 목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해당 기구는 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중앙당의 경우 당대표에게, 원내의 경우 원내대표에게,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당대표, 원내대표 또는 시.도당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⑤신청인은 당헌 제6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열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구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 칙 <2012. 4. 19>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정 2012. 4. 19]

[개정 2013. 4. 5]

[개정 2013. 4.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지역위원장의 공모.심사.선정, 사고당부의 심사.판정과 정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립유지 및 공정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제4조(구성) ①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사무총장, 조직담당사무부총장 및 중앙당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4.29>

③조직강화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이 맡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5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 심사
2.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위원회 심사
3. 지역위원장 후보자의 공모·심사·선정
4. 기타 당무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조직 강화 관련 업무

제6조(회의소집 등)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지원 등) ①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실무자로 하여금 현지조사 및 실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위원장

제8조(공모 및 공고) ①지역위원장은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②지역위원장의 공모는 위원장이 당 홈페이지와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의 게시판 등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신청자격) 지역위원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기간) ①지역위원장 신청 접수기간은 공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신청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필요시 접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축소,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기간을 둘 수 있다.

제11조(제출서류) ①지역위원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위원장후보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당비납부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당비납부영수증 1부
6. 당적증명서 1부
7. 개인별기록카드 1부 <별지 제5호 서식>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9. 납세증명서 1부
10. 병적증명서 1부
11. 재산증명서 1부
12. 범죄경력조회서 1부
13. 칼라 명함판사진 4매

1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②제1항의 지역위원장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신청무효) ①지역위원장 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무효로 한다.

1.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2. 2 이상의 지역을 신청한 경우

3. 신청 이후 당적을 이탈, 변경한 경우

4. 2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신청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②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정체성, 당에 대한 기여도, 지역 활동 능력, 도덕성 등을 감안한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방법) ①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서류심사.지역실사.면접.집단토론 및 관계인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②심사는 당무감사 및 현지실사 보고서 등 당과 당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선정.경선.인준) ①위원회는 심사를 통하여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3명 이하로 선정하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단수로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다.

④2명 또는 3명으로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선을 실시한다. 경선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지역위원장 신청인이 1명일지라도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장 후보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위원장의 여성.청년 배려) 위원회는 당헌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역위원장에 여성 100분의 30 이상과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이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

제17조(사고당부.사고위원회 심사.판정) ①사무총장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사고 여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징계, 탈당, 사퇴, 사망 등으로 위원장이 궐위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2.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각급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고 정당한 절차.사유 없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아니한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다만, 당헌.당규에 따라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직후보자를 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도당대의원대회 또는 지역대의원대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4. 각급 공직선거에서 득표율이 현저하게 낮은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이 경우 다른 지역의 평균 득표율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5. 당직,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 선거인단대회 등을 정당한 절차.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개최하지 못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6. 중앙당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라 사무총장이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7. 법정당원 수 1,000명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도당과 당원 수 200명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위원회. 다만, 당세 취약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위원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지역위원장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읍.면.동별 당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지역위원회. 다만, 당세 취약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홍보활동, 당원 모집 등 당세확장 활동 등 주요 당무활동이 명백히 미진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10. 기타 명백히 사고 심사 사유가 있는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로 심사한다.

③사고당부(사고위원회 포함)는 위원회의 심사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해당하는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 없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신설 2013.4.5>

제18조(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의 지위) ①시.도당이 사고당부로 판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시.도당위원장의 지위 및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되고, 해당 시.도당에서 선출하였거나 추천한 당직자 및 각급 대의원대회의 대의원도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다만, 사무처장의 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지역위원장의 지위 및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되고, 해당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하였거나 추천한 당직자 및 각급 대의원대회의 대의원도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당무는 해당 시.도당, 해당 지역위원회가 개편될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개편에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인 당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고당부 판정을 받았거나 사고당부에 준하는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개편에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

인 당무를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위원회 확정을 받은 지역위원회 업무의 인계는 상급당부에서 수행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사고당부와 사고위원회에 대하여 직무대행을 지명한 경우에는 이를 사고당부와 사고위원회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의 정비 등) ①시.도당이 사고당부로, 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사고당부, 사고위원회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한 준비위원장, 해당 지역위원회 설치 또는 개편을 위한 준비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4.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직무대행을 지명하여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개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조속히 준비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4.29>

③사고당부의 개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가 시.도당위원장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3명 이하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2. 위원회가 단수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시.도당위원장으로 확정한다.
3. 위원회가 2명 또는 3명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장이 시.도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경선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대의원은 시.도당대의원대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고당부 개편을 위한 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당세 취약지역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 중 최고위원회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시.도당위원장으로 확정한다.

④사고위원회의 개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는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정한다.
2. 후보자는 3명 이하로 선정하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단수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한다.

4. 위원회가 2명 또는 3명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장이 최고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선을 실시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고위원회 개편을 위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당세 취약지역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 중 최고위원회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한다.

6. 지역위원장은 확정된 때로부터 4월 이내에 지역대의원대회를 구성하고 대의원명부를 작성하여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위임제한) 지역위원장에 대한 당무위원회의 인준 권한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으며, 필요시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하여야 한다.

제21조(제척) ①이 규정에서 지역위원장 후보자의 심사·선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지역에 대한 지역위원장 후보자의 심사·선정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정에서 사고당부와 사고위원회 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지역위원장인 지역에 대한 사고당부와 사고위원회 심사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제재조치) 중앙당은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고·시정명령 기타 제재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제24조(해체) 위원회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해체된다.

부칙 <2012.4.19,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29,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역위원장후보자신청서

소속 시도당				사 진	
성명	(한글)	성별			
	(한자)	연령	(만)		
주민등록 번호					
본적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직업 및 직책 (대표경력 3가지)	1.			휴대 전화	
				사무실	
				자택	
				e-mail	
입당 연월일	년 월 일	당직			

본인은 지역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민주당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바,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정강·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은 물론 당의 결정에 절대 승복할 것과 지역위원장으로 임명 받지 못하더라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지역 활동에 적극 임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민주당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본 인 소 개 서

성 명:

민주당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당비납부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당 비 약 정 사 항	금 액			
	약정기간			
용 도	납부방법			

발급
번호 :

위와
같이
당비
를
납부
하였
음을
확인
합니
다.

년 월 일

민주당귀중

<별지 제5호 서식>

개인별기록카드

신청선거구		시·도 선거구						
성명	(한글)		성별				사 진 (5×7)	
	(한자)		본관					
출생지			종교					
주민등록번호								
원적								
본적								
현주소	(우)					연락처(전화번호)		
직업 및 직책	직업			직위			휴대전화	
	주소	(우)					사무실	
							자택	
							e-mail	
병역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개월)						
역	군번			제대구분				
	군병과	계급			면제사유			
학력	기간	학교명			소재지	비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 :)			(중퇴, 수료, 졸업)		

		대 학 원 (전공 :)		(중퇴, 수료, 졸업)
	※박사학위명 :			
자산총액	원 (부동산 : 동산 :)			

정 당 및 사 회 경 력	기 간	근무 및 활동내용	직 위
	~		
	~		
	~		
	~		
	~		
	~		
	~		
	~		
	~		
	~		
	~		
	~		

대표경력 (2가지만 기재)	○					
※ 여론조사 用	○					

가	성 명	관 계	연 령	최종학력	직업(상세히)	비 고

족 관 계						

당 직 변 경	보유 기간	정 당 명	당 직 명	변경 사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공 직 선 거 출 마 경	선거명(년도)	선거구명	득표수/총투표수 (득표율)	선거결과 (순위/총후보자수)	소속 정당명
	선거(년)		표/ 표 (%)	위/ 명	
	선거(년)		표/ 표 (%)	위/ 명	
	선거(년)		표/ 표 (%)	위/ 명	

력	선거(년)		표/ 표 (%)	위/ 명	
	선거(년)		표/ 표 (%)	위/ 명	
	선거(년)		표/ 표 (%)	위/ 명	
	선거(년)		표/ 표 (%)	위/ 명	
	선거(년)		표/ 표 (%)	위/ 명	

* 본인의 당적변경과 공직선거 출마경력을 상세히 기재할 것

주 요 지 지 기 반	
----------------------------	--

지
역
활
동
내
용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신청인 □

<당규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정 2012. 5. 4]

[개정 2012. 5. 14]

[개정 2013. 2. 22]

[개정 2013. 3. 20]

[개정 2013. 4.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5조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기구)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가 관장한다.

제3조(선출방법)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의 투표소투표와 권리당원의 ARS투표로 한다. 다만, 당헌 제14조제2항제20호의 재외국민 대의원의 투표는 이메일투표로, 당원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권리당원의 투표는 우편투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국민여론조사결과를 6분의 3, 당원(제1항의 권리당원은 제외한다)여론조사결과를 6분의 2, 규칙 제1호 「선거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시민명부에 기재된 경선참여선거인단여론조사결과를 6분의 1로 반영한다. <신설 2013.3.20>

제2장 선거일의 결정 및 공고

제4조(선거일<개정 2013.2.22>) ① <삭제 2013.2.22>

②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전국대의원대회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5조(선거일의 공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거일전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 이라 한다)이 공고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제6조(선거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당헌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및 권리당원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7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의 선거인명부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권리당원의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개정 2013.2.22>

③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1호>에 따라 작성한다.

제8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 정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일 다음날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전 2일까지 <별지 제2호>에 따라 열람 일시와 장소를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게시판과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선거인은 제2항의 기한 내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인명부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한다.

제10조(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당무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11조(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별지 제4호>에 따라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사본을 교부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선거인명부사본의 관리) ①각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를 당원 중에서 선임하고, 이를 <별지 제5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선거인명부의 교부신청, 교부받은 선거인명부의 관리와 반환 등 선거인명부 관련 일체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③제1항의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를 해당 선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교부 받은 이후 만든 사본 포함)를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후보자

제13조(등록자격)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기간)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준비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정한다.

③후보자등록신청 서류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5조(기탁금)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기탁금의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등록신청)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6호>
 2. 당적증명서 1부
 3. 기탁금 입금증 1부
 4. 이력서 1부 <별지 제7호>
 5. 서약서 1부 <별지 제8호>
 6. 주민등록등본 1부
 - 7.<삭제 2013.4.5>
 8. 강령·정책에 대한 견해 및 공약자료 1부
 9.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후보자등록신청서류의 접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9호>에 따른 후보자등록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중앙당사 게시판에 <별지 제10호>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 (기호추첨)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 대리인의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첨순서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후보자가 제1항의 후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에 따른 후보자대리인 위임장을 선거관리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후보자 사퇴 신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에 따라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무효)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후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2. 우리 당의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이 없는 경우
3. 2 이상의 정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후보자등록신청 이후 우리 당의 당적을 이탈하거나 타당의 당적으로 변경한 경우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③후보자등록이 무효로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무효 등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2.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5장 선거운동

제21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①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별지 제8호>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운동 정의)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 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당규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필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

제24조(선거공영제) ①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선거공보 우편발송 및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당이 부담한다.

제25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제26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 행위
6. 제30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7.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행.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8.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9. 그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제27조(합동연설회) ①후보자의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한다.

②합동연설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선거기간 중 1회 이상 개최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회 순서는 당일 연설회 개최 직전 추첨으로 결정하며 후보자가 본인 연설회 순서의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합동연설회의 후보자별 연설회 시간 등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시.도당 등 방문 연설행.대담) ①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를 방문하여 선

거인을 대상으로 연설.대담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를 방문하여 연설.대담을 하고자 요청할 경우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은 시.도당사 등 연설.대담에 필요한 적절한 장소를 주선하고 선거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29조(토론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토론회의 개최 횟수, 토론회의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주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선거공보) 선거공보의 발송여부 및 선거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현수막 등) ①후보자는 현수막.어깨띠.몸 벽보.소품.피켓(이하 ‘현수막 등’ 이라 한다) 등을 제작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합동연설회장과 선출대회장 옥내·외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현수막 등은 성명, 기호, 당명(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선거의 종류, 선거구 호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현수막 등의 규격, 매수, 사용 재질, 게시 및 게시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2조(전화.전자홍보 등) ①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홍보,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전자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횟수 제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3조(연설회장 등에서의 금지 및 제한사항) ①누구든지 선출대회장, 합동연설회장 및 합동토론회장

(이하 ‘연설회장 등’ 이라 한다)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회장 등에서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금지·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6장 선출방법

제35조(예비경선) ①당헌 제26조에 따른 예비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과 고문
7. 시·도당위원장
8. 당 소속 국회의원
9. 지역위원장
10.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11.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②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로, 최고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 3인연 기명으로 한다.<개정 2013.2.22>

③예비경선의 실시여부와 당선인의 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의2(투표방법) ①투표는 직접·비밀투표로 한다.

②당대표 선거는 1인 1표로 한다.

③최고위원 선거는 1인 1표 2인연기명으로 한다. 이 경우 2명의 후보자를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3.2.22]

제36조(투표소투표) ① <삭제 2013.2.22>

② <삭제 2013.2.22>

③투표소투표는 제38조에 따른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선거일시, 투표방법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거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문은 제30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같이 발송할 수 있다.

제37조(ARS투표<개정 2013.2.22>) ① <삭제 2013.2.22>

② <삭제 2013.2.22>

③선거인단은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인단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3.2.22>

⑤ARS투표는 ARS투표 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ARS 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

화투표 방법으로 실시한다.<개정 2013.2.22>

⑥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⑦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2.22>

제38조(전자투표) 제36조제3항의 전자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선거인증과 함께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포함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투표 종사자를 포함한다) 앞에서 명부에 날인하고, 투표권카드를 받아야 한다.
2. 선거인은 투표권카드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전자투표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하고 투표를 종료한 후, 기표소 밖으로 나와서 지정된 회수함에 투표권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3. 투표권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되거나 오손된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4.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5.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38조의2(여론조사)<개정 2013.3.20> ①여론조사는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실시한다.<개정 2013.3.20>

②여론조사의 결과는 전국대의원대회일에 실시하는 선거 개표와 함께 발표한다.<개정 2013.3.20>

③구체적인 여론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2.22]

제7장 투표.개표

제39조(투.개표관리) ①투표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투표와 개표를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투표, 순회 투·개표 또는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투·개표의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2.5.14>

제40조(투.개표참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중에서 해당 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2명을 투.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투.개표참관을 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후보자는 추천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에 <별지 제1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투.개표참관인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1조(투표 및 개표상황의 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의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다만, ARS 투표 또는 이메일투표의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42조(투표의 종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의 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

②투표종료 선포 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를 선포한 후 투표참관인 참여 하에 투표함을 봉합하여 개표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43조(개표절차) ①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전에 위원 중에서 개표 집계의 검표를 위한 필요한 수의 검표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ARS투표 또는 이메일투표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모두 도착한 후에 개표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개표를 선언하고,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된 후에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발표하여야 하며, 출석한 검표위원은 발표 전에 이를 검열하여야 한다.

④개표가 끝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전자기록저장장치에 투.개표 기록을 저장 및 봉인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30일간 보관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개표시기) ①선거 개표는 전국대의원대회일에 전국대의원투표 종료 후에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순회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무효투표) 투표의 무효 여부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일반 선거 관행에 따른다.

제46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①후보자가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접수된 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7조(투표록.개표록 등의 작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 발표 즉시 투표록.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투표록.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 등은 개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사무총장에게 인계하여 그 당선인의 임기 중 사무처가 이를 보관한다.

제8장 당선인 결정 및 선포

제48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각 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하고 여론조사의 결과와 합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개정 2013.2.22, 2013.3.20>

1. 당대표 선거는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신설 2013.2.22>
2. 최고위원 선거는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4명을 당선인으로 한다.<신설 2013.2.22>
- ②제1항에 따라 같은 득표율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2013.2.22>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9조(불복신청) ①이 규정에 따른 선거절차에 불복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즉시 의결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50조(위임규정) 당헌·당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규칙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2012.5.4,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6월 9일에 개최되는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의 경우 제3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 선거인 신청자에 대하여는 투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5.14,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2,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0,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정 2012. 5. 4]

[개정 2012. 5. 14]

[개정 2013. 2. 22]

[개정 2013. 3. 20]

[개정 2013. 4. 5]

[개정 2013. 4.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5조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기구)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가 관장한다.

제3조(선출방법)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의 투표소투표와 권리당원의 ARS투표로 한다. 다만, 당헌 제14조제2항제20호의 재외국민 대의원의 투표는 이메일투표로, 당원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권리당원의 투표는 우편투표로 할 수 있다.<개정 2013.2.22>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국민여론조사결과를 6분의 3, 당원(제1항의 권리당원은 제외한다)여론조사결과를 6분의 2, 규칙 제1호「선거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시민명부에 기재된 경선참여선거인단여론조사결과를 6분의 1로 반영한다.<신설 2013.3.20>

제2장 선거일의 결정 및 공고

제4조(선거일<개정 2013.2.22>) ① <삭제 2013.2.22>

②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전국대의원대회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5조(선거일의 공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거일전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 이라 한다)이 공고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제6조 <삭제 2013.4.29>

제7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의 선거인명부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권리당원의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개정 2013.2.22>

③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1호>에 따라 작성한다.

제8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 정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일 다음날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전 2일까지 <별지 제2호>에 따라 열람 일시와 장소를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게시판과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선거인은 제2항의 기한 내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인명부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한다.

제10조(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당무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11조(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별지 제4호>에 따라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사본을 교부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선거인명부사본의 관리) ①각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를 당원 중에서 선임하고, 이를 <별지 제5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선거인명부의 교부신청, 교부받은 선거인명부의 관리와 반환 등 선거인명부 관련 일체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③제1항의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를 해당 선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교부 받은 이후 만든 사본 포함)를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후보자

제13조(등록자격)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기간)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준비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정한다.

③후보자등록신청 서류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5조(기탁금)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기탁금의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등록신청)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6호>
 2. 당적증명서 1부
 3. 기탁금 입금증 1부
 4. 이력서 1부 <별지 제7호>
 5. 서약서 1부 <별지 제8호>
 6. 주민등록등본 1부
 - 7.<삭제 2013.4.5>
 8. 강령·정책에 대한 견해 및 공약자료 1부
 9.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후보자등록신청서류의 접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9호>에 따른 후보자등록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중앙당사 게시판에 <별지 제10호>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 (기호추첨)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 대리인의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첨순서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후보자가 제1항의 후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에 따른 후보자대리인 위임장을 선거관리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후보자 사퇴 신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에 따라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무효)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후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2. 우리 당의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이 없는 경우
3. 2 이상의 정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후보자등록신청 이후 우리 당의 당적을 이탈하거나 타당의 당적으로 변경한 경우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③후보자등록이 무효로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무효 등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2.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5장 선거운동

제21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①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별지 제8호>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운동 정의)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 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당규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필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

제24조(선거공영제) ①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선거공보 우편발송 및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당이 부담한다.

제25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제26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 행위
6. 제30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7.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패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8.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9. 그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제27조(합동연설회) ①후보자의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한다.

②합동연설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선거기간 중 1회 이상 개최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순서는 당일 연설회 개최 직전 추첨으로 결정하며 후보자가 본인 연설순서의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합동연설회의 후보자별 연설시간 등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시.도당 등 방문 연설패담) ①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를 방문하여 선

거인을 대상으로 연설.대담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를 방문하여 연설.대담을 하고자 요청할 경우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은 시.도당사 등 연설.대담에 필요한 적절한 장소를 주선하고 선거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29조(토론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토론회의 개최 횟수, 토론회의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주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선거공보) 선거공보의 발송여부 및 선거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현수막 등) ①후보자는 현수막.어깨띠.몸 벽보.소품.피켓(이하 ‘현수막 등’ 이라 한다) 등을 제작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합동연설회장과 선출대회장 옥내·외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현수막 등은 성명, 기호, 당명(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선거의 종류, 선거구 호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현수막 등의 규격, 매수, 사용 재질, 게시 및 게시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2조(전화.전자홍보 등) ①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홍보,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전자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횟수 제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3조(연설회장 등에서의 금지 및 제한사항) ①누구든지 선출대회장, 합동연설회장 및 합동토론회장

(이하 ‘연설회장 등’ 이라 한다)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회장 등에서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금지·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6장 선출방법

제35조(예비경선) ①당헌 제26조에 따른 예비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과 고문
7. 시·도당위원장
8. 당 소속 국회의원
9. 지역위원장
10.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11.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②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로, 최고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 3인연 기명으로 한다.<개정 2013.2.22>

③예비경선의 실시여부와 당선인의 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의2(투표방법) ①투표는 직접·비밀투표로 한다.

②당대표 선거는 1인 1표로 한다.

③최고위원 선거는 1인 1표 2인연기명으로 한다. 이 경우 2명의 후보자를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3.2.22]

제36조(투표소투표) ① <삭제 2013.2.22>

② <삭제 2013.2.22>

③투표소투표는 제38조에 따른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선거일시, 투표방법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거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문은 제30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같이 발송할 수 있다.

제37조(ARS투표<개정 2013.2.22>) ① <삭제 2013.2.22>

② <삭제 2013.2.22>

③선거인단은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인단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3.2.22>

⑤ARS투표는 ARS투표 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ARS 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

화투표 방법으로 실시한다.<개정 2013.2.22>

⑥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⑦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2.22>

제38조(전자투표) 제36조제3항의 전자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선거인증과 함께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포함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투표 종사자를 포함한다) 앞에서 명부에 날인하고, 투표권카드를 받아야 한다.
2. 선거인은 투표권카드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전자투표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하고 투표를 종료한 후, 기표소 밖으로 나와서 지정된 회수함에 투표권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3. 투표권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되거나 오손된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4.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5.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38조의2(여론조사)<개정 2013.3.20> ①여론조사는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실시한다.<개정 2013.3.20>

②여론조사의 결과는 전국대의원대회일에 실시하는 선거 개표와 함께 발표한다.<개정 2013.3.20>

③구체적인 여론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2.22]

제7장 투표.개표

제39조(투.개표관리) ①투표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투표와 개표를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투표, 순회 투·개표 또는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투·개표의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2.5.14>

제40조(투.개표참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중에서 해당 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2명을 투.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투.개표참관을 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후보자는 추천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에 <별지 제1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투.개표참관인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1조(투표 및 개표상황의 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의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다만, ARS 투표 또는 이메일투표의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42조(투표의 종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의 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

②투표종료 선포 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를 선포한 후 투표참관인 참여 하에 투표함을 봉합하여 개표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43조(개표절차) ①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전에 위원 중에서 개표 집계의 검표를 위한 필요한 수의 검표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ARS투표 또는 이메일투표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모두 도착한 후에 개표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개표를 선언하고,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된 후에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발표하여야 하며, 출석한 검표위원은 발표 전에 이를 검열하여야 한다.

④개표가 끝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전자기록저장장치에 투.개표 기록을 저장 및 봉인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30일간 보관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개표시기) ①선거 개표는 전국대의원대회일에 전국대의원투표 종료 후에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순회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무효투표) 투표의 무효 여부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일반 선거 관행에 따른다.

제46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①후보자가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접수된 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7조(투표록.개표록 등의 작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 발표 즉시 투표록.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투표록.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 등은 개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사무총장에게 인계하여 그 당선인의 임기 중 사무처가 이를 보관한다.

제8장 당선인 결정 및 선포

제48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각 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하고 여론조사의 결과와 합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개정 2013.2.22, 2013.3.20>

1. 당대표 선거는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신설 2013.2.22>
2. 최고위원 선거는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4명을 당선인으로 한다.<신설 2013.2.22>
- ②제1항에 따라 같은 득표율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2013.2.22>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9조(불복신청) ①이 규정에 따른 선거절차에 불복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즉시 의결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50조(위임규정) 당헌·당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규칙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2012.5.4,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6월 9일에 개최되는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의 경우 제3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 선거인 신청자에 대하여는 투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5.14,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2,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0,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29,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6호>

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정 2012. 7. 18]

[개정 2012. 7. 20]

[개정 2012. 7. 23]

[개정 2012. 7. 25]

[개정 2012. 8. 27]

[개정 2012. 8.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94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에 따라 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선”이란 「당헌」 제94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에 따른 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말한다.
2. “선거인”이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로서 경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순회투표”란 별표에 따른 순회투표일에 해당 광역시.도에 주소지가 있는 전국대의원이 실시하는 현장투표를 말한다.
4. “투표소투표”란 별표에 따른 투표소투표일에 해당 시.도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이 자치구.시.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5. “모바일투표”란 선거인 본인명의로 휴대전화로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6. “인터넷투표”란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제3항의 재외국민선거인단이 이메일로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제3조(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담당한다.

제4조(공정경쟁의무) ①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에의 승복 등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위원장 등 중립의무)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경선방법) ①경선은 국민경선으로 하며, 광역시·도별(특별시·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권역별로 순회하여 실시한다.

②경선 순회 일정과 투표일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모바일투표일은 선거인단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별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모바일투표일에 모바일투표를 실시한다.

1. 제15조(확인절차)제2항에 따라 선거인의 소속 시·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14조(선거인단의 모집)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 광역시·도별 신청기간 이후에 모바일투표를 신청한 경우

3. 제9조(당원·시민선거인단의 신청)제2항에 해당하는 선거인 중 제16조(선거인명부의 작성과 확인·수정·확정)제1항의 모바일명부에 기재되었으나 주소가 없는 경우

④별표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전국대의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모바일투표는 2012년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

⑤인터넷투표는 2012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제2장 선거인단

제7조(선거권) 2012년 12월 19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 ①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 당원, 시민선거인단 및 재외국민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

②당원, 시민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헌」 제5조(구분)제1항에 따른 권리당원
2. 규칙 제1호「선거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선거인정보 보관에 관한 의사확인 등)제2항에 따라 시민명부에 기재된 사람
3. 경선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 확정 절차를 거친 사람

③재외국민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헌」 제14조(지위와 구성)제2항제20호에 따른 재외국민대의원
2. 재외국민으로서 경선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 확정 절차를 거친 사람

제9조(당원, 시민선거인단의 신청) ①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제2항제3호에 따라 당원, 시민선거인단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하 “선거인단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류, 전화, 인터넷 등 이 규정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제2항제1호의 권리당원 및 제2호의 시민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당원, 시민선거인단에 포함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선거인단 신청인은 모바일투표와 투표소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바일투표와 투표소투표를 중복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먼저 등록되는 투표

방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전국대의원은 순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권리당원은 모바일투표와 투표소투표를 모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모바일투표와 투표소투표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투표할 수 있다.

⑤시민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2012년 6월 9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당시 신청한 투표 방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제16조(선거인명부의 작성과 확인·수정·확정)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접수처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투표방법을 변경할 수 있되, 모바일투표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명의를 휴대전화임을 확인한다.

제10조(재외국민선거인단의 신청) ①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선거인단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당(구체적인 접수처는 위원회가 정한다)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헌」 제14조(지위와 구성)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재외국민대의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재외국민선거인단에 포함하되,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거인단 신청인은 인터넷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선거인단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친 사람

2. 재외선거 신고, 신청서 접수증, 선거인단 참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에 한한다)을 모두 제출한 사람

④재외국민선거인단 신청인은 제11조(서류접수)부터 제13조(인터넷접수)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선 참여를 신청한다.

제11조(서류접수) ①선거인단 신청인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문서접수처에서 서류로 경선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서류접수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문서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

여 접수한 신청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거나 다른 사람이 방문하여 접수한 신청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서류접수로 경선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투표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수 입력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인단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선거인단에서 제외한다.

⑤제4항의 주소는 투표에 참여할 때 제시하는 선거인의 신분증에 기재된 사항과 자치구(행정구를 포함한다).시.군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되,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때에는 일반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중앙당과 시.도당의 문서접수처에서 신청서 접수와 선거인명부 전산입력을 담당하는 관리자(이하 “서류접수자”라 한다)를 미리 정하여 개인별 보안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관리자의 선거인명부 접속 기록이 보관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한다.

⑧서류접수자는 접수한 신청서를 해당 광역시.도별 선거인단 신청 마감일까지 선거인명부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등 필요한 경우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⑨서류접수자는 본인이 직접 접수한 신청서에 한하여 선거인명부 입력을 할 수 있다.

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라 관련자를 제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을 무효로 하고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명부에 포함할 수 있다.

1. 서류접수자 본인이 직접 접수하지 아니한 신청서가 입력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선거인단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입력하는 경우
3. 선거인단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으나 입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선거인단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제12조(전화접수) ①선거인단 신청인은 중앙당 전화접수처에서 전화로 경선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화접수는 통화내용을 녹취하여야 하며, 녹취된 내용을 신청서로 본다.

③전화접수로 경선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모바일투표와 투표소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본인이 신청한 투표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④모바일투표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자치구.시.군까지로 한다) 및 본인명의로의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명의로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한다.

⑤투표소투표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자치구(행정구를 포함한다).시.군까지로 한다) 및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서류접수)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⑥모바일투표를 신청하는 때에는 1개의 전화번호로 1명의 휴대전화번호 등록만 가능하며, 투표소투표를 신청하는 때에는 1개의 전화번호로 2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인터넷접수) ①선거인단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해 당 홈페이지에서 경선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인터넷접수로 경선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인터넷접수로 경선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모바일투표와 투표소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본인이 신청한 투표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④모바일투표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자치구.시.군까지로 한다) 및 본인명의로의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명의로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한다.

⑤투표소투표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서류접수)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제14조(선거인단의 모집) ①선거인단은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2012년 8월 8일부터 9월 4일까지 모집하되, 별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마감한다.

②모바일투표를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광역시.도와 관계없이 2012년 8월 8일부터 9월 4일까지 선거인단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에 따른 해당 광역시.도의 모집 마감일 이후 신청한 사람은 제6조(경선방법)제3항에 따라 모바일투표를 실시한다.

③선거인단의 모집은 2012년 8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9월 4일 오후 9시에 마감한다.

④선거인단의 모집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접수는 모집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전화접수는 모집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3. 인터넷접수는 모집 기간 중 24시간으로 한다.

제15조(확인절차) ①제11조(서류접수)부터 제13조(인터넷접수)에 따라 접수하는 선거인단 신청인은 실명인증 시스템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②제12조(전화접수) 또는 제13조(인터넷접수)에 따라 모바일투표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와 신용정보시스템 등에 등록된 주소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광역시·도까지 일치하는 경우 주소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 별표에 따라 해당 시·도의 모바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선거인명부의 작성과 확인·수정·확정) ①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모바일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명부(이하 “모바일명부” 라 한다)와 투표소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명부(이하 “투표소명부” 라 한다)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절차 없이 선거인명부에 미리 등재한다.

1. 전국대의원명부는 이미 작성된 것으로 본다.
2. 권리당원은 모바일명부와 투표소명부에 모두 기재한다. 이 경우 모바일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투표소명부에서 제외한다.
3. 시민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2012년 6월 9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당시 신청한 투표 방법에 해당하는 명부에 미리 등재한다.

③위원회는 선거인단 모집 마감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선거인단 신청인은 선거인단 모집 시작일부터 별표에 따른 각 모집 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중앙당 전화접수처 또는 인터넷접수처에서 본인의 신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공인인증절차(인터넷접수처에 한한다)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선거인단 신청인은 선거인단 모집 마감일의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당 이의신청접수처에서 본인의 신청사항을 수정하거나 선거인명부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공인인증절차(인터넷을 통한 수정·취소에 한한다) 등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소한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⑥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은 제14조(선거인단의 모집)제1항의 선거인단 모집 기간 동안 제12조(전화접수)제1항의 전화접수처에서 본인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9조(당원·시민선거인단의 신청)제5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인이 신청한 투표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⑧선거인명부는 제4항 전단의 열람기간과 제5항 전단의 수정기간이 만료되고 수정이 종료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①위원회는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전국대의원명부와 투표소명부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를 교부받은 후보자는 선거인명부가 상업적 목적 등 선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예비후보자

제18조(예비후보자의 등록) ①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한 후 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②제1항의 등록 기간은 2012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로 한다.

③예비후보자의 등록은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④예비후보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중앙당 접수처를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⑤예비후보자의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한 서류는 2012년 7월 23일 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4조(공정경쟁의무)제2항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2. 후보자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당적증명서
4. 후보자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5. 당비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6. 기탁금 납부영수증
7. 주민등록등본
8.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에 따른 대통령후보자 등록서류 일체
9.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 가.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 나. 예비후보자의 인영 신고서
 - 다. 예비후보자의 대리인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⑥제5항의 등록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제5항의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접수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예비후보자를 공고한 당일에 기호 추첨을 한다.

제19조(후원회 설치) 제18조(예비후보자의 등록)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 지정권자)제3호에 따른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로 인정되어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20조(기탁금) ①예비후보자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은 1억 원으로 한다.

②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2012년 7월 23일 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예비경선

제21조(실시방법) ①예비후보자의 수가 6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②예비경선은 제23조(국민여론조사)의 국민여론조사결과를 100분의 50, 제24조(당원여론조사)의 당원여론조사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③예비경선 당선인의 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득표율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④예비경선은 2012년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한다.

⑤예비경선의 결과는 2012년 7월 30일 경선 종료 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예비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예비경선에서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2조(선거운동) ①예비경선의 선거운동은 제27조(정의)와 제29조(선거공영제)부터 제41조(금지.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준용한다.

②예비경선의 선거운동기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28일까지로 한다.

제23조(국민여론조사) ①국민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민주통합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조사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에 무작위로 할당 추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7.25>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만 19세~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지역별 : 17개 광역시.도별

③조사는 2개 기관에서 임의전화걸기(Random Digit Dialing : RDD)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기관별 유효 응답이 1,200표본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전화명부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여 A.B로 구분하여 각 기관에 이관한다.

④조사대상자는 1명의 후보자를 응답하여야 하며, 기권하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응답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를 우선 질문한다.

1. 제24조(당원여론조사)의 당원여론조사 대상과의 중복 방지를 위한 당원여부. 이 경우 본인이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2. 제1항의 조사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및 제2항의 성별.연령별.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과 지역. 이 경우 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판단한다.

⑥본 질문은 ‘민주통합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적합도’ 로 한다.

⑦보기는 ‘000 후보자’ 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만을 호명하되,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순환하여 호명한다.

⑧제21조(실시방법)제4항의 기간 내에 각 1,200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제24조(당원여론조사) ①당원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 라 한다)는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하되, 권리당원(이하 이 조에 한하여 전국대의원을 포함한다)과 일반당원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조사는 「당헌」 제14조(지위와 구성)제2항제18호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 구성비를 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별로 사전에 무작위로 할당 추출하여 실시한다.

③조사는 2개 기관에서 실시하되, 각 기관별 유효응답이 1,200표본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1개 기관은 권리당원조사를, 다른 1개 기관은 일반당원조사를 실시한다.

- ④조사대상자는 1명의 후보자를 응답하여야 하며, 기권하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응답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⑤일반당원조사의 경우 본 질문 전에 당원여부를 우선 질문한다. 이 경우 본인이 당원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에 한하여 일반당원조사를 실시한다.
- ⑥본 질문은 ‘민주통합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적합도’ 로 한다.
- ⑦보기는 ‘000 후보자’ 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만을 호명하되,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순환하여 호명한다.
- ⑧제21조(실시방법)제4항의 기간 내에 각 1,200표분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제5장 후보자

제25조(후보자의 등록) ①위원회는 제21조(실시방법)제3항의 예비경선 당선인(이하 “후보자” 라 한다)에 대하여 2012년 7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 ②후보자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은 3억 원으로 한다.
- ③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마감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위원회는 후보자를 공고한 후 기호 추첨을 한다.

제26조(등록무효.사퇴) ①후보자 등록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 ②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무효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

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후보자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인 때 또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은 제18조(예비후보자의 등록)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27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당헌」 및 이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선거기간과 대통령후보자 지명대회) ①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 다음날인 2012년 8월 1일부터 대통령후보자 지명대회일인 9월 23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순회투표의 투표개시선언 후 개표 종료선언까지, 해당 투표소투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투표시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대통령후보자 지명대회는 마지막 투·개표 실시일에 개최한다.

제29조(선거공영제) ①선거운동은 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선거공보 발송 및 기타 선거운동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당이 부담한다.

제30조(선거사무소의 설치) ①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국회의원인 경우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

역구 사무소는 선거사무소로 보지 아니한다.

②선거사무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3. 법령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32조(금지하는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약속하는 행위
2.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 당원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4. 후보자 비방 또는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사실 공표, 지역감정 조장 행위
5. 폭행, 협박, 기타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6. 제33조(선거공보)에 따른 선거공보와 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문서·도화·기타 인쇄물의 배포·발송 행위
7. 이 규정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당원간담회,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아니한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8. 제30조(선거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일체의 유사기관 설치 행위
9.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를 운영하는 행위
10.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의 여론호도 행위

제33조(선거공보) 선거공보의 발송여부 및 선거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4조(합동연설회) ①후보자의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한다.

②합동연설회는 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합동연설회의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정하되, 후보자가 본인의 연설순서의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합동연설회의 후보자별 연설시간 등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합동토론회) ①위원회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토론회의 개최 횟수, 토론회의 진행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위원회는 언론기관 등이 합동토론회를 주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시.도당 등 방문 연설.대담) ①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를 방문하여 선거인을 대상으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를 방문하여 연설.대담을 하고자 요청하는 때에는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은 시.도당사 등 연설.대담에 필요한 적절한 장소를 주선하고 선거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37조(현수막 등) ①후보자는 현수막.어깨띠.몸 벽보.소품.피켓(이하 “현수막 등” 이라 한다) 등을 제작한 후 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합동연설회장 옥내.외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현수막 등은 성명, 기호, 당명(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선거의 종류, 선거구호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현수막 등의 규격, 매수, 사용 재질, 게시 또는 게시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8조(명함배부 등) 후보자는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전화, 전자홍보 등) ①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홍보, 문자, 음성, 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선거관련 전자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문자, 음성, 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횟수 제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0조(연설회장 등에서의 금지 및 제한사항) ①누구든지 합동연설회장 또는 합동토론회장(이하 이 조에서 “연설회장 등”이라 한다)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연설회장 등에서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1조(금지·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①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한다.

②위원회는 금지,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한다.

③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7장 선출

제42조(투표방법) ①경선은 당원, 시민선거인단 모바일투표 또는 투표소투표, 전국대의원 순회투표, 재외국민선거인단 인터넷투표로 실시한다.

②투표는 모든 선거인 공히 1인 1표 단순다수제로 하며, 투표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③투표는 직접투표, 비밀투표로 한다.

④투표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원.시민선거인단 모바일투표 :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당원.시민선거인단 투표소투표 : 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전국대의원 순회투표 : 위원회가 정한다.
4. 재외국민선거인단 인터넷투표 : 투표기간 중 매일 24시간 (대한민국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3조(순회투표) ①순회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해당 시.도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순회투표는 전자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4조(투표소투표) ①투표소투표는 해당 자치구.시.군의 투표소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투표소투표는 전자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투표소투표의 투표소는 자치구.시.군의 청사를 기본으로 하되, 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투표소투표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선거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문에는 투표일시와 장소를 명시한다.

⑤투표소투표 전 선거인의 신분증과 투표소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모두 일치하는 선거인만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소는 자치구.시.군(행정구를 포함한다)까지 일치하면 주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45조(모바일투표) ①모바일투표는 모바일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모바일자동응답체계〔모바일 Automatic Reply System(ARS). 이하 이 조에서 “모바일ARS”라 한다〕발송을 통한 전수하향식 전화투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모바일ARS는 모바일투표 기간 중 첫째 날 2회, 둘째 날 3회, 총 5회 발송한다. 다만, 모바일투표를 3일 이상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인단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총 모바일ARS 발송 횟수는 5회로 한다.

③위원회는 모바일투표 당일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모바일ARS 발신번호를 명시한다.

④모바일ARS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50초간 진행한다.

⑤모바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모바일ARS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⑥질문은 ‘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적합도’ 로 한다.

⑦보기는 ‘000 후보자’ 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만을 호명하되,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호명한다. 이 경우 후보자 호명 중에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때에도 유효한 투표로 본다. <개정 2012.8.27, 2012.8.29>

⑧위원회는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한 후 본인의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모바일ARS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⑨모바일ARS 발송 총 5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인터넷투표) ①인터넷투표는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제3항의 재외국민선거인단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위원회는 선거인에게 안내 이메일을 발송한다.

③인터넷투표 페이지는 발송된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선거인에게 개인별 보안번호를 부여하며, 선거인은 인터넷투표 기간 중 이름과 부여받은 보안번호를 입력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제47조(개표방법) ①순회투표, 투표소투표 및 모바일투표는 해당 시·도의 순회투표를 종료한 후 개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의 모바일투표는 서울특별시 순회투표를 종료한 후 개표한다. <개정 2012.7.23>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경선방법)제3항에 해당하는 모바일투표와 제5항에 해당하는 인터넷투표는 서울특별시 순회투표를 종료한 후 개표한다.

④개표와 종합 집계를 위한 개표소는 광역시·도별 순회투표 행사장으로 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위원회가 정한다.

제48조(투표 및 개표 참관 등) ①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투표와 개표를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참관하여야 하며, 참관인의 수는 위원회가 정한다.

③위원회는 선거인 중에서 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2명을 투·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투·개표참관을 하게 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추천참관인을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개표참관인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투·개표참관인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50조(당선인의 결정) ①당선인은 경선 투표에서 광역시·도별 순회투표일마다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최다득표자의 유효득표수를 득표율로 환산하여 100분의 50 미만인 때에는 1위와 2위 후보자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②선거기간 중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제8장 결선투표

제51조(결선투표방법) ①결선투표의 투표일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모바일투표의 경우 선거인단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결선투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전국대의원은 2012년 9월 23일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투표한다.

2. 제1호의 전국대의원을 제외한 전국대의원, 투표소명부에 기재된 권리당원과 선거인은 본인의 주소지가 있는 자치구·시·군의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3. 모바일명부에 기재된 권리당원과 선거인은 모바일투표를 실시한다.

4. 재외국민선거인단에 기재된 재외국민은 인터넷투표를 실시한다.

③결선투표는 모든 선거인 공히 1인 1표 단순다수제로 하며, 투표결과를 보정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와 제2호의 결선투표는 전자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제1호의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한다.

제52조(선거운동) 결선투표의 선거운동은 제34조(합동연설회)부터 제41조(금지·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53조(결선투표당선인의 결정) ①결선투표당선인은 결선투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다득표자로 한다.

②선거기간 중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

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후보자가 동수의 득표를 한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9장 보칙

제54조(불복신청) ①이 규정에 따른 선거절차에 불복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즉시 의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55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2012.7.18>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0>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3>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5>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27>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29>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선 일정

순회경선 일정					
연번	지역	선거인단모집 마감일	모바일투표일	투표소투표일	순회투표일
1	제주	8.14(화)	8.23(목)~24(금)	8.25(토)	8월25일(토)
2	울산		8.24(금)~25(토)	8.25(토)	8월26일(일)
3	강원	8.17(금)	8.26(일)~27(월)	8.27(월)	8월28일(화)
4	충북		8.28(화)~29(수)	8.29(수)	8월30일(목)

5	전북	8.21(화)	8.30(목)~31(금)	8.31(금)	9월 1일(토)
6	인천		8.31(금)~9.1(토)	9. 1(토)	9월 2일(일)
7	경남	8.24(금)	9.2(일)~9.3(월)	9. 3(월)	9월 4일(화)
8	광주 전남		9.4(화)~9.5(수)	9. 5(수)	9월 6일(목)
9	부산	8.28(화)	9.6(목)~7(금)	9. 7(금)	9월 8일(토)
10	세종 대전 충남		9.7(금)~8(토)	9. 8(토)	9월 9일(일)
11	대구 경북	9.1(토)	9.10(월)~11(화)	9.11(화)	9월12일(수)
12	경기	9.4(화)	9.12(수)~14(금)	9.14(금)	9월15일(토)
13	서울		9.13(목)~15(토)	9.15(토)	9월16일(일)

결선투표 일정

모바일투표	9.18(화)~22(토)
인터넷투표	9.20(목)~22(토)
투표소투표	9.22(토)
현장투표(서울,경기,인천 대의원)	9.23(일)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임하면서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정강·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당의 결정에 절대 승복함은 물론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

-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향응 제공, 후보자 비방, 지역감정 조장 등 클린선거,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공명정대한 자세로 경선에 임하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

년 월 일

서약인 : (인 또는 서명)

입회인 : (인 또는 서명)

입회인 : (인 또는 서명)



민주통합당
DEMOCRATIC UNITED PARTY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제18대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후보자등록신청서

성명	(한글)	성별		사 진
	(한자)	연령	(만)	
주민등록 번호				
주소				
직업 및 직책 (대표경력 3가지)				
				사무실
				자택
				E-mail
입당 연월일	년 월 일	당직		

본인은 제18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입후보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민주통합당
DEMOCRATIC UNITED PARTY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성 명	(한글)	성 별		사 진		
	(한자)	본 관				
출생지		종 교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우)					
직 업 및 직 책	직 업		직 위		연락처(전화번호)	
	사무실주 소	(우)			휴대전화	
					사무실	
					자 택	
					e-mail	
병역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개월)				
역	군 번		제대구분			
	군 병 과		계급		면제사유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소재지	비 고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 학 교 (전공 :)		(중퇴,수료,졸업)
		대 학 원 (전공 :)		(중퇴,수료,졸업)
	※박사학위명 :			
자산총액	원 (부동산 : 동산 :)			

정 당 및 사 회 경 력	기 간		근무 및 활동내용			직 위
		~				
		~				
		~				
		~				
		~				
		~				
		~				
		~				
		~				
		~				
		~				

가 족	성 명	관 계	연 령	최종학력	직업(상세히)	비 고

관 계						
<p>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p> <p>년 월 일</p> <p>후 보 자 (인)</p>						

[별지 제4호 서식]

후보자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인적사항

1. 성 명 : _____
2. 생 년 월 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만 세)
3. 주민등록번호 : _____
4. 소속 시·도당 : _____
5. 당직 및 직책 : _____
6. 주 소 : _____

위 사람을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후보자

의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

년 월 일

후 보 자 : (인)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접수증(보관용)

접 수 번 호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접 수 일 자	년 월 일 시 분

접 수 자 : (인 또는 서명)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접수증(신청인용)

접 수 번 호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접 수 일 자	년 월 일 시 분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접 수 자:(인 또는 서명)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후보자 사퇴 신고서

1. 후보자 성명 :
2.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사퇴하고자 합니다.

투표.개표 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후 보 자 : (인)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교체신고시에는 “비고” 란에 이미 신고된 자 “○○○과 교체” 라 적어야 합니다.

2. “신분증명서” 란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적습니다.

<당규 제17호>

시.도당위원장및지역위원장선출규정

[제정 2013.2.22]

[개정 2013.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1조제2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라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기구)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가 관장한다. 다만, ARS투표 등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5>

제3조(시.도당위원장 선출방법) ①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시.도당대의원대회대의원의 투표소투표와 권리당원의 ARS투표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헌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로 인정한다.

1.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당세 취약지역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③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시.도당대의원대회일로 한다.

제4조(지역위원장 선출방법) ①지역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지역대의원대회대의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투표하는 방법
2. 지역대의원대회대의원 전원과 권리당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투표하는 방법. 이 경우 지역대의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하여 선출한다.
3. 권리당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투표하는 방법

②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당규 제14호「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15조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고 제1항에 따라 선출방법을 결정하되, 후보자 및 선출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투표소투표로 한다.

④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5조(선거인명부 작성) ①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도당대의원대회대의원의 선거인명부는 당규 제5호「지방조직규정」 제10조에 따른 대의원명부로 한다.

②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지역대의원대회대의원의 선거인명부는 당규 제5호「지방조직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명부로 한다.

③권리당원의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제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①선거인명부 열람. 정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장한다.

②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일 다음날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③선거인은 제2항의 기한 내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에 한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인명부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한다.

제8조(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확정된다.

제9조(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선거인명부사본을 교부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투표·개표

제10조(투표방법) ①투표는 직접.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는 투표용지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④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선거일시, 투표방법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중앙당 홈페이지와 시.도당 게시판에 공지하고, 선거일 2일 전까지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투.개표관리) ①투표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투표와 개표를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과반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투.개표참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중에서 해당 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2명을 투.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투.개표참관을 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후보자는 추천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투.개표참관인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13조(투.개표상황의 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의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제14조(투표종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의 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

②투표종료 선포 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를 선포한 후 투표참관인의 참석 하에 투표함을 봉합하여 개표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15조(개표절차) ①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전에 위원 중에서 개표 집계의 검표를 위한 필요한 수의

검표위원을 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이 모두 도착한 후 개표준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개표를 선언하고,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한 후 개봉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된 후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발표하되, 발표 전에 검표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개표가 끝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참석한 위원 전원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전자기록저장장치에 투.개표 기록을 저장 및 봉인하여 시.도당 사무처에 30일간 보관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무효투표) 투표의 무효 여부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일반 선거 관행에 따른다.

제17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①후보자가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접수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장 당선인의 결정

제18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시.도당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당대의원대회 의결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3.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선인 결정방법을 정한다.

②지역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2.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④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불복신청) ①이 규정에 따른 선거절차에 불복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준용) ①시·도당위원장 후보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13조부터 제20조를 준용한다.

②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21조부터 제34조를 준용한다.

③권리당원의 ARS투표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3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4.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3.4.5>

제21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규칙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2013.2.22,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제정 2013. 3. 22]

[개정 2013. 4.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25조제1항, 부칙 제3호 제2조제1항 및 당규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4일에 개최하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선거(이하 “경선”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경선방법) ①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투표소투표(이하 “대의원투표”라 한다)는 2013년 5월 4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다.

② 재외국민대의원 이메일투표는 2013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③ 권리당원 ARS투표는 2013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 우편투표는 2013년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

④ 여론조사는 2013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실시하되, 국민여론조사, 당원여론조사 및 규칙 제1호 「선거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시민명부에 기재된 경선참여선거인단 여론조사(이하 “선거인단여론조사”라 한다)를 각각 실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의 투표 및 제4항의 여론조사는 당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4조(선거권) ①당규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7조제1항의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은 대의원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이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재외국민대의원은 이메일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②2012년 12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은 ARS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당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중 당원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권리당원은 우편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제5조(여론조사 대상) ①국민여론조사는 조사일 현재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되, 민주통합당 지지자 또는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당원여론조사는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재외국민대의원을 포함한다)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당원
3.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자

③선거인단여론조사는 규칙 제1호 「선거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시민명부에 기재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응답자의 이름이 시민명부에 기재된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제외한다.

제6조(경선사무의 위탁) ①예비경선 및 대의원투표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②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한 경선에 대하여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장 예비경선

제7조(예비후보자의 등록) ①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예비후보자등록은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직접 등록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당규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등록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등록신청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제8조(예비후보자 자격부여·기호추첨) ①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19조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한다.

③예비후보자를 공고한 후 당일에 기호추첨을 실시한다.

제9조(예비경선의 실시) ①당대표 경선후보자로 등록 공고된 자가 4명 이상인 때, 최고위원 경선후보자로 등록 공고된 자가 8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②예비경선 당선인의 수는 당대표의 경우 3명, 최고위원의 경우 7명으로 한다.

③예비경선일과 구체적인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예비경선의 선거운동) ①예비경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필한 때부터 예비경선

선거일까지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른 예비경선 선거인 명부를 작성·확정하여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한다.

③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투표) ①투표는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투표는 당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3명을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2조(당선인의 결정·공표·기호추첨) ①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다수득표수 순에 따라 3위까지를 예비경선의 당대표 후보자 당선인으로, 7위까지를 예비경선의 최고위원 후보자 당선인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득표수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예비경선의 결과는 개표 직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당선인 확정 공고 당일에 당선인 기호추첨을 실시한다.

④제3항에 따른 기호추첨 결과가 이후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의 기호가 된다.

제3장 투표

제13조(대의원투표) 대의원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재외국민대의원을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14조(이메일투표) ①이메일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재외국민대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이메일투표 시간은 2013년 4월 30일 오전 10시부터 5월 2일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는 24시간 실시한다.

③이메일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ARS투표) ①ARS투표는 2013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하되, ARS는 2013년 5월 1일 2회를 발송한 후 5월 2일 3회를 발송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전일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를 명시한다.

③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발송한다.

④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50초간 진행한다.<개정 2013.4.10>

⑤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⑥ARS투표의 질문은 ‘당대표(또는 최고위원) 지지도’ 로 한다.

⑦ARS투표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후보자를 호명하는 중에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때에도 유효투표로 인정한다.<개정 2013.4.10>

⑧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⑨ARS투표 발송 5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우편투표) ①우편투표는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2013년 4월 23일에 당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해당 투표용지, 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중앙당이 부담한다.

③투표용지는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하여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작성하되, 후보자의 사진, 기호와 이름만을 기재한다.

④우편투표는 2013년 5월 2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3. 회송용 봉투가 봉합되지 아니한 것
4.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것

제17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4장 여론조사

제18조(조사방법) ①조사는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조사기관은 각 여론조사별로 2개씩 선정하되,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각 1,000명으로 한다.

④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⑤후보자 결정을 위한 본 질문은 ‘당대표(또는 최고위원) 지지도’ 로 한다.

⑥조사의 보기는 후보자의 이름만을 호명한다.

⑦후보자의 호명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성명이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⑧응답자가 ‘잘 모른다’ 또는 ‘기타 후보’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때에는 한 번 더 설문 문안을 읽어준다. 이 경우 별도의 유도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조사의 질문 및 응답 등 모든 과정은 녹취한다.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

조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국민여론조사) ①각 조사기관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을 100분의 50,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을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개정 2013.4.10>

② <삭제 2013.4.10>

③ <삭제 2013.4.10>

④국민여론조사의 표본은 2012년 12월 31일의 전국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1. 성 : 남성, 여성
2. 연령 : 19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지역 : 17개 광역시, 도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⑥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2.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3.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광역시, 도)

⑦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확인한다.

⑧2일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별 각 1,000명의 유효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중요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 사이로 한다.

제20조(당원여론조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명부를 중복되지 아니하게 A.B로 균등하게 나누어 각 조사기관에 제공한다.

②당원여론조사의 표본은 2012년 12월 31일의 전국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17개 시·도별로 무작위 할당 추출한다.

③당원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조사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지역별로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⑤본 질문 전에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당원여부를 우선 질문한다.

제21조(선거인단여론조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 제1호 「선거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제2항의 시민명부를 중복되지 아니하게 A.B로 균등하게 나누어 각 조사기관에 제공한다.

②선거인단여론조사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기관별 각 1,000명의 유효표본을 완료할 때까지 조사한다.

③시민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조사한다.

④응답자가 기권(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본 질문 전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답자의 이름을 확인한다.

제22조(결과의 보고) ①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2013년 5월 4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일에 대의원투

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5장 결과의 합산

제23조(결과의 합산) ①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대의원투표와 이메일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2. ARS투표와 우편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②여론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하여 100분의 20으로 반영한다.

1. 국민여론조사 : 각 조사기관의 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6분의 3으로 반영한다.

2. 당원여론조사 : 각 조사기관의 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6분의 2로 반영한다.

3. 선거인단여론조사 : 각 조사기관의 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6분의 1로 반영한다.

부칙 <2013.3.22,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10,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 위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제정 2012. 8.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10조(시행규칙)와 「당규 제16호」 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55조(위임규정)에 따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 및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규 제8호”란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말한다.
2. “당규 제16호”란 당규 제16호 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을 말한다.
3. “위원회”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등) ①당규 제8호 제4조(업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상황조정실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황조정실
2. 기획분과위원회
3. 디지털분과위원회
4. 선거인단분과위원회
5. 대회진행분과위원회
6. 선거진행분과위원회
7. 토론홍보분과위원회
8. 공명선거분과위원회

②당규 제8호 제8조(업무지원)에 따라 사무직당직자는 분과위원회별로 파견되어 업무를 지원한다.

제4조(상황조정실) 상황조정실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 업무 및 경선진행상황의 일일점검
2. 분과위원회별 실무의 총괄지원 및 조정
3. 후보, 시·도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의 협력 업무
4. 기타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제5조(기획분과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행사기획, 규칙의 작성
2.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기탁금 접수, 기타 회계 관리
3. 회의 소집, 의안작성, 회의록 작성 및 보고
4. 위원회 공고, 공식문서 접수·발송
5. 후보자등록 접수 및 투·개표 참관인 등의 접수
6. 선거공보의 접수 및 발송
7.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
8. 투·개표 결과 기록 및 선거록의 작성
9. 기타 기획과 관련한 업무

제6조(디지털분과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선관련 사이트 구축 및 운영
2. 국민선거인단 DB시스템 구축 및 관리
3. 선거인단 인터넷 접수
4. 인터넷 방송의 운영
5. SNS 및 인터넷 홍보 관련 업무
6. 인터넷투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7. 온라인선거 관련 활동의 지원 및 감시

8. 기타 경선 관련 온라인상의 업무

제7조(선거인단분과위원회) 선거인단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권리당원선거인 명부의 관리 및 교부
2. 콜센터 운영 및 관리
3. 문서접수 운영 및 관리
4. 재외국민선거인단 관련 업무
5. 선거인명부의 작성·열람·수정 및 교부
6. 기타 선거인단과 관련한 업무

제8조(대회진행분과위원회) 대회진행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별 순회경선의 장소 섭외 및 시설 설치·관리 등
2. 합동연설회의 진행 등에 관련한 업무
3. 지역별 순회 투·개표 관련 업무
4. 기타 순회경선의 진행과 관련한 업무

제9조(선거진행분과위원회) 선거진행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시·군 등 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업무
2. 투표소투표의 진행 및 관리
3. 투표소투표 관리인 접수 등에 관한 업무
4. 모바일 투·개표 관련 업무
5. 재외국민선거인단 인터넷 투·개표 관련 업무
6. 기타 순회투표를 제외한 선거와 관련한 업무

제10조(토론홍보분과위원회) 토론홍보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텔레비전, 인터넷 토론회의 개최 및 관리

2. 경선관련 영상홍보물 등의 제작 및 설치
3. 기타 후보자 합동토론회 및 경선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제11조(공명선거분과위원회) 공명선거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순회경선 선거운동 구역 획정 등 공정경쟁과 관련한 관리업무
2. 선거부정행위 단속 및 제재에 대한 업무
3. 공명선거감시단 운영과 관련한 업무
4. 선거부정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
5. 기타 공명선거와 관련한 업무

제3장 선거인단 등

제12조(권리당원의 선거인 자격부여) 2012년 4월 3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1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권리당원으로서의 선거인 자격을 가진다.

제13조(선거인단의 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선거인단 명부는 투표일전 10일까지 작성하고 투표일전 7일까지 확정한다.

②선거인단 신청인의 이의신청기간은 지역별 선거인단 모집마감일 다음날부터 2일간으로 하며, 이의 신청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9시 까지로 한다.

③권리당원의 이의신청기간은 2012년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8월 11일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①선거인 명부의 사본은 전국대의원명부와 권리당원 투표소명부 사본에 한하여 후보자에게 1부씩 교부한다.

②선거인명부 사본은 지역별로 선거인명부 확정일 또는 익일에 교부한다.

제4장 후보자 등록

제15조(후보자 등록) ①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후보자에 한하여 당규 제16호 제18조(예비후보자의 등록) 제1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후보등록서류 중 당규 제16호 제18조(예비후보자의 등록) 제5항제8호 서류의 보완 제출은 8월 3일 18:00까지 한다.

③후보자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은 후보자 등록일 다음날인 8월 1일 16:00까지 납부를 연장하되 부족한 금원에 대하여는 후보자가 완납을 약정한 일자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④후보자가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완납 약정일까지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선거운동

제16조(선거공영제 등) ①합동연설회 장소의 홍보부스 설치 및 실내·외 후보자 현수막의 제작과 게재 비용은 중앙당이 부담한다.

②기타 후보자별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제17조(선거공보) ①후보자는 자신의 사진, 기호,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제작할 수 있다.

②선거공보는 8면 이내 1종으로 하며 길이 27센티미터 너비19센티미터 이내의 규격으로 한다. 이 경우 100g/m² 이내의 종으로 제작한다.

③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경선운동)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선 선거인단의 구성에 따른 특별한 사유로 경선훈보물(이하 “선거공보”라 한다)을 우편발송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개별 발송할 수 있다.

④선거공보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연설회·대담 장소에서 경선선거인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18조(합동연설회) ①합동연설회의 연설회 시간은 후보자별 각12분으로 한다.

②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합동토론회) ①합동토론회는 위원회가 기획하는 정책토론회와 방송사 초청토론회로 한다.

②합동토론회 일정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선거운동원) ①후보자는 제21조(현수막 등)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선거운동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을 30인 이내 둘 수 있다.

②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서면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선거운동원은 후보의 기호, 이름, 홍보문구가 새겨진 동일한 상의를 착용할 수 있다.

제21조(현수막 등) ①후보자는 합동연설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구내(이하 “행사장”이라 한다)에 각 2개 이내의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다만, 행사장 실내에 부착하는 현수막은 후보자에게 디자인을 받아서 위원회가 제작하여 설치한다.

②현수막의 게시기간은 행사전일부터 행사당일까지로 한다.

③당규 제16호 제37조(현수막 등)의 현수막 등의 규격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수막 : 천으로 제작하며 20제곱미터 이내
2. 어깨띠 :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3. 몸벽보(표지물) :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4. 피켓 : 길이 90센티미터 너비 60센티미터 이내, 20개 이내
5. 소품 : 다음 각 목의 용품 등

가. 수기 :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나. 손카드 또는 응원머플러 :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90센티미터 이내

다. 마스크트 : 2개 이내

④다음 각 호의 행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애드벌룬이나 기구류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2. 소음을 유발하는 용품(징, 팽과리, 호루라기, 부부젤라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행위
3. 행사장을 벗어나서 피켓, 소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위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하고 행사장을 벗어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위반

제22조(명함배부 등)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합동연설회장 내부에서는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1. 후보자와 수행원 1인
2. 후보자의 배우자(또는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선거운동원 중에서 신고한 1인)와 수행원 1인
3. 직계 존비속
4.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운동원 1인

제23조(전화, 전자홍보 등) 후보자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및 전자우편(이메일) 발송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자발송의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금지·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①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당헌·당규와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 3회를 받았을 경우에는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경고를 받았을 경우 경고 직후에 실시되는 합동연설회장 입구에 경고사실을 게재하고 합동연설회에서 경고사실을 방송고지 한다. 이 경우 방송고지는 30초 이내로 한다.

제6장 선출

제25조(순회투표 시간) 순회투표는 위원회 위원장의 투표개시선언으로 투표를 시작하여 투표종료선언과 동시에 투표를 마감한다. 다만, 투표종료선언 직전에 투표장 내에 입장한 선거인에 대해서는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

제26조(도서지역 투표소투표 특례 지정) ①울릉군 투표소투표의 시간은 오전 6시 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②울릉군 투표소투표의 개표결과는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현장에서 개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송한다.

제27조(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일) 재외국민선거인단의 인터넷투표는 9월13일 부터 9월15일까지로 한다.

제28조(참관인 등) ①투표와 개표를 감독하는 위원회의 참관 위원은 2인(투표 1인, 개표 1인)으로 한다.

②감독관 및 참관인의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역별 선거인명부 확정 추출 : 후보자별 참관인 각 1인 ※ 위원 참관
2. 모바일투표 : 후보자별 참관인 각 1인
3. 투표소투표 : 위원회가 투표소에 파견하는 감독관 1인과 후보자별 참관인 각 1인
4. 순회투표 : 후보자별 참관인 각 2인(투표 1인, 개표 1인).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당해 지역 전국대의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제29조(결선투표) ①결선투표 일정은 [별표 3]과 같다.

②결선투표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선거공영제 등) 내지 제24조(금지.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준용한다.

제30조(위임 규정) 위원회는 이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부칙 <2012. 8. 21.>

①이 시행규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시행규칙 제정 전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합동연설회 일정 및 장소

연번	지역	일자	시간	장소
----	----	----	----	----

1	제주	8월25일(토)	17:00	한라체육관
2	울산	8월26일(일)	14:00	중하체육관
3	강원	8월28일(화)	14:00	원주 인터볼고호텔 1층 컨벤션홀
4	충북	8월30일(목)	14:00	청주체육관
5	전북	9월 1일(토)	14:00	전주실내체육관
6	인천	9월 2일(일)	14:00	인천고등학교 체육관
7	경남	9월 4일(화)	14:00	창원실내체육관
8	광주 전남	9월 6일(목)	14:00	광주 영주체육관(잠정)
9	부산	9월 8일(토)	14:00	벅스코 오디토리움 2~3층
10	세종 대전 충남	9월 9일(일)	14:00	충무체육관
11	대구 경북	9월12일(수)	14:00	엑스코신관 5층 오디토리움
12	경기	9월15일(토)	14:00	고양실내체육관
13	서울	9월16일(일)	14:00	고양실내체육관

[별표 2] 합동토론회 일정

구분	일시	토론회(방송사)	주제(안)	비고
당 기획 정책 토론회	8월 23일(목) 14:00	중앙방송 3사 합동토론회 (MBC·KBS·SBS)	미래비전과 리더십 (대통령의 자격)	확정
	8월 27일(월)	충청권 정책토론회 (청주·충주MBC)	정책(1): 경제	확정적
	9월 3일(월)	광주·전남권 정책토론회 (광주·목포·여수MBC+KBS+KBC)	정책(2): 비경제	확정적
방송사 초청 토론회	8월 28일(화) 23:15	MBC 특별생방송 <100분토론> (MBC 스튜디오)	후보검증	확정적 검토 중
	8월 31일(금) 09:30~11:00	부산·울산·경남권 초청토론회 (부산·울산·경남MBC+KNN+YTN)	-	확정적
	9월 7일(금) 21:00	SBS 특별생방송 <시사토론> (SBS 스튜디오)	후보검증·정책 절충형	확정
	9월 10일(월)	대구·경북권 초청토론회 (대구·안동MBC)	-	확정적
	9월 11일(화)	인천·경기권 초청토론회 (OBS경인방송)	-	확정
	9월 14일(금) 23:00	KBS 특별편성 생방송 (KBS 스튜디오)	정책중심	확정

--	--	--	--	--	--

배우자 대리 운동원을 위와 같이 (선임), (교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후보자	(인)
후보자 대리인	(인)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귀중